

공정거래협약 (하도급 분야)

이행평가 설명자료

—
2024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목차

Part 1



협약이행평가 개요

2

Part 2



협약이행평가 실적자료

01. 계약의 공정성

1.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8

-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8
-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12

2. 서면 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14

-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14
- 2.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8
- 3.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22
- 4. 평가대상 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23
- 5. 비밀유지계약 체결 26
- 6. 선수금 비율 및 그 제고정도 27
- 7.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 29

3.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31

- 1.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31
- 2.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38
- 3.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40
- 4.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42

0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1.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46

-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46
-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50
-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54
-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8
-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60

2.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61

- 1.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61
- 2.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63

03. 상생협력 지원	68
1. 금융(자금)지원	68
2. 기술지원 및 보호	79
3. 인력·채용 지원	84
4.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86
5. 효율성 증대 정도	96
6.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	98
7. SW 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101
8. 위생지원	102
9. 원물생산자 직접지원	103
10. 교육지원	105
11. 재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불	106
12. 기타 가점 항목	107
04. 범위반 등에 따른 감점	126

Part 3 

업종별 평가점수 일람표	130
-------------------------	------------

Part 4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포털 설명서	134
-----------------------------------	------------

별첨 

〈별첨 1〉 '23.12월 주요 평가기준 개정 사항	152
〈별첨 2〉 하도급분야 협약이행평가 기준 전문	224

PART.1

협약이행평가 개요



01

협약이행평가 개요

이행평가 대상

2023년에 협약을 체결한 동반성장지수 기업

이행평가 준거기준

2023년도 협약 이행 당시 기준(공정위 예규 제414호, 2022년 12월 23일 개정)

제12조(협약이행 평가) ① 대기업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1년 경과 일로부터 30일 이내(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1.31까지)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한다. 이때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 중 이미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기존의 협약체결 시점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행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직전년도 매출액 2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용 기준에 의해 평가
 - *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 : 전체 매출액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매출액을 뺀 금액이 2조원 미만인 중견기업
-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업종별 기준에 의해 평가

평가 등급

평가등급	평가점수	인센티브 제공내용
최우수	95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2년간 면제(조사 면제라 함은 당해 기업을 조사 대상에 미포함하는 것을 의미, 이하 동일)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년간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법인·개인 표창 수여(위원장 이상)
우수	9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년간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양호	85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등급외	85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이 외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따른 벌점 감경 등의 인센티브 세부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9. 26.)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참고

제출서류

공정거래협약 포털(gowith.ftc.go.kr)에 업로드 할 서류

- ① 2023년(협약평가 대상기간) 협약신청서 1부
- ② 2023년(협약평가 대상기간) 협약서 사본 1부(대표 협력사와 체결한 샘플 1부)
- ③ 2023년(협약평가 대상기간) 협력사 리스트
- ④ 매출 기준년도(2022년)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 1부
- ⑤ 2023년(협약평가 대상기간) 이행평가 실적자료 각 1부

유의사항

-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별도(개별)재무제표 제출
- 2023년 말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기업의 경우는 ① ~ ④는 이미 포털에 업로드 되어 있을 것이므로 ⑤만 추가로 업로드

2023년(협약평가 대상기간) 협약 “이행평가” 관련 서류

- 제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약이행평가팀
- 제출방법 조정원 이메일(gowith@kofair.or.kr)
- 제출서류 안내 아래 표 참고

연번	구분	제출서류	서류 설명	관련 양식 (또는 샘플)	제출 기한
1	필수 서류	'23년 협약이행 실적평가 요청 공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23년에 운영하였던 협약제도에 대해 실적 평가를 요청하는 의사를 담은 공문 • (관련 예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이하 '하도급 예규') 제12조 제1항 • (작성 시 유의점) 해당 공문의 수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명기할 것(제출처와 수신인이 다름에 유의) 	해당 샘플은 협약 포털 사이트(http://gowith.ftc.go.kr/)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음	'24.1.31. ※기간연수
2	대상 기업 限	중견기업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 기준으로 협약이행평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바람 	-	'24.2.29.
3	대상 기업 限	효율성 증대 항목 요약본 (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중 '3.상생협력 지원 - [5]효율성 증대 항목 실적'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 	해당 양식파일은 협약 포털사이트(http://gowith.ftc.go.kr/)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음	'24.4.30.
4	대상 기업 限	주요분야 일감 개방도 실적자료 (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중 [12]기타 가점 항목 - ④주요분야 일감 개방도'의 실적자료 	-	

2024년 협약 “체결” 관련 서류

- 제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약이행평가팀
- 제출방법 조정원 이메일(gowith@kofair.or.kr)
- 제출서류 안내 아래 표 참고

연번	구분	제출 서류	서류 설명	관련양식 (또는 샘플)	제출기한
1	필수 서류	'24년 공정거래 협약 체결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24년에 협력사들과 협약을 체결 (기간연장 · 재협약 포함)할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신청서 • (관련 예규) 하도급 예규 제11조 제1항 	해당 양식·샘플은 협약 포털사이트(http://gowith.ftc.go.kr/)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음	'24.2.29.
2	필수 서류	'24년 (재) 협약체결 사실통보 공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24년에 협력사들과 협약을 체결 (기간연장 · 재협약 포함)한 사실을 통보 하는 취지의 공문 • (관련 예규) 하도급 예규 제11조 제1항 • (작성 시 유의점) 해당 공문의 수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명기할 것 (제출처와 수신인이 다름에 유의) 		[중견기업의 경우 위 제출기간과 상관없이 재협약 체결 가점을 얻고자 하는 기업은 '24.1.31. 전까지 재협약을 체결하여야 함(협약 체결신청서 및 협약서 작성·체결 일자가 '24.1.31. 보다 빠른 일자 이어야 함)]
3	필수 서류	'24년 공정거래 협약서(안) 또는 실제 협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24년에 협력사들과 체결한(할) 협약에 대한 협약서(안) • (관련 예규) 하도급 예규 제11조 제1항, 제3항 		※ 중견기업을 제외한 일반 업종의 경우 재협약 가점 폐지되었음

이행평가 일정

- 이행평가 요청공문 접수 기한: 2024. 1. 31.
※ 신속한 이행평가 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기한 엄수 요청
- 이행평가 실적자료 제출 기한: 2024. 2. 29.
※ 신속한 이행평가 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기한 엄수 요청
- 기업별 현장 확인 평가: 2024. 3. ~ 6.
- 평가결과 취합·검토(법위반 사실 조회 등): 2024. 6.
- 잠정 평가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 2024. 6. ~ 7.
- 최종 평가등급 확정·통보(평가위원회 개최 등): 2024. 7.

[참고] 실적 인정 기준

원칙: 협약을 체결한 “협약사”에 대한 지원실적만 인정	
※예외: 아래 평가 항목에 한하여 “비협약사” 지원실적 일부 인정	
구분	비협약사 지원실적 인정 여부
효율성증대정도	100% 인정
원물생산자 직접지원 (※식품업 한정)	100% 인정
금융지원	50% 인정
기술지원 (※금액, 건수 실적 한정)	50% 인정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실적	50% 인정
일감개방도	일감개방 대상이 비계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실적 100% 인정

PART.2

협약이행평가 실적자료



01 계약의 공정성

1.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2. 서면 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2.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3.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4. 평가대상 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5. 비밀유지계약 체결
6. 선수금 비율 및 그 제고정도
7.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

3.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1.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2.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 한지 여부
3.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4.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01

계약의 공정성

제조업	건설업	정보서비스업·통신업	식품업	광고업·인터넷플랫폼업	중견기업
46.5	54	51.5	49.5	59.5	81.5

1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건설업 7 / 중견기업 6.5 / 일반 4.5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건설업 3 / 중견기업 4.5 / 일반 2.5

평가개요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여부는 동 실천사항 내용을 평가대상 기업의 사규로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실제 사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항목별 이행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때 사규는 반드시 '사내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어야 하며, 업무 매뉴얼, 참고자료, 가이드라인 등 사내 구속력이 없는 규범에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규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요 감점 사례 모음

사규 반영 여부

- 기업 실정에 맞게 실천사항의 내용을 변경·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나 공정위 실천사항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은 공정위의 실천사항을 준용함'과 같이 사규에 실천사항에 대한 내용 없이 준용규정만 둔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다음과 같이 기간 또는 시점*과 관련된 규정들을 공정위가 정한 기준보다 완화 및 생략한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공정위 실천사항 Ⅲ.2.가. / Ⅲ.2.다.(2),(3) / Ⅲ.2.마. / Ⅲ.2.사.(2).

- 실천사항 내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여, 등록취소 이의신청 기간을 공정위가 정한 기준인 '15일 이상'보다 완화하여 감점

- 실천사항 내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결과 통보 기간을 공정위가 정한 기준인 '15일 이내' 보다 완화하여 감점

• 다음과 같이 협력사에게 개별통지 및 사유 기재 사항을 생략한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전에 협력업체 포털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정위가 정한 기준인 개별 통지 의무를 변용

-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자매체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협력사에게 등록 취소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누락

공개 여부

• '공개'는 대외적으로 세부내용을 포함한 전문이 공개되어야 하므로 "당사는 공정위의 협력업체 선정·운용실천사항을 사규 세부내용에 반영·운영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선언에 그치고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협력사가 볼 수 없는 사내 그룹웨어, 시스템 등에만 올려둔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실천사항 내용 준수 여부

• 협력업체 등록 취소 시 개별 통지 하지 않고 협력사 관련 포털사이트, 협력사 대상 구매발주시스템 상에 등록 취소 사실을 공지한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협력업체 등록 취소 사실이 협력사 대상으로 개별 통지되었으나 취소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평가항목
세부 구성 및
업종별
배점표**

항목	배점		
	건설업	중견기업	일반
① 실천사항 내용을 협력업체 등록·운용 관련기준(사규)에 반영	0.8	1.7	0.9
② ①의 내용을 공개(홈페이지 등)하거나 협력사에 고지	0.2	0.3	0.1
③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 시 실천사항 내용을 준수	1.2	1.5	0.9
④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의 부여	0.8	1.0	0.6

**세부 항목별
제출자료
안내**

(1) 실천사항 주요 내용의 사규 반영 여부 [상/중/하]

- ① 평가대상 기업의 실천사항 반영 사규(이하 '해당 사규') 1부
- ② 공정위 실천사항과 해당 사규의 비교표(엑셀 파일) 1부

작성양식

공정위 실천사항	평가대상 기업 사규	비고

※ 해당 양식파일은 협약 포털사이트(<http://gowith.ftc.go.kr/>) 공지사항에 업로드 되어 있음

※ 반드시 해당 양식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양식 작성방법

공정위 실천사항

- 공정위가 보급하는 실천사항 조항
 - ※ 누락 없이 전부 기입 (공정위 실천사항은 제공하는 해당 양식파일에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대상 기업은 해당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 것)
 - ※ 공정위가 보급하는 실천사항은 협약 포털사이트 공지사항 참고

평가대상 기업 사규

- 공정위가 보급한 실천사항 조항에 대응하는 평가대상 기업 사규 조항을 기입
 - ※ 공정위 실천사항과 동일한 조항도 누락 없이 전부 기입

비고

- 공정위가 정한 기준 대비 '변형, 누락, 신설'한 조항의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한 설명 기입

- ③ 공정위 실천사항 내용을 사내 구속력 있는 사규 형태로 반영하였다는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관련 사규 전체, 내부 결재문서 사본 등)
- ④ 실천사항 관련기준(사규) 제·개정 연혁 정리·설명자료 및 증빙자료(제·개정 관련 내부 결재문서 사본 등)

(2) 반영된 내용의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 [상/하]

- ① 해당 사규를 어떻게 공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홈페이지 게재를 위한 결재서류 등 의사결정 관련자료 또는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자료 등을 제출할 것

(3)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 시 실천사항 내용을 준수하였을 것 [상/중/하]

- ① 평가대상 기업이 협약평가 대상기간 동안 운영했던 '협력업체 선정·미선정, 등록·등록취소 절차'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자료
- ② 협약평가 대상기간 동안 실제 협력업체 선정·미선정, 등록·등록취소 사유 발생 시 평가대상 기업이 해당 사규를 준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협력업체 선정·미선정, 등록취소 관련 절차별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협력사 모집공고 및 심사와 관련된 공지 등 증빙자료, 협력사 등록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협력사에 송부한 문서 사본, 이메일 등)

구분	내부 절차(예시)
선정·미선정	협력사 모집공고 → 등록 신청접수 → 신용정보 검증 및 인터뷰 → 등록심의 → 협력회사 선정 및 통지 → 이의신청 건 재심의 및 통지 ※미선정업체 결과 통지 시, 사유 기재 및 이의신청 기간 명시
등록취소	협력사 등록취소 기준 공개 → 등록취소 심의 및 품의 → 개별 취소 통지 → 이의신청 건 재심의 및 통지 ※등록취소업체 결과 통지 시, 사유 기재 및 이의신청 기간 명시

(4)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의 부여 [상/중/하]

- ① 평가대상 기업의 계약체결방식(예: 공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평가대상 기업이 구매관리 규정,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을 반영한 사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체결방식(관련 사규 규정도 함께 기재)을 기재할 것
- 평가대상 기업의 업종 또는 거래 특성 등에 따라 경쟁이 제한되는 유형(ex. 수의계약)의 계약체결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할 것

- ②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송부한 입찰 공고문 또는 안내문, 시스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건설업 4 / 중견기업 2 / 일반 2

평가개요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여부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 예정 사실,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 평가한다.

이 때 자동화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며, 위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일정한 수단을 통해 알리는 시스템 또는 절차를 평가한다. 건설 분야의 입찰공고의 경우 고지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전알림시스템을 운영하더라도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락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전알림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요 인정 사례 모음

- 전자구매시스템 공지게시판에 위탁 관련 주요정보를 게시한 경우
- 구매 담당자가 입찰 관련 주요정보를 통보한 메일
- 구매시스템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탁 관련 주요정보를 협력사에 통보한 내용
- 현장 설명회를 통해 입찰 관련 주요정보를 공지하는 보고서
- 기타 위탁 관련 주요정보를 일정한 수단을 통해 알리는 시스템 또는 절차
※ 자동화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건설업	중견기업	일반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 시스템 구축 여부	4	2	2

제출자료 안내

① 평가대상 기업의 계약이전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관련 설명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평가대상 기업이 운영하는 계약이전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유형 (구매포털시스템 공지, 홈페이지 공지, 메일 통지 등), 주요정보 유형(물량, 납기 등), 충분한 기간 부여 여부, 샘플자료 등을 제출할 것

항목	평가대상 기업 세부 실적
계약이전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포털 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공지, 메일 통지 등
주요정보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량, 납기 등
충분한 기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기 45일 전 공지 등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지하였는지 설명
고지의 기능 (건설업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여 여부 기재 및 설명
샘플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샘플 자료 3건 이상 ※ 샘플 자료의 경우 알림 또는 공지 시점이 확인되어야 함

2

서면 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제조업 15 / 건설업 19 / 정보서비스업·통신업 20
 식품업 18 / 광고업·인터넷플랫폼업 28 / 중견기업 20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제조업 5 / 건설업 7 / 중견기업 8 / 일반 6

평가개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는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여부,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변형 내용, ③ 표준하도급계약서 비교표 제출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평가대상 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업종 구분과 상관없이 실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거래 업종에 대해 공정위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평가대상 기업의 사정에 맞춰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취지 상 그대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평가기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지 않고 사용 최신 버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협약평가 대상기간의 1/4 이상 사용 	
중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최신버전이 아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기간이 협약평가 대상기간의 3/4을 초과 (= 최신버전 사용기간 1/4 미만) ※ 단, 평가대상 기업이 사용하는 하도급계약서 내용에는 문제가 없어야 함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하도급계약서상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의 의무·금지 조항 외 조항이 누락되거나 수정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정도를 판단하여 부분 점수 부여
중하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하도급계약서상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누락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표준하도급계약서 미도입 ※ 2개 이상의 업종에서 하도급거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이때 업종은 평가대상 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업종 구분과 상관없이, 실제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거래 업종을 기준으로 함 	

업종별 배점표

구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비교표 제출		
	배점	상	중	중하	하	배점	제출	미제출
제조업	4.5	4.5	2	1	0	0.5	0.5	0
건설업	6	6	3	1.5	0	1	1	0
정보서비스업, 통신업, 식품업, 광고업, 인터넷플랫폼업	5.5	5.5	2.5	1	0	0.5	0.5	0
중견기업	7	7	3.5	1.5	0	1	1	0

제출자료 안내

① 평가대상 기업의 하도급거래 현황 관련 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평가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하도급거래의 종류 및 업종에 대한 설명, 각 업종별 하도급거래 관련 매출 현황 등 평가대상 기업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② 평가대상 기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여부, 도입 시기, 도입하여 사용 중인 표준하도급계약서 종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이력 등에 대한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평가대상 기업의 표준하도급 도입 여부, 도입 시기, 도입 당시 어떤 업종의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는지, 도입 이후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어떻게 개정·반영하였는지 등을 평가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하도급거래 업종별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여부, 도입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관련 증빙서류(기안문, 품의문서 등)를 제출할 것

③ 평가대상 기업이 협약평가 대상기간 동안 사용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 및 '계약 관련 부수 약정서류' 양식

제출자료 작성방법

- 계약서 양식 제출 시 반드시 특약조건(또는 일반조건 등 명칭불문), 클레임 협정서, 비밀유지계약 등 해당 계약과 부수하여 체결되는 약정서류 양식 전체를 제출할 것
- 평가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한 하도급업종이 다양한 경우 해당 업종별 사용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모두 제출할 것

☞ 예) 평가대상 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업종 구분은 '정보시스템 업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용역 위탁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건설공사위탁을 하는 경우, 용역위탁계약서 양식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위탁계약서 양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4 위 3 양식을 사용하여 실제 협력사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제출자료 작성방법

- 계약서 사본 제출 시 반드시 특약조건(또는 일반조건 등 명칭불문), 클레임 협정서, 비밀유지계약 등 해당 계약과 부수하여 체결되는 약정서류 전체를 제출할 것
 - 평가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한 하도급업종이 다양한 경우 해당 업종별 사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모두 제출할 것
- ☞ 예) 평가대상 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업종 구분은 '정보시스템 업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용역위탁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구축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가지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5 표준하도급계약서 비교표 1부

작성양식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조항	평가대상 기업 하도급계약서 조항	비고

- ※ 해당 양식파일은 협약 포털사이트(<http://gowith.ftc.go.kr/>)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음
- ※ 반드시 해당 양식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 ※ 해당 양식파일은 공정위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2.17.개정)를 기준으로 마련되었으므로, 평가대상 기업이 전자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영위하는 업종의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조항을 직접 기입하여 작성

양식 작성방법

표준하도급계약서 조항

- 평가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된 공정위의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 조항을 기입
- ※ 기본 계약 사항의 경우에도 누락 없이 전부 기입

평가대상 기업 하도급계약서 조항

- 표준하도급계약서 조항에 대응하는 평가대상 기업 하도급계약서 상 조항을 기입
- ※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동일한 조항 및 기본 계약 조항도 누락 없이 전부 기입

비고

-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대비 '변형, 누락, 신설'한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한 설명 기입

작성 시 유의사항

- 계약서 조항 비교 작성 시 '조' 단위(ex. 계약서 제5조)가 아닌 '항' 단위(ex. 계약서 제5조 제①항)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원사업자 의무사항

서면교부 및 보존의무

-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체결·변경 시 관련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고 이를 보존할 의무 (하도급법 제3조)

하도급대금 등 지급의무

- 특정기일 이전(납품 후 60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후 15일)에 하도급대금 / 선금금 /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기일을 넘기거나,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할 의무 (하도급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기타 의무사항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하도급법 제7조),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하도급법 제9조),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증의무(하도급법 제13조의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하도급법 제16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하도급법 제16조의2)

원사업자 금지사항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

- 부당한 방법을 통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금지

-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 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제8조, 제10조)

감액금지

-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외에는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제11조)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제17조)

기타 금지사항

- 부당한 특약의 금지 (하도급법 제3조의4)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법 제5조)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2)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3)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하도급법 제18조)
- 보복조치 금지 (하도급법 제19조)
- 탈법행위 금지 (하도급법 제20조) 등이 있음

공정위 홈페이지(<https://ftc.go.kr>) 참조

2.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제조업 6 / 중견기업 8 / 일반 8

평가개요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 여부는 ① 제시된 세부항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점) 및 ②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일반 6점, 제조업 4점)에 대해 평가한다.

단순히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동일한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해당 항목 점수획득이 어려우며, 표준하도급계약서 보다 구체적이고 수급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모든 업종의 계약서 내용에 반영되어 있어야 '상'으로 평가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단계적으로 점수를 차감할 수 있다.

평가기준		
연번	항목	구체화 등 도움 되는 방향 설정 사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광고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예) 공동특허출원, 기술개발약정 체결, 하자 원인규명 등
2	단가조정 신청 및 협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추가 협력사가 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추가 단가 조정 시 협의기간 단축
3	특정업체의 물품·장비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물의 품질 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당사자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사용 요구 요건을 구체화
4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부담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종류에 따라 원사업자 또는 수급 사업자 중 부담주체에 대해 명확히 명시 계약금액에는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제시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수검사, 발취검사, 제3자에 대한 감사의뢰 등 방법을 구체화 검사결과 통지 시, 통지 지연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구체화
6	수령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기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
7	추가공사 위탁 시 서면발급 및 원사업자 비용부담 명시 (건설업/해당업종 중견기업 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서면에 기재해야할 사항 및 비용 부담 주체 등에 대해 명확히 명시
8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 명시(정보서비스업, 광고업/ 해당업종 중견기업 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규정

평가항목 세부 구성 및 업종별 배점표

① 수급사업자 권익증진조항 서면계약서 명시 여부

명시된 조항 개수	등급	배점		
		제조업	중견기업	일반
• 6개 (건설, 정보서비스 및 해당업종 중견기업 : 7개)	상	2		
• 4~5개 (건설, 정보서비스 및 해당업종 중견기업 : 5~6개)	중	1		
• 3개 이하 (건설, 정보서비스 및 해당업종 중견기업 : 4개 이하) 또는 평가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모든 업종의 계약서에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하	0		

②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권익증진 정도	등급	배점		
		제조업	중견기업	일반
•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경우	상	4	6	
• 표준하도급계약서 규정에 준하는 경우	중	2	3	
•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규정 또는 규정되지 않은 경우	하	0	0	

※ 권익증진 조항 별로 각각 상/중/하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

③ 가점

기준	배점		
	제조업	중견기업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 권익증진조항 외 조항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조항이 있는 경우 ※ 단, 가점은 수급사업자 권익증진조항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지 못한 기업에 한정하여 부여하며, 수급사업자 권익증진 조항 항목에서 모두 “상”을 받아 이미 만점(일반 8, 제조업 6)을 획득한 기업의 경우 가점 부여 × 	(1)		

제출자료 안내

① 평가대상 기업의 수급사업자 권익증진조항 명시 관련 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수급사업자 권익증진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 해당 조항이 반영되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할 것
※ 평가대상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모든 업종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수급사업자 권익증진조항 평가항목 외 조항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한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한 설명자료 및 해당 조항이 반영된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것

② 수급사업자 권익증진조항 비교표 1부

작성양식

항목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조항	평가대상 기업 하도급계약서 조항	비고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			

- ※ 해당 양식파일은 협약 포털사이트(<http://gowith.ftc.go.kr/>)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음
- ※ 반드시 해당 양식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양식 작성방법

항목

- 수급사업자 권익증진조항 평가 항목 기입

표준하도급계약서 조항

- 평가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의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된 수급사업자 권익증진 조항을 기입

평가대상 기업 하도급계약서 조항

-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조항에 대응하는 평가대상 기업 하도급계약서 상 수급사업자 권익증진조항을 기입

비고

- 권익증진 여부에 대한 설명 기입

작성 시 유의사항

- 계약서 조항 비교 작성 시 '조' 단위(ex. 계약서 제5조)가 아닌 '항' 단위(ex. 계약서 제5조 제①항)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참고자료

구분	항목	수급사업자 권익증진 조항 반영 예시
일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①“기술자료제공 강요금지 등” 조항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구체화 ②“기술자료제공 강요금지 등” 조항에 기술자료 범위 구체화
일반	단가조정 신청 및 협의절차	①“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조항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완화 (예)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등 ②“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 조항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구체화 ③ 조항을 신설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구체화
일반	특정업체의 물품 장비 등을 사용토록 요구 할 수 있는 요건	①“계약 이외의 사항” 조항(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 전자업 등), “공사의 시공 및 변경”(건설업)조항에서 특정업체의 물품·장비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구체화 ②표준하도급계약서에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금지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조항 신설 ③이 외, “사급재의 지급” 조항, “원부자재 등의 양도, 대여 등” 조항에서 사급재를 지급하거나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 구체화
일반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부담주체	①“하도급대금의 조정” 조항에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부담주체 관련 내용 반영 ②표준하도급계약서에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부담주체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납품” 조항, “납품의 수령” 조항, “공사 목적물의 인도”조항 등 납품과 관련한 조항에 해당 내용 구체화 ③이 외, “검사 비용” 조항 등 비용 관련 조항에서 비용 부담주체를 수급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체화
일반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①“검사 및 이의신청” 조항에서 검사 방법을 구체화하거나, 검사 결과 회신 기간을 표준하도급계약서 比 단축하는 방향으로 변형
일반	수령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 귀속주체·부담 비율	①“하자담보책임 등” 조항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대비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단축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자책임 귀속주체를 결정하도록 구체화
건설업	추가공사 위탁 시 서면발급 및 원사업자 비용부담 명시	①“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조항에서 추가 공사에 따른 대금 결정 방법 등 구체화
정보 서비스업·광고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명시	①“지식재산권” 조항에서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를 결정하거나, 계약 전 발생한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를 수급사업자로 명시하는 내용 추가

3.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중견기업 2 / 일반 2

평가개요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는 대금지급일수(예: 마감일로부터 10일, 매월 25일, 00월 00일), 결제수단(예: 현금, 60일 어음)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은 반드시 '계약서'로 볼 수 있는 서면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협력사 포털 공지사항, 팸플릿, 단순 공문 등 '계약서로 볼 수 없는 자료'에 명시된 경우 점수를 획득하기 어렵다.

평가기준	등급	배점
• 계약서에 대금지급일수(예: 마감일로부터 10일, 매월 25일), 결제수단(예: 현금, 60일 어음)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	상	2
• 그렇지 않은 경우	하	0

업종별 배점표

항목	배점	
	중견기업	일반
•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2	

제출자료 안내

① 상세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명시된 계약서 및 발주서 등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기본거래계약서 상의 일반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조항만으로는 구체적인 결제수단, 특정된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등을 명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적 인정 불가
 ⇒ 예) "A기업은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B기업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등
- 다만, 기본거래계약서의 갑지 또는 전문 등에서 하도급대금지급일수 및 결제수단 등을 상세히 명시하였다면 해당 갑지 또는 전문을 제출하는 경우 실적 인정 가능
-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기본거래계약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개별계약서, 발주서, 영수증, 구매발주시스템·전자계약시스템 캡처본 등 구체적·특정된 하도급대금지급일수 및 결제수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계약서'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제출하여야 함

평가개요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는 ① 서면계약서에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되었는지 여부(1점) 및 ②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되었는지 여부(1점)로 평가한다.

여기서 '페널티 명시 여부'는 평가대상 기업 및 협력사가 각각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채무불이행(ex. 납기지연, 수령지연,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발생 시 그에 따른 페널티(ex. 손해배상 의무, 손해배상 예정(지체상금, 위약금), 위약벌, 계약해제·해지권 발생 등)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계약서 등 서면에 명시하고 있는지를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와의 비교 등을 통해 평가한다.

한편, '페널티의 형평성 수준'은 명시된 페널티가 평가대상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협력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페널티 수준이 형평성 있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와의 비교 등을 통해 평가한다.

주요 감점 사례 모음

페널티 명시 여부

- 협력사·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협력사·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또는 지체상금) 규정을 일반적인 '손해배상' 규정 외에 별도로 두고 있으면서도 평가대상 기업·원사업자의 '수령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다만, 평가대상 기업·원사업자의 '수령지연'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납품의 수령')와 동일한 수준에서 규정한 경우 부분 점수 부여 가능

페널티 형평성 수준

- 협력사·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페널티 산출금액이 계약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이 가능한 반면, 평가대상 기업·원사업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출식(ex. 지체상금 규정), 예시 등이 없이 추상적인 규정만 간략히 기재한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협력사·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 시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평가대상 기업·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반면, 평가대상 기업·원사업자가 수령지연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경우 등 페널티의 형평성을 상실한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협력사·수급사업자의 페널티 규정이 거래규모, 귀책사유 유무 등과 상관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반면, 그에 상응하는 평가대상 기업·원사업자의 페널티 규정은 이와 달리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평가항목
세부 구성 및
업종별
배점표**

평가 항목	배점	
	중견기업	일반
① 평가대상 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1	
② 페널티의 형평성 수준	1	

**제출자료
안내**

- ① 평가대상 기업 및 협력사(수급사업자)의 서면 계약서 상 계약불이행(납기지연, 수령지연, 계약해제·해지 사유 등)에 따른 페널티[손해배상의무, 손해배상 예정(지체상금, 위약금), 위약벌, 계약해제·해지권 발생 등] 내용과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비교표

작성양식

계약불이행 유형	관련 계약서 항목	공정위 표준 하도급계약서 조항	평가대상 기업 하도급계약서 조항	비고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	1) 손해배상의무			
	2) 손해배상 예정 (지체상금, 위약금 등)			
	3) 위약벌			
	4) 계약해제·해지			
원사업자의 '수령지연'	1) 손해배상의무			
	2) 손해배상 예정 (지체상금, 위약금 등)			
	3) 위약벌			
	4) 계약해제·해지			
계약해제·해지 사유	1)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공통 사유			
	2) 수급사업자 단독 사유			
	3) 원사업자 단독 사유			

- ※ 해당 양식파일은 협약 포털사이트(<http://gowith.ftc.go.kr/>)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음
- ※ 반드시 해당 양식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양식 작성방법

계약불이행 유형

- 상기 표 기재와 같이 3가지 유형에 한정하여 작성할 것

관련 계약서 항목

- 3가지 계약불이행 유형과 관련되어 많이 기재되는 내용·항목들을 분류한 것으로 가급적 수정하지 않고 상기 표 기재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평가대상 기업의 고유한 분류체계에 따라 내용과 항목을 서술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경우 수정 가능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조항

- 3가지 계약불이행 유형 및 이와 관련된 각 계약서 항목에 대해 공정위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기입

평가대상 기업 하도급계약서 조항

- 3가지 계약불이행 유형 및 이와 관련된 각 계약서 항목에 대해 평가대상 기업 하도급계약서가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기입

비고

-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이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등 특이사항 기입
- 평가대상 기업의 하도급계약서 상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 항목이 있는 경우,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위약벌' 조항이 없으므로 비교표 상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조항'란은 공란으로 두고 평가대상 기업 하도급계약서 조항만 기재
- 평가대상 기업의 서면 계약서 상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 항목이 없는 경우 전체를 공란으로 둘 것

작성 시 유의사항

- 계약서 조항 비교 작성 시 '조' 단위(ex. 계약서 제5조)가 아닌 '항' 단위(ex. 계약서 제5조 제①항)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5. 비밀유지계약 체결

정보서비스업·통신업(한정) 2

평가개요

평가대상 기업이 협약평가 대상기간 동안 SI 업종 협력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즉, 평가대상 기업이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였음에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것이 단 1건에 불과하더라도 점수를 획득하기 어렵다. 다만, 협약평가 대상기간 동안 기술자료 요구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SI 업종 협력사와 체결한 계약서에서 비밀유지 관련 조항을 명시하였는지를 살펴 평가한다.

업종별 배점표

평가 항목	배점
	정보서비스업·통신업
· 비밀유지계약 체결 여부	2

제출자료 안내

① 평가대상 기업과 협력사 사이에 체결된 비밀유지계약 내역과 비밀유지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제출 실적은 평가대상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협약을 기준으로 제출할 것

6. 선수금 비율 및 그 제고정도

광고업·인터넷플랫폼업(한정) 5

평가개요

선수금 비율 및 그 제고정도는 ① 선수금 비율(3점)과 ② 선수금 비율 제고정도(2점)로 평가한다.

여기서 '선수금'이란 광고대행사(또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인 평가대상 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외에 계약금, 착수금 명목으로 용역수행 이전에 광고대행사가 광고제작사에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총칭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반드시 선수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수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법률상 의무(하도급법 제 6조)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선수금'은 법률상 의무 이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수금'과 구별된다.

* 이때 선수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받은 금전이면 족하고 그 명칭 여부는 상관없다. 즉, 발주자가 '선수금' 명목으로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선수금'에 해당할 수 있다.

'선수금 비율'은 일정한 기간(1년) 동안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사에게 지급한 대금의 누적 총액 중 선수금 누적 총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선수금 비율

$$\left[\frac{\text{협약평가 대상 기간 동안 지급한 선수금 누적금액}}{\text{협약평가 대상 기간 동안 지급한 대금 누적금액}} \right] \times 3\text{점}$$

20%

※ 선수금 비율 20% 이상인 경우 만점(3점)

‘선수금 비율 제고 정도’는 협약평가 대상기간 동안의 선수금 비율이 그 직전년도 선수금 비율과 비교할 때 얼마만큼 높아졌는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선수금 비율 제고 정도

$$\left[\frac{\{\text{실제 선수금 비율}(\%) - \text{기존 선수금 비율}(\%)\}}{20\% - \text{기존 선수금 비율}(\%)} \right] \times 2\text{점}$$

※ 선수금 비율 20% 이상인 경우 만점(3점)

**평가항목
세부 구성 및
업종별
배점표**

평가 항목	배점
	광고업·인터넷플랫폼업
① 선수금 비율	3
② 선수금 비율 제고정도	2

**제출자료
안내**

① 협약평가 대상기간 및 그 직전년도 기간 동안 협력사에 지급한 전체 계약금액 및 선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각 연도별로 정리)

제출자료 작성방법

- 제출 실적은 평가대상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협약을 기준으로 제출할 것
- 협력사명, 전체 계약금액, 계약일자, 선수금 지급일자, 선수금 금액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 선수금 비율 제고정도 실적 산출 시, 협약평가 대상 기간이 1년이면 협약체결 전·후 1년을, 9개월이면 협약체결 전·후 9개월을 비교하여 산출함

예) 2024년 협약이행평가 신청 시 2023년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하므로 2023년 자료 및 그 직전년도인 2022년 자료를 각 연도별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7.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

광고업·인터넷플랫폼업(한정) 5

평가개요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은 ①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을 위한 절차 마련여부(2점)와 ② 대가 지급 실적(3점)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시안 등'이란 광고전략 및 광고컨셉을 구체화하여 스토리보드 또는 인쇄그래픽 등으로 표현한 제작물 후보안, 전자문서, 영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 절차 마련

평가 기준	등급	점수
① 사규 등에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 절차를 마련한 경우	상	2
② 사규 등에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하	0

② 대가 지급 실적

$$\left[\frac{\text{대가 지급 시안 등 건수}}{\text{입찰 과정에서 접수한 시안 등 총 건수}} \right] \times 3\text{점}$$

※ 모두 지급한 경우(100% 지급) 만점(3점)

평가항목 세부 구성 및 업종별 배점표

평가 항목	배점
	광고업·인터넷플랫폼업
①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 절차 마련 여부	2
② 대가 지급 실적	3

제출자료 안내

①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을 위한 절차 마련 설명 및 증빙 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절차 마련과 관련한 품의서, 절차가 반영된 사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② 전체 입찰 과정에서 접수한 시안 및 탈락한 시안 리스트 1부

제출자료 작성방법

- 협약평가 대상기간 중 진행한 입찰 목록, 해당 입찰에 참여한 협력회사 목록, 탈락한 시안 목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③ 위 ② 탈락 시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입금확인증, 시안비 지급 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1.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건설업 20 / 중견기업 50 / 일반 22

평가개요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는 ① 대금지급절차 마감 횟수(2점), ② 하도급대금 지급일수(11점, 중견 25점), ③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5점, 중견15점), ④ 현금성결제비율(4점, 중견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 구성 및
업종별
배점표

평가 항목	배점		
	건설업	중견기업	일반
① 대금지급절차 마감	-	-	2
②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11	25	11
③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5	15	5
④ 현금성 결제비율	4	10	4

1-1 대금지급절차 마감

평가개요

‘대금지급절차 마감’이란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사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 이에 대한 내부 적 지급결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약평가 대상기간 동안의 월평균 대금지급절차 마감 횟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산정 기준

- ‘협약평가 대상기간 동안의 월평균 마감횟수’로 산정
※ 협약기간이 '23.1월~12월이고, '23년 1월~6월까지 마감횟수가 월 1회, '23년 7월~12월까지 마감횟수가 월 3회라면, 실적은 월 2회로 산정

배점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	점수
월 3회 이상	2
월 2회	1
월 2회 미만	0

제출자료
안내

① 평가대상 기업의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 관련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마감횟수 변경 관련 품의서 등 결재서류, 마감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1-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평가개요

‘하도급대금 지급일수’라 함은 평가대상 기업이 대금지급절차 마감일(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협력사에게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날(대금지급기일)까지의 일수를 의미하며, 이를 산정·평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산식

$$\text{하도급대금 지급일수} = \sum \left(\frac{\text{협약평가 대상기간 동안 건별 지급금액} \times \text{지급일수}}{\text{총 채무액}} \right)$$

※ 건별지급금액 크기를 고려하며, 단순히 각 건별 대금지급일수의 산술 평균값이 아님

배점

일반	대금지급일수			점수	
	중견기업 (전년도 매출액)			일반	중견
	5천억 미만	5천억 ~ 1조 미만	1조 ~ 2조 미만		
10일 이하	40일 이하	25일 이하	15일 이하	11	25
10일 초과 12일 이하	40일 초과 42일 이하	25일 초과 28일 이하	15일 초과 19일 이하	10	23
12일 초과 14일 이하	42일 초과 44일 이하	28일 초과 31일 이하	19일 초과 23일 이하	9	21
14일 초과 16일 이하	44일 초과 46일 이하	31일 초과 34일 이하	23일 초과 27일 이하	8	19
16일 초과 18일 이하	46일 초과 48일 이하	34일 초과 37일 이하	27일 초과 31일 이하	7	17
18일 초과 20일 이하	48일 초과 50일 이하	37일 초과 40일 이하	31일 초과 35일 이하	6	15
20일 초과 22일 이하	50일 초과 52일 이하	40일 초과 43일 이하	35일 초과 39일 이하	5	13
22일 초과 24일 이하	52일 초과 54일 이하	43일 초과 46일 이하	39일 초과 43일 이하	4	11
24일 초과 26일 이하	54일 초과 56일 이하	46일 초과 49일 이하	43일 초과 47일 이하	3	9
26일 초과 28일 이하	56일 초과 58일 이하	49일 초과 52일 이하	47일 초과 51일 이하	2	6
28일 초과 30일 이하	58일 초과 60일 이하	52일 초과 55일 이하	51일 초과 55일 이하	1	3
30일 초과	60일 초과	55일 초과	55일 초과	0	0

감점 (중견기업 제외)

-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교부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감점

어음 교부일	감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초과 ~ 40일 이하	- 0.5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40일 초과 ~ 50일 이하	- 1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0일 초과 ~ 60일 이하	- 1.5

제출자료 안내

① 평가대상 기업의 대금지급일수 관련 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대금지급일수 변경 품의서 등 결재서류, 평가대상 기업의 대금지급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② 결제수단 및 대금지급일수 총괄표(엑셀 파일) 1부

작성 양식

- 해당 양식파일은 협약 포털사이트(gowith.ftc.go.kr)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음
※ 반드시 해당 양식파일을 사용하여 작성

양식 작성방법

- 다음 참고자료 '결제수단 및 대금지급일수 총괄표'내용 참고

③ 결제수단 및 대금지급일수 총괄표 작성 근거(Raw data) 증빙서류

제출자료 작성방법

- 재무회계시스템 등을 통하여 협력사명, 채무액, 현금, 현금성 금액, 기타 지급액, 지급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금지급 관련 자료
- 제출된 실적 중 일부를 샘플링 하여 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 예정(기업 ERP 시스템 열람 등)

참고자료

○ 결제수단 및 대금지급일수 총괄표 작성 안내

작성양식

① 결제수단 및 대금지급일수 총괄표

월	협력사에 대한 총 채무액(a)	총지급액			현금 결제비율 (b/a)	현금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 {(b+c)/a}	지급일수
		현금(b)	현금성(c)	기타 지급액(d)			
1							
...							
합계							지급일수 평균

총채무액	
총(지급금액X지급일수)	
지급일수 평균	

②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협력 업체명	전표 번호	마감일 (a)	채무액	지급일 (b)	지급 금액 (c)	결제수단 (현금, 현금성, 기타)	지급일수 (d=b-a)	지급금액X 지급일수 (e=cXd)	지급달
...									
...									

양식 구성 및 작성 순서

[구성]

- ① 총괄표 ②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작성순서]

- ②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시트 데이터 입력 → ① 총괄표 시트 값 확인
 (하도급대금지급현황 시트에 협약기간 동안의 협력사별 대금지급 증빙 자료 입력 시, 총괄표 시트에 '협력사에 대한 총 채무액·결제수단별 총 지급액(현금비율/현금성 결제비율)·지급일 평균일수'가 자동 계산/반영됨)

※ ① '총괄표' 시트에 별도 입력 및 수정 금지(시트 잠금)

양식 작성방법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시트 작성방법]

① 실적 입력 방법

- 실적자료 입력란 : B~H열
- 수식 적용 필요란* : I~K열

* [수식] I열 : F행 - D행 / J열 : G행 X I행 / K열 : =MONTH(F행)

※ I2000, J2000, K2000까지는 수식 반영되어 있음(실적 자료가 이를 초과할 경우 수식 추가 적용 필수)

※ 금액단위 : 원

② 실적자료 용어 설명

- 마감일: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 채무액: 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청구금액
- 지급일: 해당 거래 건의 실 대금 지급일
- 지급금액: 실제 지급한 금액
- 결제수단** : 현금 / 현금성 / 기타 선택 입력

** [결제수단]

① 현금 : 현금 및 상생결제시스템 [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구매론,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10일 이내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② 현금성 : ① 외 현금성 [만기 1일 초과 60일 이하인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 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③ 기타 : 기타 지급 (①, ② 외)

[실적자료 입력 시, 결제수단 유의사항]

※ i) 현금성결제비율 평가항목에서 정의하는 '현금성'과 ii) 실적자료 제출 시 구분하는 '현금성의 범위'가 상이함에 유의

※ 현금성 범위

i) 현금성결제비율 평가항목	현금 및 상생결제, 만기 1일 초과 60일 이하인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총괄표	현금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 (㉔+㉕)/㉖
ii) 실적자료	만기 1일 초과 60일 이하인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① 현금 및 상생결제 미포함	
	총괄표	총지급액 하위 현금성(c)

1-3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평가개요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이라 함은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사에게 지급한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구매론, 발행일 부터 만기까지 10일 이내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을 의미하며, 이를 산정·평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산식

$$\left[\frac{\text{현금 및 상생결제비율}(\%)}{100(\%)} \right] \times (\text{만점})$$

배점

구분		만점 기준
일반		100%
중견	5천억 미만	40% 이상
	5천억 이상 1조원 미만	50% 이상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60% 이상

제출자료 안내

① 평가대상 기업의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관련 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결제수단 변경 품의서 등 결재서류, 평가대상 기업의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 상환청구권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② 결제수단 및 대금지급일수 총괄표(엑셀 파일) 1부

제출자료 작성방법

- 앞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결제수단 및 대금지급일수 총괄표(엑셀 파일)를 제출하였다면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1-4 현금성결제비율

평가개요

‘현금성결제비율’이란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사에게 지급한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성결제 수단, 즉 앞서 살펴본 ‘현금 및 상생결제’를 포함하여 만기 1일 초과 60일 이하인 어음대체결제 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을 의미하며, 이를 산정·평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산식

$$\left[\frac{A*(\%)}{100(\%)} \times (\text{만점}) \times \frac{3}{8} \right] + \left[\frac{\text{현금성결제비율}(\%)}{100(\%)} \times (\text{만점}) \times \frac{5}{8} \right]$$

*A = 현금성결제비율 - (만기60일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담보대출·구매론을 통한 결제비율)

제출자료 안내

① 평가대상 기업의 현금성결제비율 관련 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결제수단 변경 품의서 등 결재서류, 평가대상 기업의 현금성결제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② 결제수단 및 대금지급일수 총괄표(엑셀 파일) 1부

제출자료 작성방법

- 앞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결제수단 및 대금지급일수 총괄표(엑셀 파일)를 제출하였다면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2.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건설업 3 / 중견기업 1 / 일반 1

평가개요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는 평가대상 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ex. 납기지연, 수령지연,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따른 페널티 규정[ex. 손해배상 의무, 손해배상 예정(지체상금, 위약금), 위약벌, 계약해제·해지권 발생 등]에 따라 적절하게 페널티를 부과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페널티 부과 실적이 없을 경우 부과수준 및 형평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때 ① 서면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과 원사업자의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 관련 규정이 모두 명시되고 ②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평가기준	등급
• 평가대상 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페널티를 부과한 경우	상
• 평가대상 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하

※ 페널티 부과 실적이 없을 경우 부과 수준 및 형평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평가항목 세부 구성 및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건설업	중견기업	일반
•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3	1	1

제출자료 안내

① 협약평가 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기업 및 협력사 페널티 부과 리스트 1부

제출자료 작성방법

- 제출 실적은 평가대상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협약을 기준으로 제출할 것

② 평가대상 기업 및 협력사 페널티 부과 기준에 대한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평가항목의 제출자료로 같음할 수 있음

③ (페널티 부과 실적이 있는 경우) 페널티 규정에 따라 협력사에게 페널티를 부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ERP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협약평가 대상기간 중 협력사 대상 페널티 부과 실적 엑셀 파일 및 페널티 부과 기준이 되는 지체상금요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면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④ (페널티 부과 실적이 없는 경우) 협약평가 대상기간 중 페널티 부과 실적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페널티 부과 실적이 없다는 취지의 평가대상 기업의 확인서면을 제출할 것

3.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건설업 3 / 중견기업 2 / 일반 2

평가개요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어부는 ①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사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직보체계 등 분쟁조정절차 및 기구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및 ② 수급사업자의 의견 청취절차를 마련하였는지 여부로 평가한다.

주요 인정·감점 사례 모음

인정 사례

- 절차의 신속성을 위하여 분쟁 접수일 기준 5 영업일 이내 조사에 착수하고 10 영업일 이내 대표 이사에게 보고하는 경우
- 절차의 신속성을 위하여 분쟁조정절차를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단순 질의는 부서장, 위법사항은 컴플라이언스 팀장, 중대 사항은 경영진에 보고하는 경우
- 하도급 거래 관련 분쟁발생 시 내부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경우
- 금액을 특정 하는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영진 직보체계를 마련한 경우
- 대표이사 직속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사와의 분쟁을 조정 및 심의하는 경우
- 내부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협의회를 병행하여 분쟁조정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감점 사례

- 수급사업자의 의견 청취절차가 ‘구매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평가항목 세부 구성 및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건설업	중견기업	일반
① CEO에 대한 직접보고체계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 마련	2	1	1
② 수급사업자의 의견 청취 절차 및 창구 마련	1	1	1

세부 항목별 제출자료 안내

(1)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 마련 [상/하]

- ① 평가대상 기업의 분쟁조정 절차 반영 규정 1부
- ② 평가대상 기업의 분쟁조정 절차 마련을 위한 내부결재 문서
- ③ 평가대상 기업의 분쟁조정 실적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분쟁조정 신청내용(계약건명, 계약기간, 계약일자를 알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분쟁 조정 심의건 등 안건 서류, 위원들의 의결서 사본 전체, 회의록, 경영진에 보고한 내부 결재 서류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구분	관련 제출자료															
분쟁조정 신청내용	① 계약 건 명 ② 계약 기간 ③ 계약서 사본 <작성 예시>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계약명</th> <th>계약 기간</th> <th>분쟁조정 신청 내용</th> <th>계약서 첨부</th> </tr> </thead> <tbody> <tr> <td>1</td> <td></td> <td></td> <td></td> <td>*별첨 첨부</td> </tr> <tr> <td>2</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연번	계약명	계약 기간	분쟁조정 신청 내용	계약서 첨부	1				*별첨 첨부	2
	연번	계약명	계약 기간	분쟁조정 신청 내용	계약서 첨부											
1				*별첨 첨부												
2												
분쟁조정 안건 서류	• 내부결재 문서, 회의록 등															

(2)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상/하]

- ① 평가대상 기업의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 절차 규정 및 내부결재 문서
- ② 평가대상 기업의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 절차 담당 부서 조직도
- ③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사 의견을 청취한 접수 내역 및 처리 실적

제출자료 작성방법

- 의견청취 내용(협력사명, 신청 일자, 신청 내용, 처리 실적), 처리 내용을 경영진에 보고한 내부결재 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구분	관련 제출자료															
의견 청취 창구 설명	• 유형 (홈페이지 VOC 창구, 협력사 소리함 등) • 홈페이지 캡처 등 세부 증빙 자료															
담당부서	• 부서명 • 조직도 등 업무 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증빙 자료															
의견 청취 내역 및 처리 실적	<작성 예시>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협력사명</th> <th>신청일자</th> <th>신청 내용</th> <th>처리실적</th> </tr> </thead> <tbody> <tr> <td>1</td> <td></td> <td></td> <td></td> <td>*별첨 첨부</td> </tr> <tr> <td>2</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연번	협력사명	신청일자	신청 내용	처리실적	1				*별첨 첨부	2
	연번	협력사명	신청일자	신청 내용	처리실적											
1				*별첨 첨부												
2												

4.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중견기업 2 / 일반 2

평가개요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은 협력사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사용하여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협력사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았는지 유무와는 별개로 ①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양식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② 실제 기술자료를 제공받았을 경우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로 나누어 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 구성 및 업종별 배점표

항목	배점	
	중견기업	일반
①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양식 마련	1	1
② 비밀유지계약 체결 실적 ※ 거래관계에서 협력사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지 않았을 경우 ①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양식을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점수 부여	1	1

세부 항목별 제출자료 안내

① 평가대상 기업이 협약평가 대상 기간 동안 사용한 비밀유지계약서 표준 양식 사본 1부

② 협약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대상 기업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실적

제출자료 작성방법

- 공정위가 보급하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양식('22. 2. 18.)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 홈페이지(<https://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비밀유지계약서
- 비밀유지계약 체결 실적이 없는 경우, 협력사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어 비밀유지계약 체결 실적이 없다는 취지의 평가대상 기업의 확인서면을 제출할 것

PART.2

협약이행평가 실적자료



02 범위반 예방 및 범준수 노력

1. 범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 사항' 준수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 범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2. 범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0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건설업	중견기업	일반
17	18.5	18.5

1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건설업 11 / 중견기업 15.5 / 일반 12.5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건설업 2 / 중견기업 4.5 / 일반 2.5

평가개요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실천사항'의 준수여부는 실천사항 내용의 사규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실적 여부에 대한 항목별 이행도를 합산하여 평가(참고자료, 가이드라인 등 사내 구속력이 없는 수단은 인정하지 않음)한다.

이 때 사규는 반드시 '사내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어야 하며, 업무 매뉴얼, 참고자료, 가이드라인 등 사내 구속력이 없는 규범에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규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주요 감점 사례 모음

사규 반영 여부

- 기업 실정에 맞게 실천사항의 내용을 변경·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나 공정위 실천사항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당사의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은 공정위의 실천사항을 준용함'과 같이 사규에 실천사항에 대한 내용 없이 준용규정만 둔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다음과 같이 내부심의위원회 개최 주기를 월 1회보다 늦춘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해당 사규 내 '내부심의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경우, 공정위가 정한 기준인 '월 1회'보다 개최 주기를 늦춘 경우에 해당
 - 해당 사규 내 '심의위원회는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며, 필요 시 서면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월 1회 이상 정기 개최 관련 규정 누락

- 다음과 같이 심의 대상 하도급계약의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해당 사규 내 내부심의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을 특정*짓지 아니한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예) 평가대상기업의 직전사업년도의 하도급거래금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별계약금액이 그 10% 상당액에 해당하는 경우 등
 - 하도급거래가 소액으로 빈번하게 발주가 이루어져 사전심의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 업종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사전심의 대상 선정기준(예: 직전사업년도 전체 하도급거래 규모가 큰 상위 협력사를 선정하여, 그 중 매월 1개 이상의 업체와의 하도급거래 적법성 심의 등)을 정하여 실효성 있는 심의위원회 운영 필요
※ 다만, 이 경우 협력사와의 하도급거래가 소액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 등 해당 업종의 특성에 대해 증빙자료 등으로 소명 요망
- 다음과 같이 임직원 제재조치 관련 조항을 누락·변용한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해당 사규 내 심의 안건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소지와 관련하여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심의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심의 안건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소지 시 자진시정하도록 사규화하였으나 임직원 제재조치 관련 규정을 누락한 경우, 해당 심의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생략

공개 여부

- ‘공개’는 대외적으로 세부내용을 포함한 전문이 공개되어야 하므로 “당사는 공정위의 협력업체 선정·운용실천사항을 사규 세부내용에 반영·운영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선언에 그치고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협력사가 볼 수 없는 사내 그룹웨어, 시스템 등에만 올려둔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여부

- 관련 내부 규정에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구성된 자가 현재 재직하지 않거나 타 부서에 있는 경우, 특정되지 않는 경우(예) ○○팀이라고만 규정하거나 관련 부서장·담당자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 점수 획득 어려움
- 하도급 심의위원회 관련 내부 규정, 별도 인사명령·임명 등을 통해 위원장 및 위원이 특정되어야 함 (특정 직책과 연동 가능, 예)위원을 ○○팀장, xx팀장 등으로 구성)

**평가항목
세부 구성 및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건설업	중견기업	일반
①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관련기준(사규) 마련	0.7	1.2	0.9
② ①의 내용을 공개(홈페이지 등)하거나 협력사에 고지	0.1	1.05	0.1
③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0.6	1.25	0.9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실적(실천사항 내용 심의) :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에 관한 적법성 사전심의(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 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및 협력회사 선정,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 심의	0.6	1.0	0.6

**세부 항목별
제출자료
안내**

(1) 실천사항 주요내용의 사규 반영 여부 [상/중/하]

- ① 평가대상 기업의 실천사항 반영 사규(이하 '해당 사규') 1부
- ② 공정위 실천사항과 해당 사규의 비교표(엑셀 파일) 1부

작성양식

공정위 실천사항	평가대상 기업 사규	비고

- ※ 해당 양식파일은 협약 포털사이트(<http://gowith.ftc.go.kr/>) 공지사항에 업로드 되어 있음
- ※ 반드시 해당 양식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양식 작성방법

공정위 실천사항

- 공정위가 보급하는 실천사항 조항
 - ※ 누락 없이 전부 기입 (공정위 실천사항은 제공하는 해당 양식파일에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대상 기업은 해당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 것)
 - ※ 공정위가 보급하는 실천사항은 협약 포털사이트 공지사항 참고

평가대상 기업 사규

- 공정위가 보급한 실천사항 조항에 대응하는 평가대상 기업 사규 조항을 기입
 - ※ 공정위 실천사항과 동일한 조항도 누락 없이 전부 기입

비고

- 공정위가 정한 기준 대비 '변형, 누락, 신실'한 조항의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한 설명 기입

- ③ 공정위 실천사항 내용을 사내 구속력 있는 사규 형태로 반영하였다는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관련 사규 전체, 내부 결재문서 사본 등)
- ④ 실천사항 관련기준(사규) 제·개정 연혁 정리·설명자료 및 증빙자료(제·개정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본 등)

(2) 반영된 내용의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 [상/하]

① 해당 사규를 어떻게 공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홈페이지 게재를 위한 결재서류 등 의사결정 관련자료 또는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자료 등을 제출할 것

(3)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상/중/하]

①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위원 임용서류 등)

(4) 내부심의위원회 실적 [상/중/하]

① 심의위원회 심의실적 설명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심의위원회 월 별 회의록, 심의일, 심의내용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② 심의실적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심의건, 협력사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심의건(계약 심의건별로 계약서 사본 첨부→계약건명, 계약기간, 계약일자를 알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이의신청 심의건,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 심의건 등 안건서류, 위원들의 의결서 사본 전체, 회의록, 회의개최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 세부 안건별 증빙자료 제출 요망

구분	관련 제출자료						
1) 정기 개최	월별 의결서 및 회의록 (의결서 사본 전체, 회의록, 회의개최 사진 등)						
2)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 적법성 심의	① 하도급계약(위수탁거래 포함) 및 심의 건수 현황 <작성 예시>						
	구분	연간 하도급계약건수 (※일반 위수탁거래 포함)			사전심의 계약건수		
	계약 상대방 건수	협력사	비협력사	전체	협력사	비협력사	전체
3) 협력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심의	② 사전심의를 한 계약 리스트 및 계약서 사본 (계약건명, 계약일자 및 기간, 계약금액 등 기재)						
4) 협력사 미선정·등록 취소 이의신청 심의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과 관련된 내부 기준의 제·개정 이력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건설업 2/광고업 3.5/중견기업 4.5/일반 2.5

평가개요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여부는 동 실천사항의 내용을 평가대상 기업의 사규로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실제 사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항목별 이행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때 사규는 반드시 '사내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어야 하며, 업무 매뉴얼, 참고자료, 가이드라인 등 사내 구속력이 없는 규범에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규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요 감점 사례 모음

사규 반영 여부

- 기업 실정에 맞게 실천사항의 내용을 변경·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나 공정위 실천사항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단, 업종 특성상 실천사항 내 해당 업종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조항을 생략하는 것은 가능
 - 예)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Ⅲ. 1. 다. 두 번째 항 ㉓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 하기 전'과 같은 건설업종 특수조항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생략하더라도 실적 인정
- 다음과 같이 공정위가 정한 기준*보다 완화 및 생략하여 운영한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 공정위 실천사항 Ⅲ.1.바.(1) / Ⅲ.3.나. / Ⅲ.3.다. / IV
 - 실천사항 내 'Ⅳ.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를 준수하고 있는 사규라 보기 어려움
 - 실천사항 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 결과 서면 발급 기한을 공정위가 정한 기준인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보다 완화하여 감점

공개 여부

- '공개'는 대외적으로 세부내용을 포함한 전문이 공개되어야 하므로 "당사는 공정위의 서면발급 및 보존 실천사항을 사규 세부내용에 반영·운영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선언에 그치고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협력사가 볼 수 없는 사내 그룹웨어, 시스템 등에만 올려둔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표준양식 채택 여부

- 발급대상 서면 7종 중 공정위가 보급한 서면 4종을 구비하였으나 기업 자체 표준양식 3종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평가항목 세부 구성 및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건설업	광고업	중견기업	일반
① 실천사항 내용을 하도급 업무관련 관련기준(사규)에 반영	0.7	1.1	1.45	0.9
② ①의 내용을 공개(홈페이지 등)하거나 협력사에 고지	0.1	0.2	0.3	0.1
③ 협력사에게 계약서 등 서면 발급 시 표준양식(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양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	0.6	1.2	1.5	0.9
④ 서면의 관리대장 사용여부(누락 여부 포함)	0.6	1.0	1.25	0.6

세부 항목별 제출자료 안내

(1) 실천사항 주요 내용의 사규 반영 여부 [상/중/하]

- ① 평가대상 기업의 실천사항 반영 사규(이하 '해당 사규') 1부
- ② 공정위 실천사항과 해당 사규의 비교표(엑셀 파일) 1부

작성양식

공정위 실천사항	평가대상 기업 사규	비고

- ※ 해당 양식파일은 협약 포털사이트(<http://gowith.ftc.go.kr/>) 공지사항에 업로드 되어 있음
- ※ 반드시 해당 양식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양식 작성방법

공정위 실천사항

- 공정위가 보급하는 실천사항 조항
 - ※ 누락 없이 전부 기입 (공정위 실천사항은 제공하는 해당 양식파일에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대상 기업은 해당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 것)
 - ※ 공정위가 보급하는 실천사항은 협약 포털사이트 공지사항 참고

평가대상 기업 사규

- 공정위가 보급한 실천사항 조항에 대응하는 평가대상 기업 사규 조항을 기입
 - ※ 공정위 실천사항과 동일한 조항 및 기본 계약 조항도 누락 없이 전부 기입

비고

- 공정위가 정한 기준 대비 '변형, 누락, 신설'한 조항의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한 설명 기입

- ③ 공정위 실천사항 내용을 사내 구속력 있는 사규 형태로 반영하였다는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관련 사규 전체, 내부 결재문서 사본 등)
- ④ 실천사항 관련기준(사규) 제·개정 연혁 정리·설명자료 및 증빙자료(제·개정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본 등)

(2) 반영된 내용의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 [상/하]

① 해당 사규를 어떻게 공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홈페이지 게재를 위한 결재서류 등 의사결정 관련자료 또는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자료 등을 제출할 것

(3) 수급사업자에 대한 계약서 등 서면발급 시 표준양식을 채택하고 있을 것 [상/중/하]

① 평가대상 기업이 협약평가 대상 기간 동안 사용한 다음 7가지 서면 표준 양식 및 해당 양식 사용 실적

	발급대상 서면	표준 양식
1	기본계약서	표준하도급 계약서
2	하도급계약 확인 서면	실천사항 별지2
3	감액 서면	실천사항 별지3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실천사항 별지4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평가대상 기업 자체 표준양식
6	검사결과 통지서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제출자료 작성방법

- 발급대상서면 7종 중 업종 특성 상 발급이 불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표준양식 및 사용 실적 자료 제출 생략 가능
 ⇒ 예) 건설업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생략 가능
 식품업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단가합의서'로 대체
- 평가대상 기업 자체 표준양식의 경우 별도의 서면 양식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구매발주시스템, 전자계약시스템,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양식에 준하는 내용을 협력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통지·공개하였다면 인정 가능
 ※ 이 경우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시스템 캡처 화면, 협력사에 송부한 문서 사본, 이메일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것

(4) 서면발급대장의 마련 [상/하]

① 서면의 발급·보존과 관련한 관리대장 사용여부 설명자료 및 관리대장 사본

제출자료 작성방법

- 양이 많은 경우 서면발급대장 샘플을 제출할 것
- 평가대상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면발급대장(구매발주시스템,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 서면발급대장이 전산시스템 등으로 구축된 경우 해당 시스템 구동 화면 캡처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것
- 서면발급대장은 반드시 전산으로 구축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인정 가능하며, 발급대상서면 7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리철 등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샘플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것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건설업 2 / 중견기업 4.5 / 일반 2.5

평가개요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여부는 그 내용을 사규화하고, 이를 공개(고지)하며,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준 및 절차 등 실천사항 주요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였는지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이행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때 사규는 반드시 '사내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어야 하며, 업무 매뉴얼, 참고자료, 가이드라인 등 사내 구속력이 없는 규범에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규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주요 감점 사례 모음

사규 반영 여부

- 기업 실정에 맞게 실천사항의 내용을 변경·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나 공정위 실천사항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단, 업종 특성상 실천사항 내 해당 업종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조항을 생략하는 것은 가능
 - ☞ 예)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IV. 2. 마.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건설 관련 계약인 경우)와 같은 건설업종 특수조항인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생략하더라도 실적 인정
- 다음과 같이 공정위가 정한 기준보다 완화 및 생략하여 운영한 경우 점수 획득이 어려우며, 특히 실천사항 내 III.1.가.의 <계약체결방식>, III.1.나.의 <계약방식 선택의 기준> 또는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요건>을 기업 실정에 맞게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되 해당 내용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함
 - <계약체결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방식 선택의 기준> 또는 <계약체결방식의 선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계약체결방식의 선택 요건>을 반영하였으나 '평가대상 기업의 거래규정 상 수의계약, 일반경쟁계약을 이용하고 있다.'고 규정한 경우와 같이 <계약체결방식>이 실천사항에 준하는 구체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실천사항 내 'IV.2.차. 부당특약 행위' 등 일부를 누락한 경우
 - 실천사항 내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결과 통지 기한을 공정위가 정한 기준인 '10일 이내'보다 완화한 경우

공개 여부

- ‘공개’는 대외적으로 세부내용을 포함한 전문이 공개되어야 하므로 "당사는 공정위의 계약체결 실천사항을 사규 세부내용에 반영·운영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선언에 그치고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협력사가 볼 수 없는 사내 그룹웨어, 시스템 등에만 올려둔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계약서 반영 여부

-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한 경우) 별도 평가 없이 해당 세부항목 점수 인정
- (표준하도급계약서 미도입한 경우) 실천사항을 사규에 반영하였더라도 다음의 실천사항 주요 내용을 평가대상 기업에서 이용하는 계약서에서 완화 및 생략하여 운영하는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주요내용 리스트]

조항 번호	계약서 반영 내용
IV. 1. 가. IV. 1. 나.	서면발급 및 보존
IV. 1. 라.	검사의 방법 및 시기
IV. 1. 마.	하도급대금, 선금금 등 지급 기간
IV. 2.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IV. 2. 라.	부당한 경영간섭
IV. 2. 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IV. 2. 사.	원재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V. 2. 가.	부당한 위탁취소 등
V. 2. 나.	부당한 반품
V. 2. 다.	부당감액
V. 2. 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V. 2. 바.	부당한 대물변제
V. 2. 자.	물품 등의 구매강제행위
V. 2. 카.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평가항목
세부 구성 및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건설업	중견기업	일반
① 실천사항 내용을 계약업무 관련규정(사규)에 반영	0.7	1.2	0.9
② ①의 내용을 공개(홈페이지 등)하거나 협력사에 고지	0.1	0.3	0.1
③ 실천사항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	0.6	2.5	0.9
④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실천사항 III.1) 마련 및 계약체결 시 명확한 납기 설정	0.6	0.5	0.6

**세부 항목별
제출자료
안내**

(1) 실천사항 주요내용의 사규 반영 여부 [상/중/하]

- ① 평가대상 기업의 실천사항 반영 사규(이하 '해당 사규') 1부
- ② 공정위 실천사항과 해당 사규의 비교표(엑셀 파일) 1부

작성양식

공정위 실천사항	평가대상 기업 사규	비고

- ※ 해당 양식파일은 협약 포털사이트(<http://gowith.ftc.go.kr/>) 공지사항에 업로드 되어 있음
- ※ 반드시 해당 양식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양식 작성방법

공정위 실천사항

- 공정위가 보급하는 실천사항 조항
 - ※ 누락 없이 전부 기입 (공정위 실천사항은 제공하는 해당 양식파일에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대상 기업은 해당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 것)
 - ※ 공정위가 보급하는 실천사항은 협약 포털사이트 공지사항 참고

평가대상 기업 사규

- 공정위가 보급한 실천사항 조항에 대응하는 평가대상 기업 사규 조항을 기입
 - ※ 공정위 실천사항과 동일한 조항 및 기본 계약 조항도 누락 없이 전부 기입

비고

- 공정위가 정한 기준 대비 '변형, 누락, 신설'한 조항의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한 설명 기입

- ③ 공정위 실천사항 내용을 사내 구속력 있는 사규 형태로 반영하였다는 설명자료 및 증빙 자료(관련 사규 전체, 내부 결재문서 사본 등)
- ④ 실천사항 관련기준(사규) 제·개정 연혁 정리·설명자료 및 증빙자료(제·개정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본 등)

(2) 반영된 내용의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 [상/하]

① 해당 사규를 어떻게 공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홈페이지 게재를 위한 결재서류 등 의사결정 관련자료 또는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자료 등을 제출할 것

(3) 실천사항 주요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상/중/하]

① 실천사항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였다는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

제출자료 작성방법

- 실천사항 주요내용이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요건·방법 및 절차 등 하도급법 상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의미함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 경우, 별도 자료 제출 하지 않아도 됨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평가항목에서 제출된 계약서 양식 및 계약서 사본으로 같음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 기업이 사용하는 계약서와 실천 사항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실천사항 주요내용 반영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4) 계약체결방법 선택기준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상/중/하]

- ① 어떠한 경우에 어떤 계약방식을 사용하는지 명시된 내부 규정(구매규정 등)
- ② 계약체결 시 명확한 납기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계약서 샘플, 구매발주·전자 계약서시스템 캡처 화면)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광고업 2 / 중견기업 X / 일반 3

평가개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부는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 행위의 발생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였는지 평가한다.

이 때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일부 미진한 점이 있는 경우 감점할 수 있으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어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경우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주요 인정·감점 사례 모음

인정 사례

- 대금 감액 시 양 당사자의 인증 후 시스템에 반영하는 경우
- 부품이 입고되는 대로 생산부서에서 입고일자를 자동으로 등록하고 임의로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한 시스템
-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입고 물량에 대해 수량 및 납기일 조정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ERP를 통해 입고된 제품은 일괄적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스템
-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일정 기간을 초과한 계약 건은 구매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 대금지급 발생을 방지하는 경우
- 감사실에서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는 경우
- 주요 협력사 및 구매 부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점검 설문조사를 월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감점 사례

- 대금지급 지연방지 시스템으로 업무 매뉴얼을 제출하였으나, 불공정행위의 발생 소지를 최소화시킬 목적의 별도 시스템이 아닌 일반적인 대금지급 절차에 대한 규정일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광고업	일반
•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3

제출자료 안내

① 평가대상 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관련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자료,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내부결재 서류, 샘플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중견기업 2 / 일반 2

평가개요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여부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독자적인 부서 설치 여부로 평가한다.

이 때 공정거래 추진부서가 ‘구매부서’ 내 설치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점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단, 구매부서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조직 구성, 업무 분장 등에서 독립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점수 인정이 가능하다.

☞ 주요 감점 사례 모음

- ‘부서’는 전담부서여야 하므로 독립된 부서이거나 TFT(품위서 확인)이어야 하며, 고유 업무가 있는 부서로 하여금 협력사 지원을 하게 하는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구매본부 내 구매기획팀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업무를 총괄하더라도, 조직도와 업무 분장표를 통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협약평가 대상 기간 이후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TFT를 1회성 혹은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중견기업	일반
•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	2

제출자료 안내

- ① 평가대상 기업이 공정거래 추진부서를 설치한 사실과 관련한 내부결재 서류
- ② 독립된 업무 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조직도, 업무분장표, 업무 설명서, 사규 등)

1.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중견기업 1 / 일반 4

평가개요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여부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기한내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는지, 하자보수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하였는지 평가한다.

이 때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를 마련 및 운영하더라도 일부 미진한 점이 있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점할 수 있다.

 주요 감점 사례 모음

- 계약 종료 후 하도급법 위반 소지 등을 검토하는 별도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가 아닌, ERP 등을 통한 대금지급지연, 납기 관리 실적을 제출 하는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적법성 사후검증절차를 사전심의위원회와 함께 운영하더라도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사전 심의 내용만 명시하고, 사후검증 내용을 누락한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적법성 사후검증절차관련 회의록에 협력사 페널티 금액에 대하여 승인하는 내용이 존재하나, 해당 금액의 적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판단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적법성 사후검증절차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회의록도 존재하나 관련 내부 규정, 별도 인사 명령 임명 등을 통해 위원장 및 위원이 특정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지나치게 많은 계약 건을 일괄하여 처리하거나 계약 종료 이후 상당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처리 하는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 다만, 협력사와의 하도급거래가 소액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 등 해당 업종 특성에 따른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별도 소명 필요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 점	
	중견기업	일반
•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1	4

**제출자료
안내**

- ① 평가대상 기업의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에 대한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검증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내부 품의서, 위원 임용서류, 사규 등)
- ② 평가대상 기업의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운영 실적 증빙자료[하도급계약 및 사후 검증 건수 현황(연간 하도급계약건수, 사후심의 계약건수), 사후 검증한 계약 리스트 및 사후 검증 내용(계약건명, 계약일자 및 기간, 계약금액, 사후검증 내용), 사후검증 내용을 경영진에 보고한 내부 결재 서류 등]

제출자료 작성방법

구분	관련 제출자료																																	
절차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절차 관련 내부품의서 • 사후검증을 위한 위원 임용서류 • 사후검증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등 																																	
운영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검증절차 운영 실적 (체크리스트 또는 의결서 사본 전체, 회의록, 회의개최 사진 등) 																																	
운영 세부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계약(위수탁거래 포함) 및 사후 검증 건수 현황 <p><작성 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연간 하도급계약건수 (※일반 위수탁거래 포함)</th> <th colspan="3">사후심의 계약건수</th> </tr> <tr> <th>협약사</th> <th>비협약사</th> <th>전체</th> <th>협약사</th> <th>비협약사</th> <th>전체</th> </tr> </thead> <tbody> <tr> <td>계약 상대방</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건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연간 하도급계약건수 (※일반 위수탁거래 포함)			사후심의 계약건수			협약사	비협약사	전체	협약사	비협약사	전체	계약 상대방							건수						
	구분	연간 하도급계약건수 (※일반 위수탁거래 포함)			사후심의 계약건수																													
		협약사	비협약사	전체	협약사	비협약사	전체																											
	계약 상대방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 검증한 계약 리스트 및 사후 검증 내용 <p><작성 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연번</th> <th>계약명</th> <th>계약일자 및 기간</th> <th>계약금액</th> <th>사후 검증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td> <td></td> <td></td> <td>-대금지급 완료 여부 -하자보수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td> </tr> <tr> <td>2</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연번	계약명	계약일자 및 기간	계약금액	사후 검증 내용	1				-대금지급 완료 여부 -하자보수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	2													
연번	계약명	계약일자 및 기간	계약금액	사후 검증 내용																														
1				-대금지급 완료 여부 -하자보수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																														
2																														

2.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중견기업 2 / 일반 2

평가개요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여부는 임직원의 소속부서와 관계없이 법위반 임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제공하는지, 구매담당 임원평가 시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추진실적에 중점을 두는지를 놓고 평가한다.

이 때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사규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과 같이 개별 법령이 명시되어야 하며 "업무 관련 법령 위반"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해서는 점수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요 감점 사례 모음

-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이 제공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단순히 "업무 관련 법령 위반"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공정거래 및 하도급 관련 법령을 명시하더라도 위반 시 제재하는 규정이 아닌 단순히 준수 의무만 부과하는 경우
 - 공정거래 및 하도급 관련 법령이 아닌 공정거래 윤리규정 위반 시 징계하도록 명시하는 경우
 -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은 불이익조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사규는 반드시 '사내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어야 하며, 업무 매뉴얼, 참고자료, 가이드라인 등 사내 구속력이 없는 규범에 인사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 인사규정 내 별첨으로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별첨 서류와 관련한 제·개정 품의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구매 담당 임원이 아닌 팀 단위의 평가 항목으로 중 하나로 상생협력 실적을 반영하는 경우 점수 획득 어려움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 점	
	중견기업	일반
•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	2

협약평가개요

계약의공정성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평가점수 일람표

포털 설명서

**제출자료
안내**

- ① 공정거래 및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을구속력 있는 사규 형태로 반영하였다는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해당 사규제·개정 연혁, 제·개정 관련 내부결재 서류 사본 등)
- ②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이 반영된 인사 평가자료(인사 관련 내부결재 서류, 품의서 등)
- ③ 구매 담당 임원 평가 시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추진실적을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관련 사규, 평가 배점표, 실제 인사평가 서류 사본 등)

PART.2

협약이행평가 실적자료



03 상생협력 지원

1. 금융(자금)지원
2. 기술지원 및 보호
3. 인력·채용 지원
4.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5. 효율성 증대 정도
6.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
7. SW 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8. 위생지원
9. 원물생산자 직접지원
10. 교육지원
11. 재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불
12. 기타 가점 항목

03

상생협력 지원

제조업	건설업	정보서비스업·통신업	식품업	광고업·인터넷플랫폼업	중견기업
35	29	30	32	22	36(가점)

1

금융(자금) 지원

식품업 8 / 중견기업 4(가점) / 일반 9

평가개요

금융(자금) 지원이라 함은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사에게 원자재·장비구입비, 생산자금, 설비투자비, 기술(개발·연구)자금 및 운영비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자금)지원은 ① 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8.5점, 식품업 7.7점)과 ② 간접지원 제도 도입(0.5점, 식품업 0.3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비협약사) 및 비협약 2차사에 대한 금융(자금) 지원 실적도 인정한다. 단, 실제 이루어진 지원의 50%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실적 산정 기준

No.	협력차수	협약여부	실적 산정
①	1차	○	지원액 × 100%
②	1차	×	지원액 × 50%
③	2차	×	지원액 × 50%

예 1) 금융(자금)실적이 100만 원인 경우,

- ① 평가대상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1차 협약사 → 100만 원
- ② 평가대상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1차 협력사 → 100만 원 × 50% = 50만 원
- ③ 평가대상 기업의 2차 협력사 → 100만 원 × 50% = 50만 원

예 2) 특별/혼합지원에서 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

평가대상 기업이 직접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2차사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준 경우

→ (2차사 실대출액) 100만 원

→ (2차사 대출액 보정금액) 50만 원 * 2차사 50% 반영률 적용

→ (2차사 특별/혼합지원 인정실적) 100만 원 * 2차사 대출액 2배 인정 기준 적용

※ 금융지원 총괄표(양식)의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자동으로 계산하므로 “실대출액”을 기재할 것

※ 금융지원 실적 작성 시, 협약 이행포털에 공지된 양식 참고

평가항목 세부 구성 및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식품업	중견기업	일반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7.7	4(가점)	8.5
② 간접지원 도입 여부	0.3	-	0.5

1.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평가개요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은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사에 금융지원한 실적이 전년도 매출액 (또는 조정매출액)의 0.4 ~ 0.8%(중견기업 기준은 별도) 이상인 경우 만점으로 산정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만점(전년도 매출액의 0.4 ~ 0.8%)을 기준으로 달성 정도에 비례하여 부분 점수를 부여한다.

여기서 ‘금융지원’은 직접지원, 혼합지원, 특별지원으로 구성되며, 이를 산정·평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산정 기준

$$\left[\frac{\text{금융지원 실적}}{\text{전년 매출액(또는 조정 매출액)} \times 0.008^*} \right] \times (\text{만점})$$

- 일반: 0.8% 이상 달성 시 만점
- 광고업·인터넷플랫폼업: 0.4% 이상 달성 시 만점
- 중견기업: (5천억 미만) 0.2% 이상, (5천억 이상 1조원 미만) 0.4% 이상,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0.6% 이상 달성 시 만점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 × 2) + (특별지원액 × 2) + 혼합지원액

※ 전년매출액: 2024년 협약평가 신청 시 2023년 실적자료를 제출한다면 2022년 매출액이 ‘전년매출액’에 해당함

※ 조정매출액: 영업이익 적자 기업 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한 기업의 경우, ‘전년매출액’ 대신 ‘조정매출액’을 사용할 수 있음

산출 기준	①	기준	전년 영업이익 적자 기업
		산식	전년매출액 × 0.5
②	기준	전년 영업이익이 흑자이나, 전전년 영업이익에 비해 전년 영업이익이 10% 이상 하락한 기업	
	산식	전년매출액 × (1 - 영업이익하락비율 × 0.5)	

1-1. 직접지원

평가개요

‘직접지원’은 평가대상 기업이 자기 자금을 직접 협력사에게 무상제공(지급)하는 ‘무상지원’ 또는 자기 자금을 협력사에게 대여(유이자·무이자)하는 ‘유상지원’으로 구분되며, 이를 산정·평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산정 기준
직접지원액 = 유상지원액 + 2×(무상지원액)
※ (유의사항) 무이자 대여·대출은 무상지원이 아닌 유상지원임 → 유이자, 무이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환이 전제되느냐가 유·무상지원의 구별점임

📄 주요 직접지원 사례

1. 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부담/대여 : 인정 가능

- 유형 : ‘부담’의 경우 무상지원, ‘대여’의 경우 유상지원
- 인정금액 : 운영비, 연구개발비 지원금액 전액

* 특히 공동연구개발비의 경우는 개발 완료된 기술의 지분관계를 따져 판단함

예) 공동연구개발시 대기업이 100만원, 협력사가 100만원을 부담

- 기술 소유권 지분이 5:5라면 자금지원 **불인정**
- 지분 전부 협력사 귀속시 대기업이 지원한 금액(100만원) 전부 무상지원 인정

2. 성과공유제 운영에 따른 보상금* 지급 : 불인정

*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 받는 보상금은 자신의 기여분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자금지원은 불인정

3. 성과공유제 운영 시 시제품* 자금 정산 : 인정 가능

- 유형 : 무상지원
- 인정금액 : 정산금액

* 공동연구개발 형태의 성과공유제가 운영되고 있고, 중소기업이 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만든 시제품을 대기업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 무상지원으로 인정가능

4. 전년도에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대출만기가 협약기간 중에 속한 경우 : 일부 인정 가능

예) 협약기간이 2020. 1. 1.~2020. 12. 31.인데, 대출계약은 2019. 6.1.~2020. 5. 31.인 경우, 협약기간 중에는 5개월간 지원된 것으로 보아 대출금액의 5/12를 인정

5. 대출을 해주었으나, 중간 상환을 하는 경우 : 일부 인정 가능(연평균 환산액)

예) 연초에 12억을 대출해주었으나, 매달 1억씩 상환하는 경우라면, 1년간 총 6.5억을 지원한 것과 동일

6. 현물(시설, 설비, 금형 등)의 무상대여* : 인정 가능

- 유형 : 유상지원
- 인정금액 : 해당 현물의 리스로 또는 렌트로 상당 금액
(기업측에서 입증, 입증불가능시 협약평가 대상기간 동안 감가상각 금액 간주)

※ 인정금액이 현물의 가액 전체가 아님에 주의

* 협력사에게 과업수행 완료에 필요한 장비, 설비, 시설 등을 대여해 주고, 그 가액을 사후적으로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불인정

7. 시설, 설비 등을 대신 건축해주거나 구입해준 경우* : 인정 가능

- 유형 : 무상지원
- 인정금액 : 해당 건축비, 매입금액
*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하도급대금 등에서 시설, 설비 등의 매입금액이 공제될 경우 불인정)

8. 금형비 지급의 경우* : 인정 가능

- 유형 : 무상지원
- 인정금액 : 금형비 지원금액 전액
* 부품납품계약 체결 후 협력사가 납품을 위해 최종 금형을 완성하기까지 소요된 비용을 "납품 전액" 지급한 금액을 무상지원으로 인정

※ 금형의 소유권이 협력사에게 완전히 이전되어야 하며, 대기업이 금형을 별도로 제조위탁한 경우에는 불인정

9. 채무지급보증의 경우 : 인정 가능

- 유형 : 무상지원
- 인정금액 : 지급보증수수료

10. 선금금의 경우* : 불인정

*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금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지원"이라 보기 어려움

* 다만, 선금금 지급 의무가 없음(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선금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 등(초기 자재 비용에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당초 약정된 지급기일보다 이른 시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수금, 중도금, 선금금, 선금 등 명목과 상관없이 직접지원 사례로 인정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직접지원 인정금액은 조기 지급한 해당 금원 '전액'이 아닌 조기 지급한 기간에 따른 '이자액' 상당으로 제한함에 유의.

11. 명절 등의 선결제의 경우 : 인정 가능

- 유형 : 무상지원
- 인정금액 : 조기 지급된 기간에 대한 선결제 금액의 이자 상당분
*연리 적용: 2023년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대출금리 평균치를 적용.

↳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2023년 평균 참고
(추후 공지 예정)

12. 기타

-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지원
- 보험료 지원
- 인증, 평가 비용 지원
- 경영자금 등의 기타 자금 지원(협력사의 운영과 관련한 지원인 경우에 한해 인정)

제출자료 안내

① 평가대상 기업의 직접지원 형태, 지원시기, 지원대상, 지원실적 등에 대한 직접 지원 실적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평가대상 기업의 직접지원 여부 및 지원하고 있는 직접지원 형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지원시기, 지원실적, 지원대상 등을 직접지원 형태별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 ‘무상지원’과 ‘유상지원’으로 각각 나누어 각 항목별 정리
 - 지원대상 협력사명 및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명 명기 자료 포함
 - 직접지원 현황 관련 내부 증빙서류(기안문, 품의서 등) 제출
 - 협력사의 직접지원 요청서, 자금지원계획서 결재서류, 입금증 등
 - ※ 지원대상의 **협약사 여부** 필수 기재

② 금융지원 총괄표(엑셀 파일) 1부

작성양식

- 해당 양식파일은 협약 포털사이트(<http://gowith.ftc.go.kr/>) 공지사항에 업로드 되어 있음
 - ※ 반드시 해당 양식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양식 작성방법

- 해당 양식파일 내 설명 참조

1-2. 특별지원

평가개요

‘특별지원’이란 평가대상 기업이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직접 보증기금을 출연하거나, 계열사가 출연한 보증기금을 이용하여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평가대상 기업 또는 계열사의 협력사에게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하거나,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출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정 기준	
$\text{특별지원액} = \text{자기출연금액} \times \left(\frac{\text{지원비율}(\%)}{30\%} \right)$	
$\text{※지원비율} = \left[\frac{\text{(1차 지원금액)} + \text{(2X2차 지원금액)}}{\text{총 조성금액}} \right] \times 100\%$	

주요 특별지원 사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개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동반성장 투자재원,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산업 혁신 운동,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등),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적	자기출연금액	협약평가 대상기간 지원가능 재원금액* * 협약평가 대상기간 직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잔여 출연금액 + 협약 평가 대상기간 출연금액
		총조성금액	자기출연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
창조경제 혁신센터	개요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업화 지원, 멘토링 등 전문 맞춤 지원	
	실적	자기출연금액	기업출연금액
		총조성금액	기업출연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

제출자료
안내

① 평가대상 기업의 특별지원 형태, 지원시기, 지원대상, 지원실적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평가대상 기업의 특별지원 여부 및 지원하고 있는 특별지원 형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지원시기, 지원실적, 지원대상 등을 특별지원 형태별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 특별지원 현황 관련 내부 증빙서류(기안문, 품의서 등) 제출
 - ※ 지원대상의 협약사 여부 필수 기재
- 특별지원 형태별로 아래 증빙서류가 매칭되어야 함
 - 평가대상 기업이 특별지원 관련 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 출연금/기부금 입금증 또는 기관의 출연확인서
 - 기관의 실적 확인서(지원시기, 금액, 지원 기업 리스트(협약사 여부 기재))
- (대·중소협력재단) '동반성장 투자재원' 공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 투자재원' 실적 제출 시, 아래 예시와 같이 협약평가 대상기간에 따른 공문 제출

'상생협력으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수신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기업 대표이사
(경유)
제목 2021년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및 지원금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도 귀 사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및 지원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동반성장 투자재원
나. 사업기간 : 2021.1.1. ~ 2021.12.31.
다. 출연 및 지원금액 : '붙임' 참조, 같.

붙임 2021년도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및 지원금 안내 1부. 끝.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 붙임 >

2021년도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및 지원금 안내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동반성장 투자재원 개요

○ 내국법인이 출연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사용 용도에 따라 중소기업을 수혜자로 하여 협력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활용 사업 >

동반성장 투자재원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산업혁신 운동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기업지원형 성과공유제	협력이익 공유제	협력사 CSR 평가지원
민간자율 추진사업	R&D지원	23차 협력사 컨설팅	스마트공장 구축	협력사 혁신활동 지원	해외 판로개척	장인배치 등 민간자율 추진사업	성과공유제 시행지원	협력이익 공유제 시행지원
민간100%	장부50% 민간50%	민간100%	민간70% 정부30%	민간70% 정부30%	민간30% 정부70%	민간100%	민간100%	민간100%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및 지원금액

○ 기업명 :
○ 사업기간 : '21.1.1 ~ '21.12.31
○ 출연금액 :
○ 지원금액 :

※ 출연금액은 '협약평가 대상기간 직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잔여 출연금액 + 협약평가 대상기간 출연 금액(협약기간 지원가능 재원금액)으로 협력재단에 확인하여 제출

-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계획)결과 보고서
 - 창조경제혁신센터 실적 제출 시, 사업(계획)결과 보고서 제출

제출자료 작성 유의사항

- 지원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30%로 계산
- 평가대상 기업과 직접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2차 협력사에 대한 특별지원 실적의 경우 지원액의 2배를 실적으로 인정. 이 때 인정 실적은 기준에 따라 “지원액 × 50% × 2배”로 계산

② 금융지원 총괄표(엑셀 파일) 1부

작성양식

- 해당 양식파일은 협약 포털사이트(<http://gowith.ftc.go.kr/>) 공지사항에 업로드 되어 있음
- ※ 반드시 해당 양식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양식 작성방법

- 해당 양식파일 내 설명 참조

1-3. 혼합지원

평가개요

‘혼합지원’이란 평가대상 기업이 직접 금융기관 등에 예금 또는 펀드를 조성하거나, 계열사의 예금 또는 펀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대기업 또는 계열 대기업의 협력사에게 기준금리보다 저리로 여신을 제공하도록 알선 또는 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하거나(상생협력펀드 조성, 펀드공동이용 등), 대기업이 지분투자펀드를 조성하여 1인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정 기준	
$\text{혼합지원액} = \text{자기출연액} \times [\text{지원(대출)비율}(\%) / 50(\%)]$	
$\text{※ 지원(대출)비율} = \{[1\text{차 지원액} + 2 \times (2\text{차 지원액})] / \text{총조성액}\} \times 100(\%)$	

☞ 주요 혼합지원 사례

계열사펀드 공동이용	개요	계열사의 예금 또는 펀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대기업 또는 계열 대기업의 협력사에게 기준금리보다 저리로 여신을 제공하도록 알선 또는 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상생협력펀드 조성, 펀드공동이용 등)	
	실적	자기출연액	전체 펀드 조성금액 중 평가대상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된 쿼터 금액
		총조성액	전체 펀드 조성금액 중 평가대상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된 쿼터 금액
		지원(대출)액	지원(대출)금액(연평균환산액)
예시	A기업이 은행에 100억을 출연하고(은행은 100억을 매칭하여 총 펀드액은 200억), 계열사 B가 조성한 펀드 3,000억 중 300억을 쿼터로 배정받았고, 지분투자펀드에 50억(펀드 총액은 150억)을 투자한 경우 - 자기출연액수 = 100억+300억+50억 = 450억 - 총 조성액 = 200억+300억+150억 = 650억		

제출자료 안내

① 혼합지원 실적에 대한 설명자료 및 금액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혼합지원 실적에 대한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 금융기관과의 펀드/대출 약정서
 -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증명서(협력사명, 대출일, 대출기간, 대출금액 명시)

제출자료 작성 유의사항

- 지원(대출)기간에 따라 “연평균 환산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인정
- 대출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50%로 계산
- 평가대상 기업과 직접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2차 협력사에 대한 혼합지원 실적의 경우 실 대출액의 2배를 실적으로 인정. 이 때 인정 실적은 기준에 따라 “실 대출액 × 50% × 2배”로 계산
- 지분투자펀드의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에게 투자되더라도 100% 유효실적으로 인정
- 지분투자펀드의 경우, 처음부터 주식매입을 통해 투자하는 펀드는 제외되며 벤처기업이나 신사업 추진 협력사를 대상으로 투자하여 향후 수익 발생 시 주식전환이나 또는 수익을 배분받는 펀드를 의미

② 금융지원 총괄표(엑셀 파일) 1부

작성양식

- 해당 양식파일은 협약 포털사이트(<http://gowith.ftc.go.kr/>) 공지사항에 업로드 되어 있음
 - ※ 반드시 해당 양식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양식 작성방법

- 해당 양식파일 내 설명 참조

2. 간접지원 도입여부

평가개요

'간접지원'이란 평가대상 기업이 자신의 금전적 부담 없이 금융기관에 협력사의 거래내역·보증·담보 등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협력사에게 기준금리보다 저리의 여신을 제공하도록 알선 또는 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ex. 네트워크론, 신용보증기금의 공동 프로젝트, 기술보증기금의 상생협약보증 등)을 의미하며, 해당 평가항목은 간접지원 도입여부로 판단한다.

제출자료 안내

① 간접지원 도입 실적에 대한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실적방식 또는 담보제공 등을 통해 협력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금융기관과의 약정서 사본 등

평가개요

‘기술(개발)지원’이라 함은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사에게 기술 이전, 특허권 제공, 공동연구개발, 신제품·국산화 개발지원, 협력사의 특허 또는 신기술을 채택하여 이와 관련된 신규 하도급계약 체결 등의 지원을 말하며, ‘기술보호’는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임치제 이용지원,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지원 등을 말한다.

기술지원 및 보호 평가는 ① 기술(개발, 이전, 공동연구개발 등)지원 금액, ② 기술지원 건수, ③ 기술보호(기술자료임치제,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특허출원지원, 공동특허출원 등) 건수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업별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영업이익이 적자 기업 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한 기업의 경우 조정매출액 대비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 구성 및
업종별
배점표

항목	배점					
	제조업	건설업	정보서비스업	통신업	식품업	중견기업(가점)
① 기술지원 금액	2	2	1	2	1	0.5
② 기술지원 건수	2	2	1	2	1	0.5
③ 기술보호 건수	1	-	1	2	-	1

1. 기술지원 금액

제조업 2 / 건설업 2 / 정보서비스업 1 / 통신업 2 / 식품업 1 / 중견기업 0.5(가점) / 광고업 X / 인터넷플랫폼업 X

평가개요

‘기술지원 금액’이란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사에게 기술개발,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이를 산정·평가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평가기준									
산식	$(\text{점수}) = \left\{ \frac{\text{기술지원액}}{(\text{조정매출액} \times \alpha)} \right\} \times (\text{만점})$								
	※ 조정매출액: 영업이익의 적자 기업 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한 기업의 경우, ‘전년매출액’ 대신 ‘조정매출액’을 사용								
	산출 기준	①	기준	전년 영업이익 적자 기업					
			산식	전년매출액 × 0.5					
산출 기준	②	기준	전년 영업이익이 흑자이나, 전전년 영업이익에 비해 전년 영업이익이 10% 이상 하락한 기업						
		산식	전년매출액 × (1 - 영업이익하락비율×0.5)						
산정기준	협약사		100%		비협약사		50%		
업종별 a 값	기계·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화학·비금속·금속	건설	정보서비스	통신	식품	
	0.3%	0.18%	0.08%	0.08%	0.01%	0.07%	0.4%	0.2%	

☞ 주요 인정·불인정 사례 모음

인정사례

- 협력사가 국가가 부여하는 기술인증(예 : 식품업종의 경우 HACCP인증)을 취득하도록 대기업이 지원해 주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가능
- 협력사의 특허 또는 신기술을 채택하여 해당 기술과 관련된 신규 발주를 하는 경우 기술지원 ‘건수’로 인정 가능(기술지원 ‘금액’으로는 불인정)
-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사에 특허권을 제공하는 경우 기술지원 ‘건수’에는 포함되나, 이와 별도로 기술지원 ‘금액’ 실적으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권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지에 대해 평가대상 기업이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 평가대상 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소요비용을 분담한 경우, 개발된 기술에 대한 각각의 지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 금액의 실적 반영 여부를 평가

예) 협력사와 5:5로 소요비용을 분담하고 기술에 대한 권리도 5:5로 보유하기로 한 경우 실적 불인정

불인정사례

- 기술지원 항목은 기술개발 및 이전·공동연구개발 등 객관적·정량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실적에 한해 인정되므로, 단순히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사를 방문하여 현장지도 활동을 한 것 등 만으로는 실적 불인정
- 성과공유제의 경우 시제품 정산을 통한 지원은 '금액' 실적으로 인정하되, 연구개발 완료 후 현금 보상은 실적으로 불인정

제출자료 안내

① 기술지원 실적에 대한 설명자료 및 금액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협약기간 중 신규·유지(종료 포함)된 기술지원에 대한 부담금액으로, 증빙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기재할 것

2. 기술지원 건수

제조업 2 / 건설업 2 / 정보서비스업 1 / 통신업 2 / 식품업 1 / 중견기업 0.5(가점) / 광고업 X / 인터넷플랫폼업 X

평가개요

‘기술지원 건수’란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사에게 기술개발,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을 지원한 건수를 말한다. 이를 산정·평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평가기준								
산식	$(\text{점수}) = \left\{ \frac{\text{기술지원건수} / b}{(\text{조정매출액} / 1\text{조원})} \right\} \times (\text{만점})$							
	※ 조정매출액: 영업이익 적자 기업 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한 기업의 경우, ‘전년매출액’ 대신 ‘조정매출액’을 사용							
산정기준	협약사		100%		비협약사		50%	
업종별 b 값	기계·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화학·비금속 ·금속	건설	정보서비스	통신	식품
	85건	45건	35건	50건	8건	40건	70건	50건

☞ 주요 인정·불인정 사례 모음

- ‘기술지원 금액’ 사례 참고

제출자료 안내

① 기술지원 실적에 대한 설명자료 및 건수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협약기간 중 신규·유지(종료 포함)된 기술지원에 대한 부담금액(건수)으로, 증빙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건수)만 기재할 것

3. 기술보호 건수

제조업 1 / 건설업 - / 정보서비스업 1 / 통신업 2 / 식품업 - / 중견기업 1(가점) / 광고업 X / 인터넷플랫폼업 X

평가개요

'기술보호 건수'란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사와 공동특허출원, 협력사의 특허출원지원 등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한 건수를 의미한다. 이를 산정·평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평가기준								
산식	$(\text{점수}) = \left\{ \frac{(\text{기술보호건수} / c)}{(\text{조정매출액} / 1\text{조원})} \right\} \times (\text{만점})$ <p>※ 조정매출액: 영업이익 적자 기업 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한 기업의 경우, '전년매출액' 대신 '조정매출액'을 사용</p>							
산정기준	협약사		100%		비협약사		불인정	
업종별 c값	기계·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화학·비금속 금속	건설	정보서비스	통신	식품
	5건	5건	5건	3건	-	20건	20건	-

불인정 사례 모음

-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기술이전 상담, 직무발명 상담 등의 경우 인정불가

제출자료 안내

① 기술보호 실적에 대한 설명자료 및 건수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기술자료임치증, 공동특허출원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실적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3

인력·채용 지원

제조업·건설업·정보서비스업·통신업·식품업 1 / 중견기업 1(가점) / 광고업 X / 인터넷플랫폼업 X

평가개요

‘인력·채용 지원’이란 평가대상 기업이 일정기간(누적 기준으로 5근무일 이상) 자기의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여 중견 관리자, 전문엔지니어 등의 인력을 협력사에 파견(파견결과보고서가 있어야 함)하거나 협력사가 이들을 채용하는 것,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사의 인력채용 지원을 위해 직무 훈련시킨 인력을 협력사가 채용하는 것, 평가대상 기업이 개최한 협력사 인력 채용박람회를 통해 협력사가 인력을 채용하는 것 또는 협력사가 이미 고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 지원하는 것(협력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 협력사 전문 인력에 대한 직무훈련 실시 등) 등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한다.

평가기준		
인력·채용 지원 협력사 비율 (총 협력사 수 대비 인력 및 채용 지원을 한 협력사 수)	인력 지원 및 채용한 인력 수	배점
20% 이상	100인 이상	1점
15% 이상 ~ 20% 미만	75인 이상 ~ 100인 미만	0.75점
10% 이상 ~ 15% 미만	50인 이상 ~ 75인 미만	0.5점
5% 이상 ~ 10% 미만	25인 이상 ~ 50인 미만	0.25점
0% 초과 ~ 5% 미만	1인 이상 ~ 25인 미만	0.1점
실적 없음	실적 없음	0점

* 2개 기준 중 배점이 높은 쪽을 선택 적용

** 중견기업은 업종별 만점기준에 비해 1/2씩 감경한 기준 적용

산정기준	협약사	100%	비협약사	불인정
------	-----	------	------	-----

☞ 주요 인정·불인정 사례 모음

인정사례

- 인력·채용지원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인정
- 온라인 인력·채용지원 실적 인정
 - ※ 최근 채용이 온라인을 통한 수시 채용 등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을 통한 채용 지원 역시 실적으로 인정. 다만, 단순히 온라인 상으로 채용공고문을 게시하는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평가대상 기업의 노력이 매우 적은 경우 등은 실적 인정이 어려우므로, 온라인 채용 지원 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대상 기업의 지원내용을 발생한 비용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소명

업종별 배점표

불인정사례

- 비협약사 실적 불인정
- 단순 업무 미팅, 협의를 위한 출장 실적 불인정

항 목	배점	
	제조업·건설업·정보서비스업 ·통신업·식품업	중견기업
인력·채용 지원	1	1(가점)

제출자료 안내

- ① 인력·채용지원 협력사 비율(총 협력사 수 대비 인력·채용 지원을 한 협력사 수)에 대한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파견결과보고서 등)
- ② 인력지원 및 채용인원 수에 대한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인력지원

- 인력지원 수 산정 시 동일한 인원 × (업무일 기준) 5일 지원 = 1인 실적으로 인정

※ 인력·채용 지원을 한 협력사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예) * 1명이 협약사 A, B, C, D, E에 각 1일씩 파견된 경우: 동일인이 총 5일 지원하였으므로 1인 실적으로 인정

* 1명이 협약사 A에 4일 파견, 협약사 B에 6일 파견된 경우: 동일인이 총 10일 지원하였으므로 2인 실적으로 인정

* 5명이 협약사 A, B, C, D, E에 각 1일씩 파견된 경우: 실적 미인정(동일한인원의 지원실적은 각 1일에 불과)

* 5명이 협약사 A, B, C, D, E에 각 5일씩 파견된 경우: 5인 실적으로 인정

채용지원

- 협력사 채용경로 및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제조업 10 / 건설업·정보서비스업·통신업 3 / 중견기업 3(가점)
 식품업 X / 광고업 X / 인터넷플랫폼업 X

평가개요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실적’은 ① 1-2차 협력사 및 2-3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 ② 1-2차 협력사 및 2-3차 협력사간 협약 평가신청 실적, ③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및 금융지원, 기술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 ④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지급조건(현금결제, 결제기일) 개선지원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 ⑤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정도, ⑥ 1-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중견기업은 위 항목 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1차 협력사)의 협력사(2차)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항목에 대해 ①, ③, ④의 경우 각 0.6점씩, ⑤의 경우 1.2점 가점을 부여한다.

평가항목
 세부 구성 및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제조업	건설업· 정보서비스업· 통신업	중견기업 (가점)
① 1-2차 협력사 및 2-3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	2	-	0.6
② 1-2차 협력사 및 2-3차 협력사간 협약 평가신청 실적	1	-	-
③ 1-2차 협력사간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유도한 실적	1	-	0.6
④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유도한 실적	2	3	0.6
⑤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정도	3	-	1.2
⑥ 1-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적	1	-	-

1. 1-2차 협력사 및 2-3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

제조업 2 / 건설업·정보서비스업·통신업 - / 중견기업 0.6(가점) / 식품업 X / 광고업 X / 인터넷플랫폼업 X

평가개요

'1-2차 협력사 및 2-3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은 ①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 ② 2-3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평가기준	
①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 [제조1점] [중견기업0.6점]	
평가개요	• 2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 수'와, 1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한 '2차 협력사 수'를 확인하여 평가
② 2-3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 [제조1점]	
평가개요	• 1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한 2차 협력사 중 '3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한 2차 협력사 수'를 확인하여 평가
산식	$\frac{\text{3차사와 협약을 체결한 '2차사' 수}}{\text{1차사와 협약을 체결한 '2차사' 수}} \div 0.3(\text{만점비율}) \times 1(\text{점수})$

제출자료 안내

①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1-2차 협력사간 체결한 협약서 사본
- 2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명단
- 1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한 '2차 협력사'명단

② 2-3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2-3차 협력사간 체결한 협약서 사본
- 1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한 '2차 협력사'명단
- 3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한 '2차 협력사'명단

2. 1-2차 협력사 및 2-3차 협력사간 협약 평가신청 실적

제조업 1 / 건설업·정보서비스업·통신업 - / 중견기업 - / 식품업 X / 광고업 X / 인터넷플랫폼업 X

평가개요

‘1-2차 협력사 및 2-3차 협력사간 협약 평가신청 실적’은 하위 협력사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신청 실적이 1건 이상이면 만점(1점)을 부여한다.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협력사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실적도 포함한다.

제출자료 안내

- ① 2023년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협력사 명단
- ②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협력사 명단

3. 1-2차 협력사간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유도한 실적

제조업 1 / 건설업·정보서비스업·통신업 - / 중견기업 0.6(가점) / 식품업 X / 광고업 X / 인터넷플랫폼업 X

평가개요

‘1-2차 협력사간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유도한 실적’은 평가대상 기업이 자신으로부터 납품 단가 인상, 금융·기술지원 등을 제공받은 1차 협력사로 하여금 2차 협력사에게 납품단가 인상, 금융·기술지원을 제공하도록 유도한 실적을 평가한다. 2차 이하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한다.

* 동반성장보험 대기업과 은행 간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의 대금 미지급에 대비하여 2차 협력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보험금 재원은 대기업이 출연하며, 2차 협력사의 대출금 상환의무는 1차 협력사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을 의미

제출자료 안내

- ① 평가대상 기업이 1차 협력사로 하여금 2차 협력사에게 납품단가 인상, 금융·기술지원을 제공하도록 유도한 실적(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지원방안 등)에 대한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품의서 및 결과보고 등)
- ② 2차 이하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증빙자료

4.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유도한 실적

제조업 2 / 건설업·정보서비스업·통신업 3 / 중견기업 0.6(가점) / 식품업 X / 광고업 X / 인터넷플랫폼업 X

평가개요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유도한 실적’은 ①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도입여부, ②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활용 실적, ③ 2차 이하 거래단계에서의 시스템 활용 실적을 평가한다(2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를 포함한다).

주요 질의 사례 모음

Q1. 당사의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 구조는 현금지급으로 정착된 상황인데, 추가적인 대금지급 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용은 1, 2차 협력사 모두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당사는 직접 거래 관계가 없는 2차 협력사에 대해 대금지급 관리시스템 또는 나이스윙크 등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을 유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경우 1-2차 간 자체 ERP 전산시스템을 통한 현금지급 실적도 위 항목의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1. 위 평가항목의 취지는 대기업이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즉, 대기업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하위 거래단계에서의 대금지급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적정한 대금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한 실적에 대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부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대기업 및 1-2차 협력사간에 대금지급 관리시스템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현금 지급 기업이 오히려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나이스윙크 등 대기업이 하위 거래단계의 대금지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활용 실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이스윙크 등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1차 협력사만 시스템 활용에 동의할 경우 전자적으로 1-2차 협력사간 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내역 자료가 수집되어 대기업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별도로 2차 협력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1·2차 협력사에 비용부담을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수기로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대기업에 제공토록 하는 것이 하위 협력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상생결제 시스템 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Q2. 건설업의 경우 관련 법령상 재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2차 이하 거래단계에서의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건설업의 경우 공공발주 건설분야에서는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 지급 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 바(19.6월 개정 건산법 시행), 협약평가지 실적 인정범위는 민간발주 건설분야에서의 시스템 사용 실적으로 한정하며, 건산법 등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게 재하도급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4-1.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여부

평가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 기업이 상생결제상품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2차 이하 협력사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0.5점, 건설·정보서비스·통신업 0.75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생결제시스템 외 나이스링크 등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인정 ※ 단, 모든 1차 협력사에 대해 그 이하 2차 협력사와의 대금지급조건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실적 인정 건설업의 경우 공공발주 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지킴이 등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 바 (19. 6월 개정 건산법 시행) 평가 시 실적 인정 범위를 민간발주 건설 분야에서의 시스템 사용 실적으로 한정하며, 건산법 등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게 재하도급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 인정

4-2.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활용 실적

평가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 기업이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총 금액으로, 대기업의 협력사 대상 총 매입액 대비 시스템 활용 실적
산식	$\left[\frac{\text{시스템을 통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총 금액}}{\text{대기업의 협력사 대상 총 매입액} \times 0.4} \right] \times (\text{배점})$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0.5점, 건설·정보서비스·통신업 0.75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 기업의 시스템 활용 실적이 평가대상 기업의 협력사 대상 총 매입액의 40% 이상인 경우 만점 현금지급 실적을 제출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와 동일하게 실적 인정

4-3. 2차 이하 거래단계에서의 시스템 활용 실적

평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을 통해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총 금액을 의미하며, 시스템을 통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총 금액 대비 활용실적
산식	$\left[\frac{\text{시스템을 통해 1차 협력사가 지급한 총 금액}}{\text{시스템을 통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총 금액} \times \text{만점기준}(A)} \right] \times \text{배점}$ <p>* 만점기준(A) : 10%</p>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1점, 건설·정보서비스·통신업 1.5점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지급실적을 제출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와 동일하게 실적 인정 ※ 단, 모든 1차 협력사에 대해 그 이하 2차 협력사와의 대금지급조건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일부라도 대금지급조건을 모니터링할 수 없는 시스템은 실적 불인정

제출자료 안내

①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여부 관련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상생결제상품 등) 도입여부 및 2차 이하 협력사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② 시스템 활용 실적 관련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평가대상 기업이 시스템을 통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총 금액
- 평가대상 기업의 협력사 대상 총 매입액

③ 2차 이하 거래단계에서의 시스템 활용 실적 관련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평가대상 기업이 시스템을 통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총 금액
- 1차 협력사가 시스템을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총 금액

5.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정도

제조업 3 / 건설업·정보서비스업·통신업 - / 중견기업 1.2(가점) / 식품업 X / 광고업 X / 인터넷플랫폼업 X

평가개요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정도'는 ①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일수, ② 현금 및 상생 결제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모든 협력사의 대금지급 상황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어야 하며, 일부 협력사의 자료가 누락된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점수가 차감된다. 또한 대금지급 조건 개선 정도는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중 해당 협력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5-1.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일수

평가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 기업의 1차 협력사가 대금지급절차 마감일로부터 2차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날(대금지급기일)까지의 경과일수 	
배점표	평균 대금지급일수	점수
	30일 이하	1.5
	30일 초과~40일 이하	1.2
	40일 초과~50일 이하	0.9
	50일 초과~60일 이하	0.6
	60일 초과	0
산식	<p>평균대금지급일수 =</p> $\sum \frac{\text{1차 협력사 a에 지급한 대금}}{\text{대기업의 전체 하도급대금}} \times \text{1차 협력사 a의 대금지급일수}$ <p>* 1차 협력사 중 해당 대기업과의 거래비중이 낮은 협력사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대금지급 개선을 유도해내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 대기업의 전체 하도급대금 대비 해당 협력사에 지급한 대금으로 가중 평균한 값으로 점수 부여</p>	

5-2.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평가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 기업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 및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
산식	$\frac{\text{평균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40(\%)} \times (\text{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sum \frac{\text{1차 협력사 a에게 지급한 대금}}{\text{대기업의 전체 하도급 대금}} \times \text{1차 협력사 a의 현금·상생결제비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만점 * 현금: 현금, 수표, 만기1일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 ·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담보대출·구매론·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 상생결제: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것만 실적으로 인정

제출자료 안내

①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일수 관련 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대금지급 실적을 제출한 1차 협력사의 비율
- 평균대금지급일수(*㉔×㉕)의 가중평균값)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㉔ 1차 협력사의 대금지급일수(대금지급절차 마감일로부터 2차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경과일수)
 - ㉕ 평가대상 기업의 전체 하도급 대금 중 해당 1차 협력사에 지급한 하도급 대금의 비율

②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관련 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평균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㉔×㉕)의 가중평균값)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㉔ 1차 협력사의 현금·상생결제비율
 - ㉕ 평가대상 기업의 전체 하도급 대금 중 해당 1차 협력사에 지급한 하도급 대금의 비율

6. 1-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적

제조업 1 / 건설업·정보서비스업·통신업 - / 중견기업 - / 식품업 X / 광고업 X / 인터넷플랫폼업 X

평가개요

'1-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적'은 '전체 1차 협력사' 중 '2차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1차 협력사'의 비율을 평가한다.

주요 질의 사례 모음

Q1. 중소기업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한 편인데, 1-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외에 기타 양식을 활용할 경우 해당 항목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A1.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래조건이 공정하게 설정된 계약서로서, 20년 11월 기준 총 46개 업종을 대상으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외의 양식을 활용할 경우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이 빠짐없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적에 대해서만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1-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지?

A2. ① 하도급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동법 제18조에 규정된 '경영간섭행위'의 부당성은,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간섭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로서 그 행위가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경제 발전 도모'라는 공익을 위한 것인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비용 절감·품질 향상 등 효율성 증진 효과 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여건이나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의 관계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권유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I. 17.)

제출자료 안내

① 1-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요약표 1부 및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평가대상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협력사 평가 시 '1-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를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
- 평가대상 기업의 협력사 평가제도가 없거나 평가제도가 존재하더라도 평가 요소 중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항목이 없을 경우, 협약이행평가 현장 확인 시 평가담당자가 전체 1차 협력사 중 임의의 기업을 추출하여 1-2차 협력사간 계약서 내용 확인

5

효율성 증대 정도

제조업 6 / 건설업 8 / 정보서비스업·통신업 9 / 식품업·광고업·인터넷플랫폼업 8 / 중견기업 3(가점)

평가개요

‘효율성 증대 정도’는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협력사와 함께 수입대체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말한다.

업종별 상대평가를 통해 A~D의 네 개 등급 부여하되, 업종별 평가대상 기업이 5개 이하인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협약평가위원회를 거쳐 점수를 보정할 수 있다.

효율성 증대 정도 실적 구분	
(1)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5) 일자리 창출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	(6) 일감 개방 - 계열사 거래 물량을 비계열 중소기업 협력사에 개방한 실적
(3) 비용절감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7) 협력사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확대 유도
(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 생산성 향상, 장비 가동률 제고 - 불량률 감소, 판매수량 대비 반품수량 비율 감소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예) 싱글PPM 인증제도(중기부),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8)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9)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여 실적
	(10)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주요 인정·불인정 사례 모음

인정사례

- 평가대상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협약사에 대한 지원실적도 인정

불인정 사례

- 효율성증대항목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대금지급조건 개선’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단순히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 또는 대금지급 일수를 개선한 실적의 경우 불인정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제조업	건설업	정보서비스업· 통신업	식품업·광고업· 인터넷플랫폼업	중견기업
효율성 증대 정도	6	8	9	8	3(가점)

제출자료 안내

① 효율성 증대 실적에 대한 설명자료 및 산출근거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양식파일은 협약 포털사이트(gowith.ftc.go.kr)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음
- ※ 반드시 해당 양식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참고자료

인정 사례

- | | |
|---|--|
| <p>(1)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 국산화 지원 및 부품 발주를 통한 수입 대체 실적 -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협약사 국산화 개발 투자금 지원 <p>(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협력사 대상 해외 프로젝트 품목 발주를 통한 협력사 해외매출 실적 지원 - 해외 프로젝트 동반 진출을 통한 신규 매출 발생 실적 - 해외동반진출을 위한 글로벌인증 획득 지원 실적 - 협력사 대상 특허 기술 이전을 통한 매출 확대 실적 <p>(3) 비용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 대상 부품 시험/분석 비용 지원 - 협력사 대상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등 설비 지원을 통한 에너지 절감액 실적 - 협력사 대상 기술지도를 통한 공정불량 개선 실적 <p>(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 체질 개선 컨설팅 지원을 통한 노후장비 개선, 작업 방식/환경 개선, 자동화 설비 도입 지원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불량률 감소 실적 - 품질 경영 시스템 갱신심사 지원 등을 통한 협력사 품질 개선 실적 - 품질인증 획득 실적 - 협력사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 <p>(5) 일자리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협력사 인력 채용 지원 실적 - 일자리 박람회 지원을 통한 협력사 인력 채용 지원 실적 <p>(6) 일감 개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감개방 실적 <p>(7)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진출 협력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원 <p>(8)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여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포장재 사용 및 탄소배출권 확보 실적 - 협력사 대상 ESG 컨설팅 비용 지원 -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장치 지원 실적 <p>(9)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 대상 질병 관련 백신접종 알람시스템 지원 (식품업) - 기타 협력사 대상 지원 실적 |
|---|--|

6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

제조업·건설업·식품업 4 / 정보서비스업·통신업 2
중견기업 3(가점) / 광고업·인터넷플랫폼업 X

평가개요

‘협력사 대상 매입액 조정실적’은 ① ‘협력사의 인상요청 금액’ 대비 ‘실제 평가대상 기업이 인상해준 금액’의 비율 ② 평가대상 기업의 ‘협력사 대상 총 매입액’ 중 ‘실제 평가대상 기업이 인상해준 금액’의 비율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비협약사) 및 비협약 2차사에 대한 매입액 조정 실적도 인정한다(단, 실제 이루어진 지원의 50%만 실적으로 인정).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통해 증액된 하도급대금 지급 실적도 매입액 조정 실적으로 인정하며 주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하도급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져야 하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않은 경우 역시 인정한다.

‘협력사 대상 매입액 인상비율’이란, 협력사가 평가대상 기업에게 인상을 요청한 금액 중 실제 평가대상 기업이 인상해 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 때 협력사가 인상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기업이 선제적으로 원재료 가격, 최저임금 상승 등을 반영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연장·납품지연 등(원도급금액은 증액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매입액을 인상해 준 경우 협력사의 인상요청 금액을 100% 반영한 것으로 간주한다.

평가기준					
산식	$\frac{\text{실제 대기업이 인상해 준 금액}}{\text{협력사의 인상요청금액}} \times 100\%$				
산정기준	협약사	100%		비협약사	50%
배점	인상 비율	점수		인상 비율	점수
		제조업·건설업·식품업	정보서비스업·통신업		중견기업(가점)
	90%	1	0.5	50%	1.5
	85%	0.8	0.4	45%	1.2
	80%	0.6	0.3	40%	0.9
	75%	0.4	0.2	35%	0.6
	70%	0.2	0.1	30%	0.3
70% 미만	0	0	30% 미만	0	

* 협력사의 인상 요청 금액 = (협약사의 인상요청금액×100%) + (비협약사의 인상요청금액×100%)

* 실제 대기업이 인상해 준 금액 = (협약사 대상 인상 금액×100%) + (비협약사 대상 인상 금액×50%)

'협력사 대상 매입액 인상실적'이란, 평가대상 기업의 협력사 대상 총매입액 중 평가대상 기업이 총 인상해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평가기준				
산식	$\frac{A}{\text{만점기준}} \times (\text{만점})$			
	※ A = (대기업의 총 인상금액 / 대기업의 협력사 대상 총 매입액) × 100 ※ A값이 만점기준 이상인 경우 만점 부여 ※ 만점기준 - 제조·건설·식품·중견기업: 1% - 정보서비스·통신업: 0.3%			
산정기준	협약사	100%	비협약사	50%

평가항목 세부 구성 및 업종별 배점표

항목	배점		
	제조업·건설업·식품업	정보서비스업·통신업	중견기업
① 협력사 대상 매입액 인상 비율	1	0.5	1.5(가점)
② 협력사 대상 매입액 인상 실적	3	1.5	1.5(가점)

제출자료 안내

① 협력사의 매입액 인상 요청을 받아들여 매입액을 인상해준 실적에 대한 설명 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협력사의 매입액 인상 요청 공문, 매입액 조정 품의서 등 결재서류, 매입액 조정 전 후 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제출자료 작성 유의사항

- 협력사의 인상 요청은 문서(시스템)로 수령
- 실적을 위해 인상요청 금액을 위조하는 경우 50점 감점처리

- ②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경우,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입단가를 유지해 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매입액 인상분에 대한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원자재 가격 변동 자료, 매입액 동결에 관한 결재서류, 원자재 가격 변동 전후 매입액에 관한 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 ③ 협력사의 요청이 없었던 경우에도 매입액을 인상해주어 발생한 매입대금 증분에 대한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협력사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선제적으로 조정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매입액 조정 관련 품의서 등 결재서류, 매입액 조정 전후 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평가개요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이란 상용SW의 유지관리계약에서 SW개발자에게 직접 유지보수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기준

$$(\text{점수}) = \frac{\text{SW개발자와 직접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건수}}{\text{전체 유지보수 계약 건수}} \div 100\%(\text{만점비율}) \times 3(\text{점수})$$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정보서비스업· 인터넷플랫폼업
SW개발자의 유지보수 과업수행	3

제출자료
안내

- ① 상용SW 유지보수계약 전체 리스트
- ② SW개발자와 직접 체결한 유지보수계약 리스트

제출자료 작성방법

- 제출실적은 평가대상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협약사 기준으로 제출할 것

8

위생지원

식품업(한정) 5

평가개요

‘위생지원’이라 함은 식품대기업이 협력사의 제작환경의 청결도 개선을 위한 방서·방충 작업, 생산설비 청소 작업 등의 지원을 말한다.

위생지원은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협력사의 제작환경 청결도 개선을 위한 방서·방충 작업, 생산설비 청소 작업 등의 지원실적(건수)을 평가한다.

평가기준

$$\frac{\text{위생지원건수} \div 35\text{건}}{\text{조정매출액} \div 1\text{조원}} \times 5(\text{점수})$$

주요 인정·불인정 사례 모음

인정 사례

- 위생점검 후 사후관리가 진행된 경우

불인정 사례

- 단순히 위생점검만 실시하고 사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식품업
위생지원	5

제출자료
안내

① 위생지원 실적현황(건수) 및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제출실적은 평가대상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협약사 기준으로 제출할 것

평가개요

‘원물생산자(농·수산물 등 식품제품의 1차원료 생산자 및 1차원료 생산자의 협동조합 포함) 직접지원’ 실적은 ① 생산기술,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여부 및 MOU 내용의 충실도(2점), ② 원물생산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법인 및 재단설립 여부 및 계획(1점), ③ 원물생산자와의 사전계약 거래 확대 실적(1점)에 대해 정성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 구성 및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식품업
① 생산기술,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여부 및 MOU 내용의 충실도	2
② 원물생산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법인 및 재단설립 여부 및 계획	1
③ 원물생산자와의 사전계약 거래확대 실적	1

1. 생산기술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체결여부 및 MOU 내용의 충실도

식품업(한정) 2

평가개요

원물생산자와 생산기술지원(영농·양식기술 등), 공동연구개발(종자개발 등),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여부 및 MOU 내용의 충실도에 대하여 정성평가한다.

📄 주요 인정 사례 모음

- 협약기간 중 신규로 체결한 MOU 이외에, 협약기간 중 진행(유지)되고 있는 MOU 건에 대해서도 실적 인정 가능

제출자료 안내

- ① MOU 체결 여부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2. 원물생산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법인 및 재단설립 여부 및 계획

식품업(한정) 1

평가개요

원물생산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 또는 재단을 설립하였는지 여부 및 지원계획 등에 대하여 정성평가한다.

제출자료 안내

- ① 별도 법인·재단설립 여부, 운영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등

3. 원물생산자와의 사전계약 거래 확대 실적

식품업(한정) 1

평가개요

원물생산자와의 사전계약 거래 확대 실적이란 농산물 가격·물량 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물 생산자와 식품 대기업 간 사전계약을 활성화한 정도로서, 식품업종 대기업이 사전계약을 맺은 농가 수의 증가율을 평가한다.

평가기준

$$\frac{(\text{협약 기간 중 사전계약 농가 수}) - (\text{기존 사전계약 농가 수})}{\text{기존 사전계약 농가 수}} \times 100$$

* 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만점

** 기재출한 직전년도 실적은 수정불가

📄 주요 인정·불인정 사례 모음

인정 사례

- 원물 생산자의 협동조합과 사전계약할 경우 그 조합에 속하는 농가 수를 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음

불인정 사례

- 사전계약 실적으로 인정되는 '원물'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1항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조 제2항 제1호의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품'은 인정하지 않음

제출자료 안내

- ① 사전계약 거래 확대 실적 관련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계약서 등)

평가개요

교육지원이라 함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회계, 세법, 외국어 등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기준		
교육지원을 받은 협력사 비율 (총 협력사 수 대비 교육지원을 받은 협력사 수)	교육지원을 받은 인원 수	배점
80% 이상	400인 이상	2점
60% 이상 ~ 80% 미만	300인 이상 ~ 400인 미만	1.5점
40% 이상 ~ 60% 미만	200인 이상 ~ 300인 미만	1점
20% 이상 ~ 40% 미만	100인 이상 ~ 200인 미만	0.5점
0% 초과 ~ 20% 미만	1인 이상 ~ 100인 미만	0.25점
실적 없음	실적 없음	0점

※ 2개 기준 중 배점이 높은 쪽을 선택 적용
※ 온라인 지원 실적 인정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광고업·인터넷플랫폼업(한정)
교육지원	2

제출자료
안내

① 교육지원현황(협력사명, 건수, 일자, 교육인원 등) 및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제출실적은 평가대상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협약사 기준으로 제출할 것

11 재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불 광고업(한정) 3

평가개요 재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불은 제작업체(1차 협력사)가 편집업체 등 재하도급사에게 ATL(광고물 제작) 일부를 재하도급 시, 총 ATL 재하도급 건수 대비 광고대행사가 재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대행사 - 광고제작사(1차 협력사) - 편집업체(재하도급사) 3자간 서면으로 합의한 건수의 비율로 평가한다.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광고업
재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불	3

**제출자료
안내**

① 전체 ATL 재하도급건 및 직불합의를 한 재하도급건에 대한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ATL 재하도급계약 리스트, 직불합의서 등)

제출자료 작성방법

- 제출 실적은 평가대상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협약을 기준으로 제출할 것
- 재하도급사에 대해 100%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1. CCM 인증 취득

중견기업 1 / 일반 1

평가개요

공정위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득여부를 평가한다.

업종별 배점표

구분	등급	점수	
		중견기업	일반
CCM 인증을 취득한 경우	상	1	1
CCM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하	0	0

제출자료 안내

- ① 공정위에서 발급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2.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광고업·인터넷플랫폼업 2 / 중견기업 2 / 일반 1

평가개요

경영컨설팅, 사무자동화, 홍보기법 및 활동지원, 6시그마 컨설팅, 선급금의 지급, 생산성 향상 및 물류혁신 기법 전수, 에너지 절감, 친환경 제품 인증 및 협력사 제품 마케팅 지원, 협력사 요청에 의한 사급제도 운영, 교육훈련지원, 인력채용지원, 협력사의 CCM인증 취득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직장어린이집 공동 이용 등) 등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적 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요 불인정 사례 모음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를 늘리거나 지급일수를 단축시키는 것을 협력사의 경영과 관련된 지원 (예: 경영컨설팅, 사무자동화 지원 등)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력사의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실적으로 불인정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광고업·인터넷플랫폼업	중견기업(가점)	일반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지원	2	2	1

제출자료 안내

- ① 협력사의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에 대한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지원계획서, 지원 실적 결과보고서 등)

3.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일반 2 / 중견기업 X

평가개요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실적’이란, 평가대상 기업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협력사 채용과 연계해주거나, 협력사의 직원 채용을 위한 박람회 개최를 지원해주는 것 등을 평가한다.

평가기준		
(1) 협력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노력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등을 정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며,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를 의미 - 2차 이하 협력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도 실적으로 인정 		
(2)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실적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 기업의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을 통해 실제로 협력사의 청년 고용이 늘어난 실적을 정량 평가 		
협력사의 청년 채용 실적	청년 채용 지원을 한 협력사 비율 (총 협력사 수 대비 청년 채용 지원을 한 협력사 수)	배점
20인 이상	20% 이상	1
15인 이상 ~ 20인 미만	15% 이상 ~ 20% 미만	0.8
10인 이상 ~ 15인 미만	10% 이상 ~ 15% 미만	0.6
5인 이상 ~ 10인 미만	5% 이상 ~ 10% 미만	0.4
1인 이상 ~ 5인 미만	0% 초과 ~ 5% 미만	0.2
실적 없음	실적 없음	0
※ 위 두 기준 중 더 유리한 항목으로 평가함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일반	중견기업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2	x

제출자료 안내

① 협력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실제 창출실적 관련 증빙자료

4. 주요 분야 일감개방도

중견기업 5 / 일반 5

평가개요

주요 분야 일감 개방이라 함은 수직계열화 등 산업의 특성과 무관하게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가 빈번한 업종의 일감을 비계열 중소기업에게 개방한 정도로 사업시설관리, SI, 광고대행, 부동산관리, MRO 등 주요 업종에서의 평가대상 기업의 총 매입액 대비 비계열 중소기업 매입액의 비율을 말한다.

평가기준

$$\frac{\text{사업시설관리,물류,SI,광고,부동산관리,MRO분야비계열중소기업매입액}}{\text{사업시설관리,물류,SI,광고,부동산관리,MRO분야 총매입액}} \times 5$$

- 아래 6개 업종 분야를 영위하는 계열사가 있는 경우에만 일감개방 실적 인정
- 사업시설관리, SI, 광고대행, 부동산관리, 물류, MRO 등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시행 2017. 7. 1.)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적 제출하며, 아래 업종분류 실적으로 한정하여 제출

분야	업종
사업시설관리	N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물류	H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SI(시스템구축)	J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광고	M71(전문서비스업), M713(광고업)
부동산관리	L68(부동산업)
MRO(소모성자재)	G46(도매 및 상품중개업), G468(상품종합도매업)

- (광고업) '광고' 분야 매입액은 제외하되, '광고' 분야 중 M713(광고업) 실적만 제외
 ※ M71(전문서비스업) 실적 인정
- (정보서비스업) 'SI' 분야 매입액 제외
- 분야별 실적 중복인정 불가
 예) 비계열 중소기업이 사업시설관리, 부동산관리 분야를 동시에 영위할 경우 한 가지 분야의 실적으로만 인정
 ※ 인정 분야는 개별 매입 건에 대해 평가대상 기업이 소명
- 비계열 중소기업 매입액은 객관적으로 확인('중소기업확인서' 상 주 업종 등)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 비계열 중소기업 외에 비계열 중견기업, 대기업과의 거래실적은 불인정
- 협약평가기준 제18조에 따라 실적을 위해 총 매입액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평가점수에서 50점 감점 처리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중견기업	일반
주요 분야 일감개방도	5	5

제출자료 안내

- ① 6개 분야의 매입액 및 각 분야 비계열 중소기업 매입액 관련 외부기관(신용평가사 등)을 통한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각 분야별 비율의 합이 아닌 전 분야별 금액의 합계로 계산할 것

- ② 사업시설관리, 물류, SI, 광고, 부동산관리, MRO 분야에서 계열사 거래를 비계열 중소기업 거래로 '전환'한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방법

- 거래선 전환 관련 내부 결재문서, 해당 중소기업과 체결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 이미 100% 일감개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5.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중견기업 5 / 일반 5

평가개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서 공정위가 인정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와 관련한 협력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금융지원(대출금 상환 유예 포함)(2점), ② 대금지급조건 개선(대금 조기지급, 납품단가 인상 등)(1점), ③ 마스크 등 방역용품 제공(1점), ④ 구매물량 확대, 판로지원 등 기타지원(1점)으로 구분하며, 금융지원액이 조정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3.5점을 부여한다.

평가기준		
구분	세부내용	배점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자금지원(무상제공, 대여) • 동반성장펀드, 상생펀드 • 원자재 등 조달비용 실비 지원 	2
대금지급조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 결제수단을 현금으로 변경 • 납품단가 인상 	1
방역용품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제공 	1
기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로 지원 • 구매물량 확대 	1

- ‘금융지원’의 경우 전년 대비 협약기간에 영업이익이 적자이거나 큰 폭으로 하락한 기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조정 매출액’ 대비 지원 금액을 평가하고 있음
 예) 영업이익 적자 기업의 경우 조정 매출액은 전년 매출액의 1/2
- 금융지원액이 조정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3.5점 부여
 ※ (일반) 조정매출액의 0.08% 이상
 (중견) (1) 5천억 미만 0.02% 이상 (2) 5천억 이상 1조 미만 0.04% 이상 (3) 1조 이상 2조 미만 0.06% 이상인 경우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중견기업	일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5	5

제출자료 안내

① 지원실적 요약표 및 관련 증빙자료(공문, 품의서 등)

6. 금형 계약서 사용

제조업(한정) 1

평가개요

공정위가 보급한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을 준수하여 금형 거래계약서를 마련·사용하고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제조업
금형 계약서 사용	1

제출자료 안내

- 1 평가대상 기업이 협약평가 대상기간 동안 사용한 '금형거래계약서' 양식 1부
- 2 위 1 양식을 사용하여 실제 협력사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샘플 1부

📄 주요 인정 사례 모음

인정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금형제작업종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을 반영한 기업 자체 금형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7.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

중견기업 X / 일반 3

평가개요

안전관리시설 지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또는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인증·검사 소요 비용 지원 등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한 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상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한 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 협력사 근로자가 평가대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 비용은 평가대상 기업이 부담하고,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은 ① 안전관리시설 지원, ② 근로자안전보건교육비용 지원, ③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인증검사 소요비용 지원, ④ 기타지원 총 4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받은 협력사 업체 수, 지원받은 협력사 근로자 수 등을 바탕으로 각각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기준		
구분	세부내용	배점
지원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시설 지원 근로자안전보건교육비용 지원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안전인증검사 소요비용 지원 기타 지원 	1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시설 지원 근로자안전보건교육비용 지원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안전인증검사 소요비용 지원 기타 지원 	1
지원받은 협력사 업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시설 지원 근로자안전보건교육비용 지원 (지원받은 협력사 근로자 수 실적 포함)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안전인증검사 소요비용 지원 기타 지원 (지원받은 협력사 근로자 수 실적 포함) 	1

업종별 배점표

항목	배점
산업안전예방활동 지원	3

제출자료 안내

①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 총괄표(엑셀 파일) 1부

작성양식

- 해당 양식파일은 협약 포털사이트(<http://gowith.ftc.go.kr/>) 공지사항에 업로드 되어 있음
 - ※ 반드시 해당 양식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양식 작성방법

- ‘근로자안전보건교육비용 지원’ 및 ‘기타 지원’ 유형의 경우 지원받은 협력사 업체 수 뿐만 아니라 지원받은 협력사 근로자 수 실적도 함께 제출할 것

② 위 ① 총괄표에 기재된 지원 사업·실적에 대한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지원 계획·결과 품의서, 비용 지급 내역서 등)

제출자료 유의사항

- 실적자료 제출 시, 지원 목적/대상/비용 등 세부 내용이 명시된 내부 결재 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협력업체 수 및 근로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참석자 명부, 교육수료증 발급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고용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가점 인정

제출자료 작성방법

- 비용 및 금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비용 지급 내역, 물품 가격 명세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
- 비협약사에 대한 지원 실적도 제출이 가능하나, 실적자료 제출 시 협약사와 비협약사를 구분하여 제출
-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 또는 초과 지원 실적임을 명시하여 제출
- 원사업자의 사업장 내 지원 실적인 경우, 지원을 적용 받는 전체 근로자 중 협력사 근로자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참고자료

인정실적	
구분	세부내용
안전관리시설지원	• 협력사 안전을 위한 시설비용, 장비 지원(산소농도측정기, 안전 조끼 등)
근로자안전보건교육비용 지원	• 협력사 임직원 대상 안전 아카데미, 안전 관련 세미나 운영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인증 검사 소요비용 지원	• 안전인증검사 소요비용 지원
기타지원	• 안전보건 협력 프로그램 운영(위험성 평가 지원,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등) • 협력사 대상 안전 관련 포상금 지원

8.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이행 및 확산

일반 5 / 중견기업 5 / 광고업·인터넷플랫폼업 X

평가개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이행 및 확산'이라 함은 협력사와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였을 경우 조정된 하도급대금 실적을 평가한다. 나아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의 확산을 위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지원한 실적 역시 평가 대상이다.

'연동계약 체결 여부'란, 평가대상 기업이 협약평가 대상 기간 중 협력사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한 실적을 의미한다.

평가대상 기업이 협약평가 대상 기간 동안 협력사와 체결하여야 하는 총 연동계약 대상 건수 중 실제 협력사와 체결한 연동계약 체결 건수의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협력사와 합의하여 미연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연동계약 체결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연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동계약 체결 실적으로 인정한다.

평가기준				
산식	$\frac{\text{연동계약 체결 건수}}{\text{총 연동계약 대상 계약 건수}} \times 100\%$			
산정기준	협약사	인정	비협약사	인정
배점	비율		점수	
	0% 이상 10% 미만		0	
	10% 이상 50% 미만		0.5	
	50% 이상		1	
실적 산정 기간	협약평가 대상 기간(2023. 1. 1. ~ 2023. 12. 31.)			

'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이란, 평가대상 기업의 협력사와의 총 연동계약 대상 하도급대금 총액(연동계약 대상이나 미연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한다)에서 협력사와 체결한 연동계약을 통해 증액된 하도급대금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때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각각의 하도급대금 증액 또는 감액분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 산정 기간 동안의 총 변동액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하도급대금이 실제 증액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연동계약 체결 건 중 실적 산정 기간 동안 주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하도급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져야 하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은 하도급대금을 증액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평가기준				
산식	$\frac{\text{연동계약에 따라 증액된 하도급대금}}{\text{총 연동계약 대상 하도급대금}} \times 100\%$			
산정기준	협약사	인정	비협약사	인정
배점	비율		점수	
	하도급대금 증액비율이 1% 미만		0	
	하도급대금 증액비율이 1% 이상 5% 미만		1	
	하도급대금 증액비율이 5% 이상 10% 미만		2	
	하도급대금 증액비율이 10% 이상		3	
실적 산정 기간	협약평가 대상 기간(2023. 1. 1. ~ 2023. 12. 31.)			

‘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이란, 평가대상 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동제 확산을 위해 실시한 교육·홍보·지원 활동을 의미하며,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이때 단순히 홈페이지 상에 연동제 관련 사항을 공지하거나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하여 연동제 관련 정보 등을 전달하는데 그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① 연동 계약 체결 여부	1
② 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	3
③ 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1

제출자료 안내

- ① 평가대상 기업이 사용하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양식 및 실 체결본 샘플 1부
- ② 평가대상 기업이 협약평가 대상 기간 동안 체결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목록 1부

제출자료 작성방법

- 하도급대금 표준연동계약서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참고

제출자료 작성 유의사항

-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사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미연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적 불인정

- ③ 평가대상 기업이 협약평가 대상 기간 중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통해 증액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 ④ 평가대상 기업의 협력사 대상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지원 실적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자료 작성 유의사항

- 단순히 평가대상 기업 홈페이지 상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공지사항을 업로드하는 등의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실적 불인정
- 협력사 대상 하도급대금 연동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품의서 등 결재문서 제출
- 협력사 대상 하도급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포상, 연동제 설명회 및 컨설팅 실적 인정

9. 전체 협력사 대비 협약기간 중 거래관계가 종료된 협력사의 비율이 2% 미만

식품업(한정) 1

평가개요

전체 협력사 대비 협약기간 중 거래관계가 종료된 협력사의 비율이 2%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업종별 배점표

항목	배점
	식품업
전체 협력사 대비 협약기간 중 거래관계가 종료된 협력사 비율이 2% 미만	1

제출자료 안내

- ① 전체 협력사 대비 협약기간 중 거래관계가 종료된 협력사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0.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확대 실적

식품업(한정) 1

평가개요

국내 원물 생산자의 소득 증대 및 농업계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식품업종 평가대상 기업이 국산 농산물 등의 구매를 더욱 활성화한 정도로서, 평가대상 기업의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금액 증가율을 평가한다.

평가기준

$$\frac{(\text{협약기간 중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금액}) - (\text{기존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금액})}{\text{기존국산농·축·수산물구매금액} \times 0.05} \times 1$$

- 기 제출한 직전 년도 실적은 수정 불가
- 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만점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식품업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확대 실적	1

제출자료 안내

- ① 협약 기간 전·후의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금액 및 증빙자료
- ② 원산지 증명서 등 국산 농·축·수산물 증빙자료

11.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실적

중견기업(한정) 1

평가개요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실적은 납품물량 확대, 프로젝트 공동 수주·시행에 따른 매출액 증가, 공동 브랜드 마케팅, 공동전시관 운용, 전시회 공동참가 등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성평가'로 실시한다.

📄 주요 인정·불인정 사례 모음

인정 사례

- 국내외 세미나 개최, 해외연수 및 공모전, 전시회 참가지원 등 협력사 매출확대를 위해 노력한 경우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지원, 공동개선과제 실시 등 납품물량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경우
- 해외 현장에 협력사와 공동 진출한 경우 등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한 경우

불인정 사례

- 평가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
- 단순히 전년 대비 협력사 매입액 비교표만 제출하는 경우 등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중견기업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1

※ 2021. 8. 평가기준 개정에 따라 중견기업 외 업종은 '상생협력지원-효율성증대정도' 항목으로 통합됨

제출자료 안내

- ① 협력사의 매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12. 기간연장 및 1개월 이내 재협약 체결

중견기업(한정) 1

평가개요

협약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재협약 체결 또는 협약 기간을 연장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업종별 배점표

항 목	배점
	중견기업
기간연장 및 1개월 이내 재협약 체결	1

※ 2021. 8. 평가기준 개정에 따라 중견기업의 업종은 가점 항목에서 제외

제출자료 안내

- ① 재협약 사실 통보 공문
- ② 협약신청서
- ③ 협약서(안) 또는 실제 체결한 협약서

제출자료 작성방법

- 재협약 체결일은 2024. 1. 31. 이내여야 함

PART.2

협약이행평가 실적자료



0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0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 등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감점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부과	△20
고발	△25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감점

서면 미발급·미보존 행위(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 및 유용 행위(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행위	추가 감점
경고	△2
시정명령	△5
과징금 부과	
고발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③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감점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부과	△4
고발	△5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④ 위 ㉓ 이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 협약평가위원회가 감점하기로 의결한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한함	감점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부과	△4
고발	△5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①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거래 중인 협력사 뿐 아니라 협력사 선정 단계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까지 감점 대상에 포함

기준(※1심 선고 기준)	감점
벌금 이하	1건 당 △7
집행유예	1건 당 △10
금고·징역 이상	1건 당 △15

3. 하도급 벌점 누적 사업자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하도급 벌점 누적으로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청대상 또는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기업의 경우 요청일로부터 1년간 협약이행평가를 받을 수 없음

PART.3

업종별 평가점수 일람표



01

업종별 평가점수 일람표

업종	제조	건설	정보	통신	식품	광고	인터넷	중견
1. 계약의 공정성	46.5	54	51.5	51.5	49.5	59.5	59.5	81.5
①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4.5	7	4.5	4.5	4.5	4.5	4.5	6.5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사항	2.5	3	2.5	2.5	2.5	2.5	2.5	4.5
계약이전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2	4	2	2	2	2	2	2
②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15	19	20	20	18	28	28	2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5	7	6	6	6	6	6	8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 여부	6	8	8	8	8	8	8	8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 여부	2	2	2	2	2	2	2	2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 여부	2	2	2	2	2	2	2	2
비밀유지계약 체결	-	-	2	2	-	-	-	-
선수금 비율,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	-	-	-	-	-	10	10	-
③ 계약이행과정의 공정성	27	28	27	27	27	27	27	55
대금지급조건의 수급사업자 권익 증진여부	22	20	22	22	22	22	22	50
페널티 부과 의 형평성	1	3	1	1	1	1	1	1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2	3	2	2	2	2	2	2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2	2	2	2	2	2	2	2
2. 범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18.5	17	18.5	18.5	18.5	18.5	18.5	18.5
① 범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2.5	11	12.5	12.5	12.5	12.5	12.5	15.5
하도급 심의위원회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2.5	2	2.5	2.5	2.5	2.5	2.5	4.5
바람직한 서면발급,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2.5	2	2.5	2.5	2.5	3.5	2.5	4.5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2.5	2	2.5	2.5	2.5	2.5	2.5	4.5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3	3	3	3	3	2	3	-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	2	2	2	2	2	2	2

업종	제조	건설	정보	통신	식품	광고	인터넷	중견
㉔ 법위반 사후감시시스템 구축	6	6	6	6	6	6	6	3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4	4	4	4	4	4	4	1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	2	2	2	2	2	2	2
3. 상생협력 지원	35	29	30	30	32	22	22	+36
(1) 금융(자금)지원	9	9	9	9	8	9	9	
(2) 기술지원 및 보호실적	5	4	3	6	2	-	-	
(3) 인력채용 지원	1	1	1	1	1	-	-	
(4)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10	3	3	3	-	-	-	
(5) 효율성증대정도	6	8	9	9	8	8	8	
(6)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실적	4	4	2	2	4	-	-	
(7)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	-	3	-	-	-	3	
(8) 위생지원, 원물생산자 직접지원	-	-	-	-	9	-	-	
(9) 교육지원	-	-	-	-	-	2	2	
(10) 재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불	-	-	-	-	-	3	-	
(11) 기타 가점항목	+23	+22	+22	+22	+24	+18	+18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	△3(경고) ~ △25(고발)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2(경고) ~ △5(고발)							
상생협력에 반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행위로 조치	△1(경고) ~ △5(고발)							
협약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감점	△1(경고) ~ △5(고발)							
(2)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등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	[1건당] △7(벌금 이하) ~ △15(금고·징역 이상)							
(3) 협약평가결과 확정 보류	공정위 안건 상정 기업은 결과 확정 보류							
(4) 벌점 누적 사업자 평가대상 제외	공공입찰 참가제한 기업은 1년간 평가 제외							

PART.4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포털 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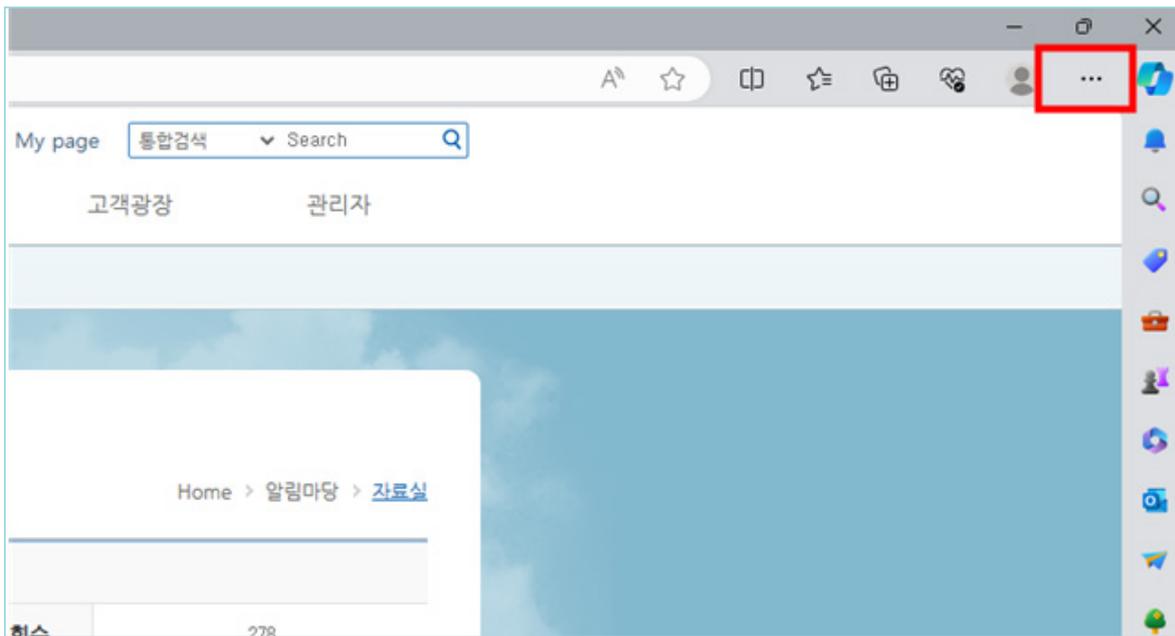
01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포털 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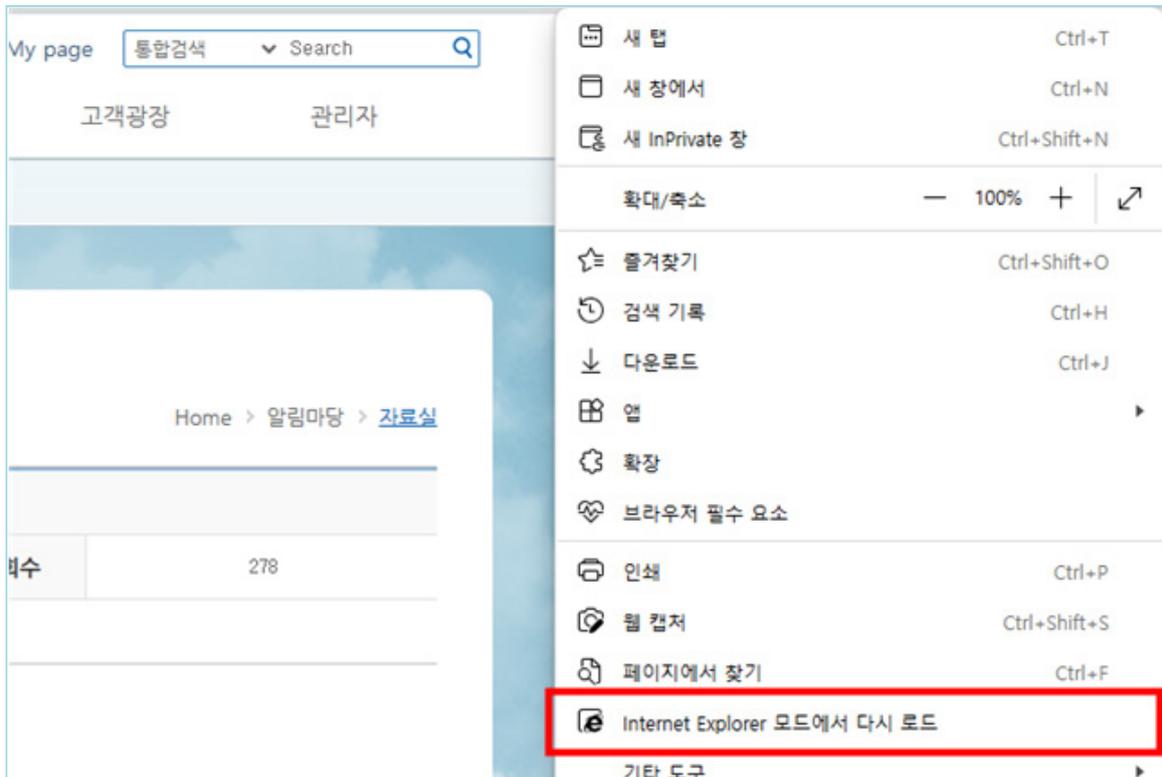
 Internet Explorer 지원 종료에 따른 협약평가포털 접속 안내

[방법 1] Edge 설정 이용

① Edge 실행 후 '설정'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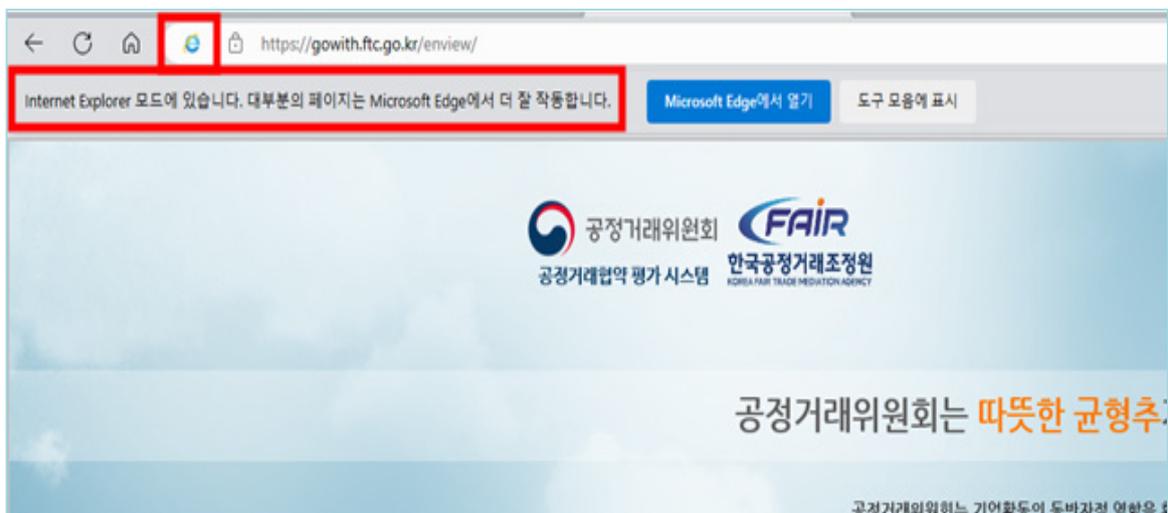


㉔ “Internet Explorer 모드에서 다시 로드”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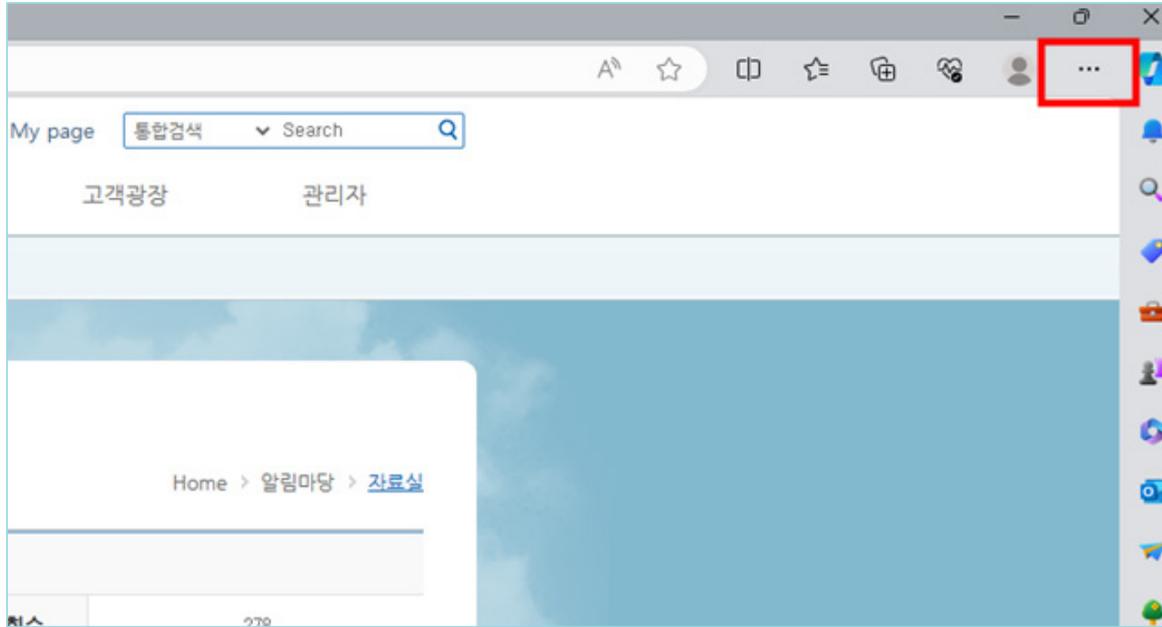
㉕ 모드 전환 확인 후, 계정 로그인 및 협약신청 진행

(주소표시줄 왼쪽에 익스플로러 아이콘 생성 및 안내 메시지 출력)



[방법 2] 'Internet Explorer모드에서 다시 로드'가 없는 경우

① Edge 실행 후 '설정'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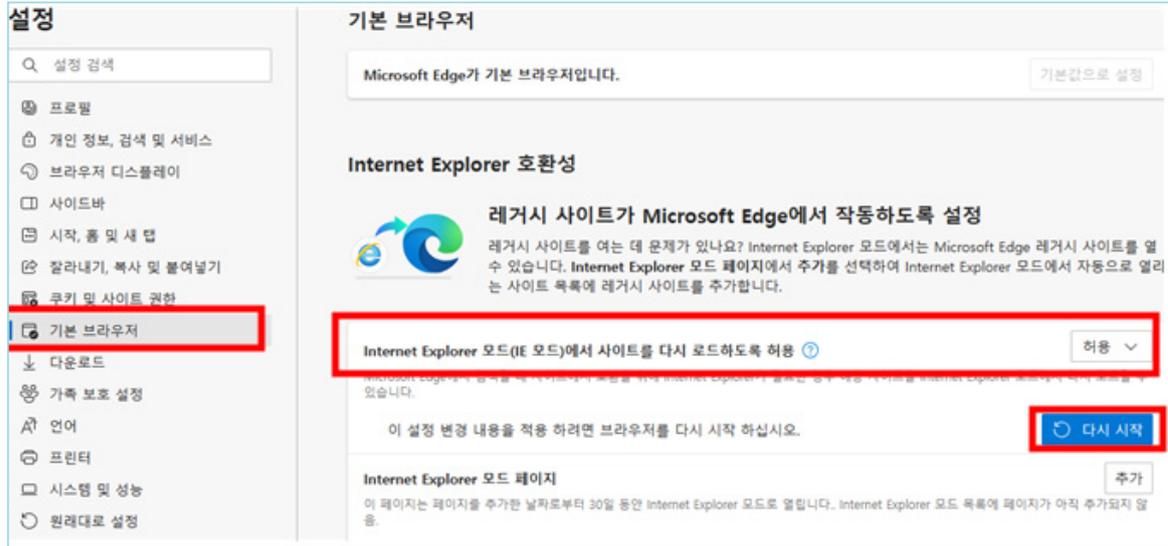


② '설정'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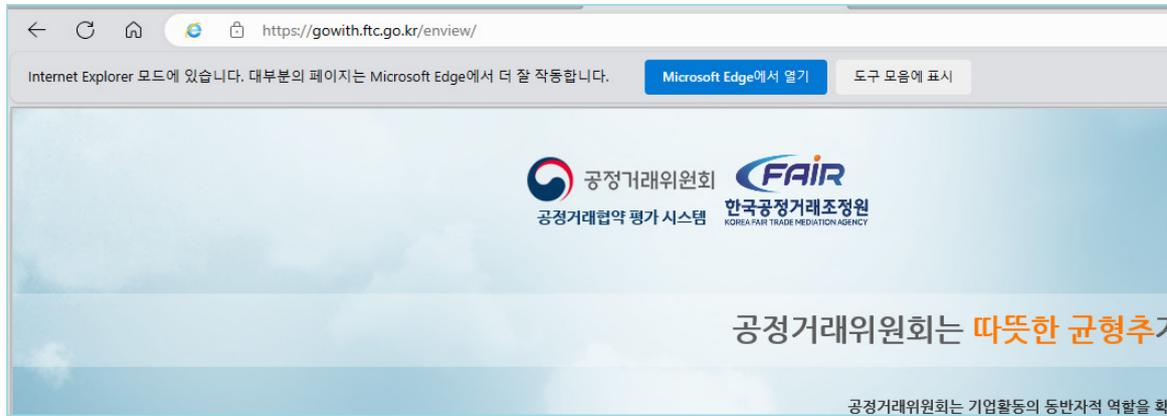
③ 왼쪽의 기본 브라우저 선택

- 오른쪽 'Internet Explorer모드에서 사이트를 다시 로드하도록 허용'에서 '허용' 선택
- 하단에 생성된 '다시 시작' 클릭



④ 새로 열린 창에서 전환모드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 후, 계정 로그인 및 협약신청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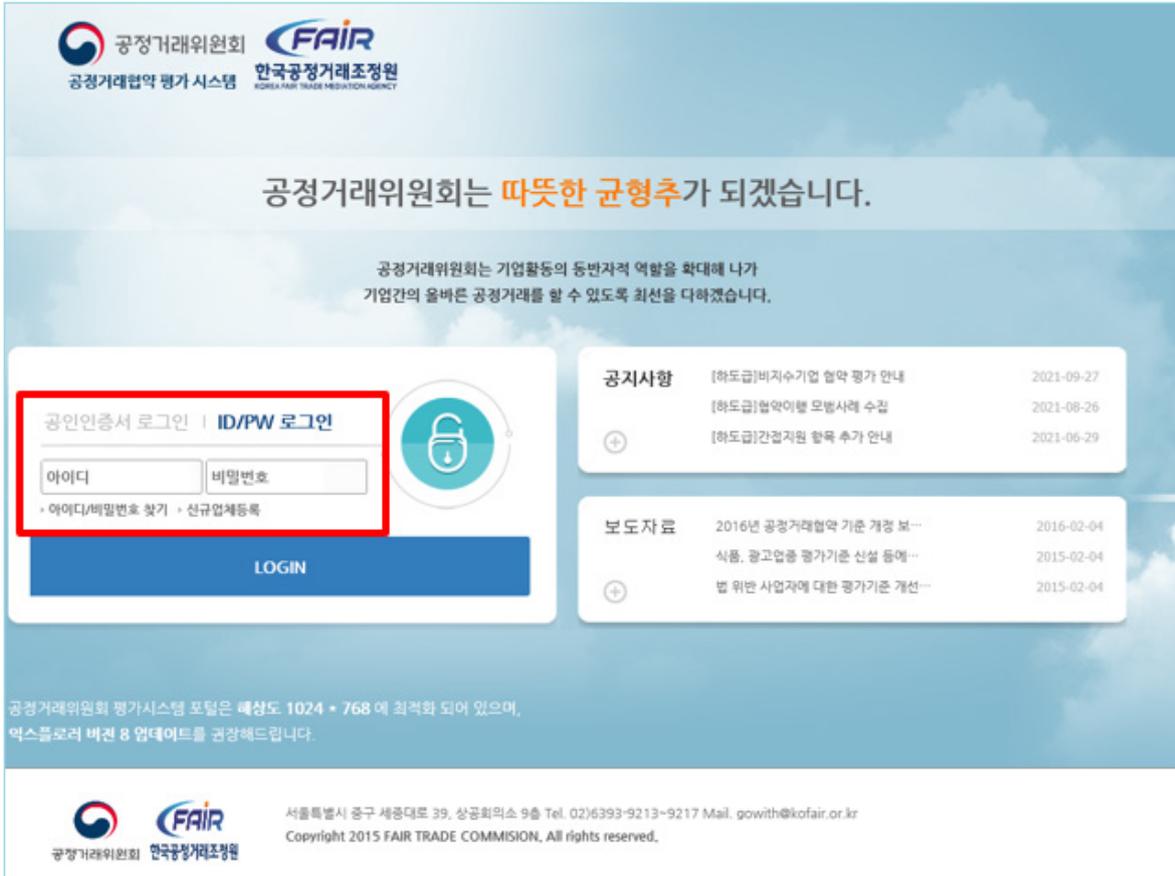
(주소표시줄 왼쪽에 익스플로러 아이콘 생성 및 안내 메시지 출력)



협약평가포털 이용방법 안내

1. 협약평가 신청: 협약이행평가 포털 (gowith.ftc.go.kr,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스템)

① 회원가입 (기존 회원은 다음 단계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스템

FAI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공정거래위원회는 따뜻한 균형추가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활동의 동반자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
기업간의 올바른 공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 ID/PW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신규업체등록

LOGIN

공지사항

[하도급]비지수기업 협약 평가 안내	2021-09-27
[하도급]협약이행 모범사례 수집	2021-08-26
[하도급]간접지원 항목 추가 안내	2021-06-29

보도자료

2016년 공정거래협약 기준 개정 보...	2016-02-04
식품, 광고업종 평가기준 신설 등에...	2015-02-04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2015-02-04

공정거래위원회 평가시스템 포털은 해상도 1024 * 768 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
엑스플로러 버전 8 업데이트를 권장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9층 Tel. 02)6393-9213~9217 Mail. gowith@kofair.or.kr
Copyright 2015 FAIR TRADE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 하단 '신규업체등록'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아닌 'ID/PW 로그인' 이용

㉔ 생성되는 팝업창에 기업 정보 입력

- 업태 및 종목은 협약이행평가 포털 자료실에 게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 업태 : 알파벳 대문자로 된 목차에 있는 사항
 - 종목 : 숫자 코드로 된 사항
 - ※ 'A 농업, 임업 및 어업'의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이 업태가 되며, '01. 농업'의 경우 농업이 종목임. 한 업체가 여러 종목을 영위할 경우 가장 대표적인 종목 하나만 선택하여 기입
 - ※ 코드를 적는 것이 아니며, 선택한 코드에 해당하는 업태 혹은 종목을 한글로 기입
- 기업 홈페이지 주소 입력 시, 'http://' 제외하고 입력

<input type="checkbox"/> 동반성장지수대상여부			
협약구분	식품	기업구분	대기업
지수업종		주요업종	제조업

- 협약 구분 : '제조 - 기계·자동차', '제조 - 전기·전자', '제조 - 조선', '제조 - 화학·비금속·금속', '건설', '정보서비스', '통신', '식품', '광고', '인터넷플랫폼', '중견기업', '유통 - 백화점', '유통 - TV홈쇼핑', '유통 - 마트·편의점', '가맹' 중 선택
 - ※ 업종에 '제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세부 업종에 맞게 선택
- 소속기업집단 : 삼성, SK 등의 대기업 집단 명을 입력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생략

③ '사용자 정보'란에 아이디, 비밀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등 입력 후 저장

사용자 정보	
법인등록 번호	1432567890123
회사명	테스트1013
아이디	test1013 <small>아이디는 4자리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중복확인</small>
비밀번호	<input type="password"/> <small>모든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합니다.</small>
비밀번호 확인	<input type="password"/>
이름	조정원
부서	협약
직위	조사관
연락처	010-000-0000
E-mail	gowith@ftc.go.kr
신청일	2019-10-08
사용만료일	2024-10-18
사용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아이디 : 기업의 법인번호 뒤 7자리에 연번을 붙이는 방식으로 생성
 ※ 법인번호 뒤 7자리가 1234567일 경우, 아이디 3개는 123456701, 123456702, 123456703으로 생성
- 이름, 부서 직위 : 기업의 협약이행평가 담당자 정보 기입
- 연락처 :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 기재**
 * 협약이행평가 정보를 SMS로 통보하기 위함
- '신청일'은 **금일 날짜**, '사용만료일'은 **5년 뒤 날짜**로 입력
- '사용여부'는 'Y' 선택

④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담당자가 확인 후, 업체등록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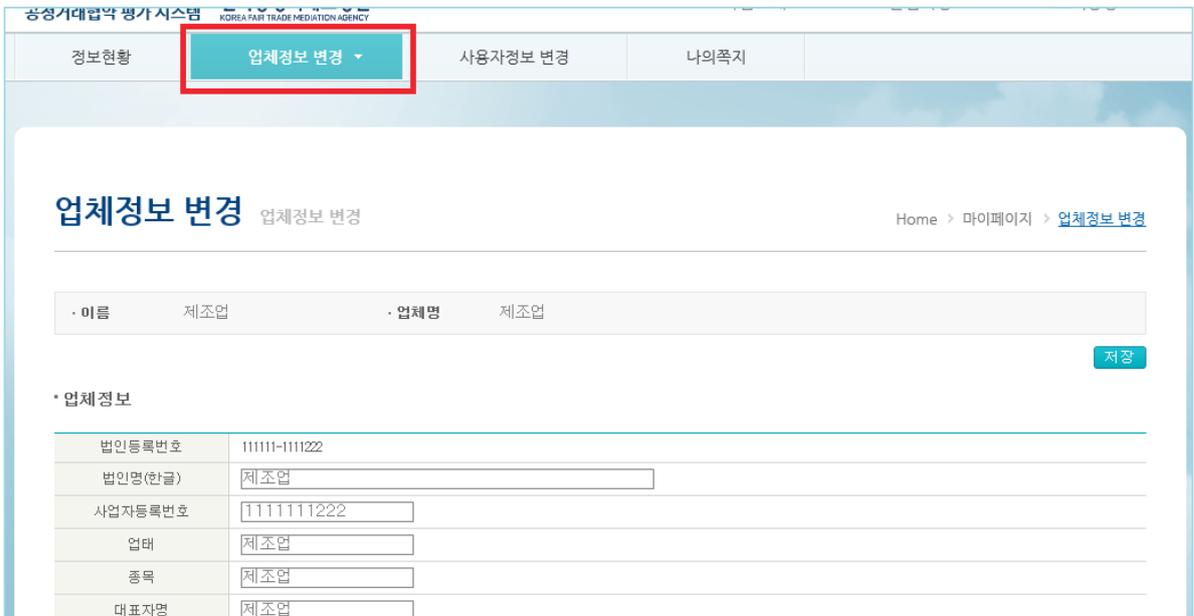
* 등록 승인 후, 해당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가능함

⑥ 아이디 정보 갱신하기

* 기존 아이디에 입력된 인적 정보를 갱신하거나(담당자 정보 변경 등) 아이디를 추가하는 경우(한 기업 당 최대 3개 아이디 부여 가능)



- 로그인 화면 우측 하단 '사용자정보 변경'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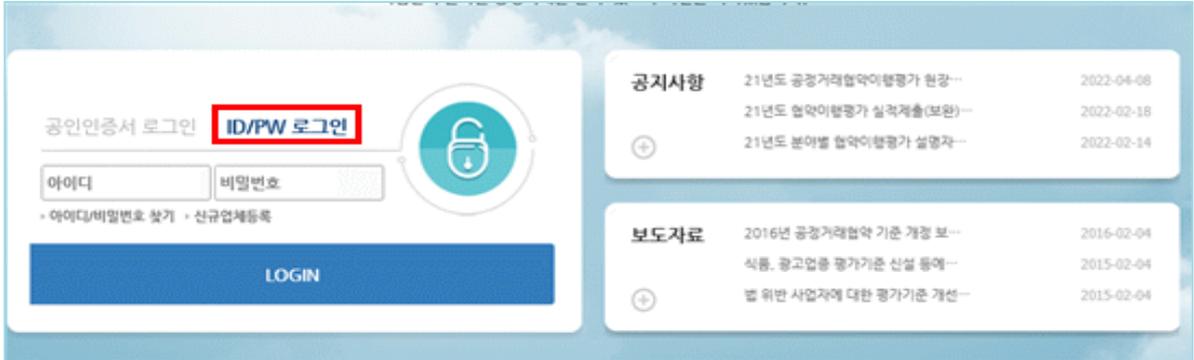
- [업체정보 변경] 탭에서 기업정보 갱신



- [사용자정보 변경] 탭에서 담당자 정보 변경
 - ‘사용자신규’를 클릭하여 기존 아이디 포함 최대 3개의 아이디 생성 가능
 - 기존 아이디를 더블 클릭하여 담당자 정보 갱신 가능
- ※ 담당자 변경 시 반드시 해당부분을 인수인계하여 담당자 정보를 갱신 (담당자명, 휴대전화 연락처, 이메일 주소 업데이트 필수)

2. 협약신청서 작성 및 일반현황 업로드

① 로그인(ID/PW 로그인)



② '협약신청' 클릭



③ 협약신청서 작성 및 일반현황 등록 - [협약신청서]

협약신청 협약신청
Home > 공정거래및동반성장협약 > **협약신청**

차수 4 (상태: 협약신청 이전)

협약신청서
협약서
일반현황

저장
신청
출력

· 협약구분 제조-기계, 자동차

1. 신청인 제조업 대표이사 제조업 동반성장지수대상여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 협약대상 협력사 공정거래조정원 외 100 개사

3. 대기업(원사업자)개요

가. 영위업종 기계, 자동차 자동차

나. 일반현황 매출 기준년도 2019 편집 (단위 : 10억원)

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하도급거래액	총업원수	협력사수	
						수급사업자	비수급사업자
2019	0	0	0	0	234	234	234
2018	6,400	100	80	3,000	5,000	200	1,200

다. 협약체결예정일 2020-01-31

협약신청서
찾아보기
[A기업]협약신청서.pdf

- [협약신청서] 탭 내에서 '협약구분', '협약대상 협력사' 등 기입
 - 중견기업으로 평가를 진행할 경우, '협약구분'은 반드시 '중견기업'으로 선택
 - '나. 일반현황'의 '매출 기준년도'는 2022년으로 선택 후 '편집' 클릭
 - '다. 협약체결예정일'은 '2023년 1월 31일' 선택

③ 협약신청서 작성 및 일반현황 등록 - [일반현황]

협약신청 협약신청
Home > 공정거래및동반성장협약 > **협약신청**

차수 2 (상태: 협약신청)

협약신청서
협약서
일반현황

저장

(단위 : 백만원)

No	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하도급거래액	비하도급거래액	상시종업원수	협력사수	
								수급사업자	비수급사업자
1	2019	6,500,00	200,000	100,000	3,000,00	0	5,000	200	1,200
2	2018	6,400,00	80,000	40,000	3,000,00	0	5,000	200	1,200

- [일반현황] 탭 내에서 '2022년', '2021년' 실적 기입
 - 하도급거래액 및 수급사업자 : 하도급법 상의 하도급거래 총액과 거래 상대방
 - 상시종업원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 추정치를 입력

- '저장'버튼 클릭 후, 다시 [협약신청서] 탭으로 이동

③ 협약신청서 작성 및 일반현황 등록 - [협약신청서] (2)

협약신청서 Home > 공정거래및동반성장협약 > 협약신청

차수 (상태: 협약신청 이전)

· 협약구분

1. 신청인
 서출시 중구

2. 협약대상 협력사 외 개사

3. 대기업(원사업자)개요

가. 영위업종

나. 일반현황 매출 기준년도 (단위 : 10억원)

년도	배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하도급거래액	종업원수	협력사수	
						수급사업자	비수급사업자
2019	400	10	5	200	500	100	100
2018	300	8	4	150	500	100	100

다. 협약체결예정일

[2020-AC09-협약신청서-013300-001.pdf](#)
 [2020-AC09-감사보고서-012200-001.pdf](#)

- '나. 일반현황'에 데이터가 기입되었는지 여부 확인
- 상단의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협약신청서를 출력
- 출력한 협약신청서에 법인대표 인감을 날인하여 스캔한 후, PDF파일로 생성하여 하단 '협약신청서'에 업로드
- 협약체결일 입력
 ※ '2023년 1월 31일' 선택
- 하단 '감사보고서'에 '2022년도 감사보고서' 업로드
- [협약서] 탭으로 이동

③ 협약신청서 작성 및 일반현황 등록 - [협약서]

협약신청서 | 협약서 | 일반현황

체결일: 2020-11-04

협약서: 2020-AC09-공정거래-협약서(조정테크).pdf

No	평가항목	<input type="checkbox"/>	내용
1	1. 계약의 공정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가. 계약체결과정의 공정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가) 실천사항 내용을 협력업체 등록·운용 관련 기준(사규)에 반영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나) 실천사항 내용을 협력업체 등록·운용 관련기준에 반영한 내용을 공개(홈페이지 등)하거나 협력업체에게 고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6	(다)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 시 실천사항 내용 준수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7	(라) 공정한 거래개시 기획의 부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8	(2) 계약이전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input checked="" type="checkbox"/>	
9	나.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공정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	(2)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	(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13	(나)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 권익증진 방향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 협약체결일 입력
※ '2023년 1월 31일' 선택
- '협약서'에 협력업체와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서 샘플 1부 업로드
- 평가항목은 모두 일괄적으로 체크
- '저장' 후 '신청' 버튼 클릭

④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담당자가 협약신청 여부 확인

-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신청보완' 단계에서 해당 사항 수정
- *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협약접수'

3. 이행계획 등록

① 이행계획 등록

No	상세	항목명	O/X	내용
1	<input type="checkbox"/>	1. 계약의 공정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가.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적사항 준수	<input type="checkbox"/>	

- 협약 접수 후, 이행계획 등록
 - '이행계획 요약서' 등록 여부는 선택사항
 - 왼쪽의 버튼 클릭금지(오류 발생)
 - 평가항목은 모두 일괄적으로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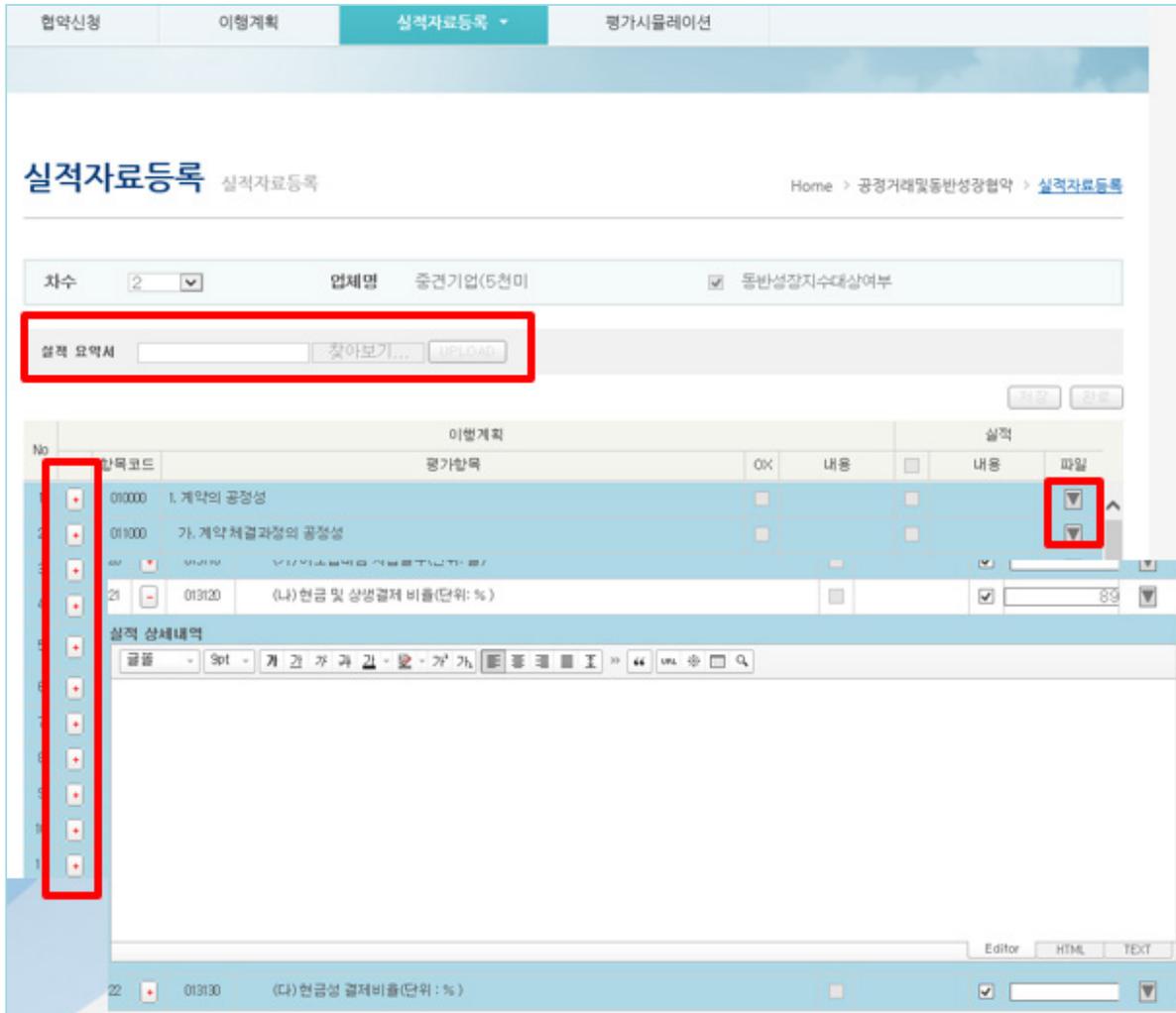
② 협력사 등록

No	사업자 등록 번호	회사명	대표자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기업 구분
1	<input type="checkbox"/>			12945	서울시 서	여	중소기업
2	<input type="checkbox"/>			12945	경기도 광	여	중소기업

- 템플릿 파일(templet.xls) 다운로드 하여 해당양식에 맞추어 내용을 기입한 후 업로드
 - ※ 반드시 양식을 변경하지 않고 빈칸 없이 작성(양식 변경 또는 빈칸 발생 시 오류)
- 업로드 완료 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담당자가 확인 및 접수 완료

4. 실적자료 등록('24. 1. ~)

① 실적자료 등록



- ‘실적요약서’ 업로드
 - 파일형식은 pdf, ppt, hwp 등 모두 가능
- 실적이 있는 평가항목에 실적 업로드
 - ※ 왼쪽의 [+]버튼 클릭 금지(오류 발생)
 - 실적에 대한 모든 설명은 첨부파일 내 기재
 - 하나의 평가 항목에 복수의 실적자료 업로드 가능 * 파일형식 제한 없음
 - 정량평가 항목은 업로드 버튼(☑) 왼쪽의 빈칸에 해당 실적의 숫자 입력
- ‘저장’ 및 ‘완료’버튼 클릭

<별첨 1> '23. 12월 주요 평가기준 개정 사항



1

예규 주요 개정내용

1. 특별지원 항목의 예시로 공동사업지원자금 반영

- 특별지원의 예시로서 **중소기업중앙회**(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내용을 추가
 - 현행 협약평가기준 상에는 상생협력 지원 항목 중 특별지원의 예시로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등에 출연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2.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 가점 적용대상 기업 확대

- 협력사들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 가점**을 중견기업 대상으로까지 확대

3. 대리점분야 협약평가 관련 가점항목 유지

-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 항목(5점)**에 대해 '25년도 평가부터 복구

2

평가지침 주요 수정내용

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확산을 위한 가점 조정

- 납품대금 연동계약이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이 됨에 따라 연동계약 관련 구체적 평가항목 가점 조정
 - 구체적 평가항목으로서 '24년도 평가 시에는 ①연동계약 **체결 여부(1점)** ②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3점) ③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1점)** 평가
 -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서 가점 2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25년도 평가부터 ①연동계약 **체결 여부(1점)** ②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1점) ③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1점)** ④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2점)**으로 평가항목 구성

2. 협력사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 시 평가에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생형 사업재편'과 같이 대·중견기업이 협력사에 대해서 **사업재편 이행**을 지원하는 경우 평가항목 중 '**효율성 증대**' 혹은 '**협력사의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적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3

향후 계획

-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2025년에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제조업-기계·자동차)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1. 계약의 공정성 (46.5점)	①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2.5	2.5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2	2
	②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5	5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 - 1)~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4)	6	6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	2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	2
	③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11)*,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5), 현금성결제비율(4) * 어음 등 교부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초과시 감점(△1.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22	22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	1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2	2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10)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2	2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18.5점)	①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2.5	2.5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2.5	2.5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2.5	2.5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했는지 여부	3	3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	2
	②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4	4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	2
	3. 상생협력 지원 (35점)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8.5)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 (특별지원액×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9	9
(2) 기술지원 및 보호			
①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4) ② 기술보호 건수: 공동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지원 등 (1)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5	5	
(3) 인력·채용 지원			
		1	1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p>(4)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차 협력사 및 2-3차 협력사 간 협약체결 실적 (2) - 1-2차 협력사 및 2-3차 협력사 간 협약 평가신청 실적 (1) - 1-2차 협력사간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유도한 실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이하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유도한 실적*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p style="text-align: right;">[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p> -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정도 (3) <p style="text-align: right;">[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p> - 1-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적 (1) 	10	10
	<p>(5) 효율성 증대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 - 평가대상기업은 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Δ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Δ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 3) 비용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향상, 장비 가동률 제고 - 불량률 감소, 판매수량 대비 반품수량 비율 감소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글PPM 인증제도(중기부),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 일자리 창출 6) 일감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 거래 물량을 비계열 중소 협력사에 개방한 실적 7) 협력사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확대 유도 8)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9)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여 실적 </div>	6	6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p>10)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p> <p>* 업종별 상대평가, A~D의 네 개 등급 부여하되, (A등급:6점, B등급:4점, C등급:2점, D등급:0점) 업종별 평가대상기업이 5개 이하인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협약 평가위원회를 거쳐 점수 보정 가능</p>		
	<p>(6)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p> <p>- 인상비율(1) - 인상실적(3)</p> <p style="text-align: right;">[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p>	4	4
	<p>(7) 기타 가점항목</p> <p>-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가점 2) * 2차 이하 협력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 - 주요 분야 일감개방도 (가점 5)</p> <p style="text-align: right;">[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p> <p>-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가점 5)</p> <p>-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가점 5) - 금형 계약서 사용 (가점 1) -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가점 3)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이행 및 확산(가점 5)</p>	+23	+28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p>(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p>		
	<p>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p>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p>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 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 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p>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p>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 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④ 위 ③이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 협약평</p>	경고 (△1) 시정명령	경고 (△1) 시정명령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가위원회가 감점하기로 의결한 경우(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한함)	(△3) 과징금 (△4) 고발 (△5)	(△3) 과징금 (△4) 고발 (△5)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 (1.~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	10점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제조업-전기·전자)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1. 계약의 공정성 (46.5점)	①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2.5	2.5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2	2
	②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5	5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 - 1)~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4)	6	6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	2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	2
	③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11)*,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5), 현금성결제비율(4) * 어음 등 교부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초과시 감점(△1.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22	22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	1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2	2	
(10)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2	2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18.5점)	①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2.5	2.5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2.5	2.5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2.5	2.5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했는지 여부	3	3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	2
	②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4	4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	2	
3. 상생협력 지원 (35점)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8.5)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 (특별지원액×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9	9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2) 기술지원 및 보호		
①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4) ② 기술보호 건수: 공동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지원 등 (1)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5	5	
(3) 인력·채용 지원	1	1	
(4)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1-2차 협력사 및 2-3차 협력사 간 협약체결 실적 (2)	10	10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차 협력사 및 2-3차 협력사 간 협약 평가신청 실적 (1) - 1-2차 협력사간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유도한 실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이하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유도한 실적*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li style="text-align: right;">[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정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li style="text-align: right;">[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 1-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적 (1) 		
	<p>(5) 효율성 증대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 - 평가대상기업은 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 3) 비용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향상, 장비 가동률 제고 - 불량률 감소, 판매수량 대비 반품수량 비율 감소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글PPM 인증제도(중기부),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 일자리 창출 6) 일감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 거래 물량을 비계열 중소기업에 개방한 실적 7) 협력사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확대 유도 8)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9)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여 실적 10)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div> <p style="margin-top: 10px;">* 업종별 상대평가, A~D의 네 개 등급 부여하되, (A등급:6점, B등급:4점, C등급:2점, D등급:0점) 업종별 평가대상기업이 5개 이하인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협약평가위원회를 거쳐 점수 보정 가능</p>	6	6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6)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 - 인상비율(1) - 인상실적(3)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4	4
	(7) 기타 가점항목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가점 2) * 2차 이하 협력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 - 주요 분야 일감개방도 (가점 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가점 5) -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가점 5) - 금형 계약서 사용 (가점 1) -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가점 3)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이행 및 확산(가점 5)	+23	+28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 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경고 (△2)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④ 위 ③이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 협약평가 위원회가 감점하기로 의결한 경우(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한함)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 (1.~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	10점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제조업-조선)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1. 계약의 공정성 (46.5점)	①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div>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2.5	2.5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2	2
	②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5	5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div> - 1)~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4)	6	6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	2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	2
	③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11)*, 현금 및 상생결제 비율(5), 현금성결제비율(4) * 어음 등 교부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초과시 감점(△1.5) <div style="text-align: right;">[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div>	22	22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	1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2	2	
(10)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2	2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18.5점)	①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2.5	2.5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2.5	2.5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2.5	2.5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했는지 여부	3	3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	2
	②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4	4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	2
3. 상생협력 지원 (35점)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8.5)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 (특별지원액×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9	9
	(2) 기술지원 및 보호 ①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4) ② 기술보호 건수: 공동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지원 등 (1)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5	5
	(3) 인력·채용 지원	1	1
	(4)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1-2차 협력사 및 2-3차 협력사 간 계약체결 실적 (2)	10	10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차 협력사 및 2-3차 협력사 간 협약 평가신청 실적 (1) - 1-2차 협력사간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유도한 실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이하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유도한 실적*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p style="text-align: right;">[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p> -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정도 (3) <p style="text-align: right;">[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p> - 1-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적 (1) 		
	<p>(5) 효율성 증대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 - 평가대상기업은 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 3) 비용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향상, 장비 가동률 제고 - 불량률 감소, 판매수량 대비 반품수량 비율 감소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싱글PPM 인증제도(중기부),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 일자리 창출 6) 일감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 거래 물량을 비계열 중소기업에 개방한 실적 7) 협력사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확대 유도 8)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9)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여 실적 10)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div> <p>* 업종별 상대평가, A~D의 네 개 등급 부여하되, (A등급:6점, B등급:4점, C등급:2점, D등급:0점) 업종별 평가대상기업이 5개 이하인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협약평가위원회를 거쳐 점수 보정 가능</p>	6	6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6)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 - 인상비율(1) - 인상실적(3)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4	4
	(7) 기타 가점항목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가점 2) * 2차 이하 협력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 - 주요 분야 일감개방도 (가점 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가점 5) -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가점 5) - 금형 계약서 사용 (가점 1) -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가점 3)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이행 및 확산(가점 5)	+23	+28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 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5) 과징금 (△5) 고발 (△5)	경고 (△2) 시정명령 (△5) 과징금 (△5)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④ 위 ③이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 협약평가위원회가 감점하기로 의결한 경우(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한함)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 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 (1.~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	10점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제조업-화학·비금속·금속)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1. 계약의 공정성 (46.5점)	①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2.5	2.5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2	2
	②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5	5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 - 1)~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4)	6	6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	2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	2
	③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11)*,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5), 현금성결제비율(4) * 어음 등 교부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초과시 감점(△1.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22	22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	1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2	2	
(10)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2	2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18.5점)	①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2.5	2.5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2.5	2.5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2.5	2.5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했는지 여부	3	3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	2
	②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4	4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	2
3. 상생협력 지원 (35점)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8.5)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 (특별지원액×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9	9
	(2) 기술지원 및 보호 ①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4) ② 기술보호 건수: 공동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지원 등 (1)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5	5
	(3) 인력·채용 지원	1	1
	(4)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1-2차 협력사 및 2-3차 협력사 간 계약체결 실적 (2)	10	10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차 협력사 및 2-3차 협력사 간 협약 평가신청 실적 (1) - 1-2차 협력사간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유도한 실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이하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유도한 실적*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p style="text-align: right;">[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정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 1-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적 (1) 		
	<p>(5) 효율성 증대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 - 평가대상기업은 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 3) 비용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향상, 장비 가동률 제고 - 불량률 감소, 판매수량 대비 반품수량 비율 감소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글PPM 인증제도(중기부),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 일자리 창출 6) 일감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 거래 물량을 비계열 중소 협력사에 개방한 실적 7) 협력사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확대 유도 8)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9)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여 실적 10)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div> <p style="margin-top: 10px;">* 업종별 상대평가, A~D의 네 개 등급 부여하되, (A등급:6점, B등급:4점, C등급:2점, D등급:0점) 업종별 평가대상기업이 5개 이하인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협약 평가위원회를 거쳐 점수 보정 가능</p>	6	6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6)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 - 인상비율(1) - 인상실적(3)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4	4
	(7) 기타 가점항목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가점 2) * 2차 이하 협력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 - 주요 분야 일감개방도 (가점 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가점 5) -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가점 5) - 금형 계약서 사용 (가점 1) -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가점 3)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이행 및 확산(가점 5)	+23	+28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3) 과징금 (△5) 고발 (△5)	경고 (△2) 시정명령 (△3) 과징금 (△5)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④ 위 ③이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 협약평가위원회가 감점하기로 의결한 경우(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한함)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 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 (1.~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	10점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건설업)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1. 계약의 공정성 (54점)	①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3	3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4	4
	②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7	7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장비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인수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 명시 7) 추가공사 위탁시 서면발급 및 원사업자 비용부담 명시 - 1)~7)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8	8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	2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	2
	③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하도급대금 지급일수(11)*,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5), 현금성결제비율(4) * 어음 등 교부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초과시 감점(△1.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20	20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3	3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2)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3	3	
(10)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2	2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17점)	①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2	2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2	2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2	2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3	3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	2
	②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4	4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	2	
3. 상생협력 지원 (29점)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8.5)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특별지원액×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9	9
	(2) 기술지원 및 보호 실적 -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4	4
	(3) 인력·채용 지원	1	1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4)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유도한 실적* (3) * 2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 민간발주분야에서의 실적에 한함 <p style="text-align: right;">[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p>	3	3
	(5) 효율성 증대 정도 - 협약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기업은 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Δ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Δ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협력사 해외 진출 실적 - 해외건설공사 수주금액 증가 - 국내 매출신장 등 2) 비용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3)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향상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품질시험검사(국토개발평가원),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4)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 노무자 임금지급조건 개선 5) 일감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 거래 물량을 비계열 중소 협력사에 개방한 실적 6) 협력사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확대 유도 7)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8)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여 실적 9)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div> <p>* 업종별 상대평가, A~D의 네 개 등급 부여하되, (A등급:8점, B등급:5점, C등급:3점, D등급:0점) 업종별 평가대상기업이 5개 이하인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협약평가위원회를 거쳐 점수 보정 가능</p>	8	8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6)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 - 인상비율(1) - 인상실적(3)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4	4
	(7) 기타 가점항목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가점 2) * 2차 이하 협력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 - 주요 분야 일감개방도 (가점 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가점 5) -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가점 3)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이행 및 확산(가점 5)	+22	+22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④ 위 ③이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 협약평가위원회가 감점하기로 의결한 경우(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한함)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 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 (1.~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	10점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정보서비스업)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1. 계약의 공정성 (51.5점)	1]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2.5	2.5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2	2
	2]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6	6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 7)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명시 - 1)~7)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8	8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	2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	2
	(7) 비밀유지계약 체결	2	2
	3]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8)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11)*,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5), 현금성결제비율(4) * 어음 등 교부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초과시 감점(△1.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22	22
(9)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	1	
(10)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2	2	
(11)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2	2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2. 범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18.5점)	① 범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2.5	2.5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2.5	2.5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2.5	2.5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3	3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	2
	② 범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4	4	
(7) 범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	2	
3. 상생협력 지원 (30점)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8.5)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 (특별지원액×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9	9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2) 기술지원 및 보호 실적			
①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2) ② 기술보호 건수: 공동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지원 등 (1)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3	3	
(3)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3	3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4) 인력·채용 지원	1	1
	(5)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유도한 실적* (3) * 2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3	3
	(6) 효율성 증대 정도 - 협약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기업은 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예시) 1)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 3) 비용절감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시스템 오작동률 감소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싱글PPM 인증제도(중기부),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 일자리 창출 6) 일감 개방 - 계열사 거래 물량을 비계열 중소 협력사에 개방한 실적 7) 협력사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확대 유도 8)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9)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여 실적 10)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div> * 업종별 상대평가, A~D의 네 개 등급 부여하되, (A등급:9점, B등급:6점, C등급:3점, D등급:0점) 업종별 평가대상기업이 5개 이하인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협약평가위원회를 거쳐 점수 보정 가능	9	9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7)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 - 인상비율(0.5) - 인상실적(1.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2	2
	(8) 기타 가점항목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가점 2) * 2차 이하 협력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 - 주요 분야 일감개방도 (가점 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가점 5)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이행 및 확산(가점 5) -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가점 3)	+22	+22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경고 (△2)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④ 위 ③이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 협약평가위원회가 감점하기로 의결한 경우(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한함)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 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벌금 이하	1건당 벌금 이하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 (1.~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	10점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통신업)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1. 계약의 공정성 (51.5점)	①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2.5	2.5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2	2
	②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6	6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요구 가능요건 및 제공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장비·인력 등 사용지정 가능요건 4)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해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 및 방법 설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 명시 - 계약서 상 1)~6)의 조항 명시(2) - 해당 조항의 내용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6)	8	8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	2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	2
	(7) 비밀유지계약 체결	2	2
	③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8)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11)*,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5), 현금성결제비율(4) * 어음 등 교부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초과시 감점(△1.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22	22
	(9)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	1
	(10)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2	2
	(11)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2	2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18.5점)	①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2.5	2.5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2.5	2.5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2.5	2.5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3	3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	2
	②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4	4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	2
3. 상생협력 지원 (30점)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8.5)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 (특별지원액×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9	9
	(2) 기술지원 및 보호 실적 ①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4) ② 기술보호 건수: 공동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지원 등 (2)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6	6
	(3) 인력·채용 지원	1	1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p>(4)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유도한 실적* (3) * 2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p style="text-align: right;">[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p>	3	3
	<p>(5) 효율성 증대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기업은 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신장비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 3) 비용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향상, 장비 가동률 제고 - 불량률 감소, 판매수량 대비 반품수량 비율 감소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싱글PPM 인증제도(중기부),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 일자리 창출 6) 일감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 거래 물량을 비계열 중소기업에 개방한 실적 7) 협력사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확대 유도 8)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9)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여 실적 10)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div> <p>* 업종별 상대평가, A~D의 네 개 등급 부여하되, (A등급:9점, B등급:6점, C등급:3점, D등급:0점) 업종별 평가대상기업이 5개 이하인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협약평가위원회를 거쳐 점수 보정 가능</p>	9	9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6)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 - 인상비율(0.5) - 인상실적(1.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2	2
	(7) 기타 가점항목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가점 2) * 2차 이하 협력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 - 주요 분야 일감개방도 (가점 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가점 5) -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가점 5)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이행 및 확산(가점 5) -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가점 3)	+22	+27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5) 과징금 (△5) 고발 (△5)	경고 (△2) 시정명령 (△5) 과징금 (△5)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④ 위 ③이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 협약평가위원회가 감점하기로 의결한 경우(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한함)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 (1.~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	10점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식품업)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1. 계약의 공정성 (49.5점)	①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2.5	2.5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2	2
	②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6	6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용 - 1)~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8	8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	2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	2
	③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11)*,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5), 현금성결제비율(4) * 여름 등 교부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초과시 감점(△1.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22	22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	1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2	2	
(10)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2	2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18.5점)	①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2.5	2.5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2.5	2.5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2.5	2.5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3	3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	2
	②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4	4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	2
	3. 상생협력 지원 (32점)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7.7)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 (특별지원액×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8	8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3)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2) 기술지원 실적 -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2	2
(3) 위생지원		5	5
(4) 인력·채용 지원	1	1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p>(5) 원물생산자 직접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기술,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여부 및 MOU내용의 충실도 (2) - 원물생산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법인 및 재단설립 여부 및 계획 (1) - 원물생산자와의 사전계약 거래 확대 실적 (1) <p style="text-align: right;">[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p>	4	4
	<p>(6) 효율성 증대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기업은 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 비용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충발생률 저감, 생산성 향상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HACCP 인증마크(식약처),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농림부) 등 일자리 창출 일감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 거래 물량을 비계열 중소 협력사에 개방한 실적 협력사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확대 유도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여 실적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div> <p>* 업종별 상대평가, A~D의 네 개 등급 부여하되, (A등급:8점, B등급:5점, C등급:3점, D등급:0점) 업종별 평가대상기업이 5개 이하인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협약평가위원회를 거쳐 점수 보정 가능</p>	8	8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7)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 - 인상비율(1) - 인상실적(3)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4	4
	(8) 기타 가점항목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 전체 협력사 대비 협약기간 중 거래관계가 종료된 협력사의 비율이 2% 미만 (가점 1) -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가점 2) * 2차 이하 협력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 -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확대 실적 (가점 1)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 주요 분야 일감개방도 (가점 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가점 5) -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가점 5)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이행 및 확산(가점 5) -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가점 3)	+24	+29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5) 과징금 (△5) 고발 (△5)	경고 (△2) 시정명령 (△5) 과징금 (△5)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④ 위 ③이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 협약평가위원회가 감점하기로 의결한 경우(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한함)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3)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3)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4) 고발 (△5)	(△4) 고발 (△5)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 (1.~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	10점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광고업)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1. 계약의 공정성 (59.5점)	①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2.5	2.5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2	2
	②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6	6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계약금액 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2) 특정업체의 물품·장비·인력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3)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4) 결과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5)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 6)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 1)~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8	8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	2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	2
	(7) 선수금 비율 및 그 제고정도 - 선수금 비율(3), 선수금 비율 제고정도(2)	5	5
	(8)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 - 대가 지급을 위한 절차 마련(2), 대가 지급 실적(3)	5	5
③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9)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11)*,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5), 현금성결제비율(4) * 어음 등 교부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초과시 감점(△1.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22	22	
(10)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	1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11)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2	2
	(9)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2	2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18.5점)	①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div>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2.5	2.5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div>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3.5	3.5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div>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2.5	2.5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2	2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	2
	②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4)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4	4
	(5)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	2
	3. 상생협력 지원 (22점)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8.5)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 (특별지원액×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4%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9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2) 교육지원 - 회계·세법·외국어 등 교육 지원	2	2
	(3) 재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불 - 제작업체(1차협력사)가 편집업체 등 재하도급사에게 ATL(광고물 제작) 일부를 재하도급 시, 총 ATL 재하도급건수 대비 광고대행사가 재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실적 (광고물 제작 총 재하도급 건수 대비 직불합의 건수의 비율)	3	3
	(4) 효율성 증대 정도 - 협약사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기업은 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8	8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예시)</p> <p>1)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수출경쟁력 강화, 광고수출증대 - 협약사의 국내 매출신장, 광고목적물의 매출신장 등</p> <p>2) 제작비용 절감</p> <p>3) 일자리 창출</p> <p>4) 일감 개방 - 계열사 거래 물량을 비계열 중소 협력사에 개방한 실적</p> <p>5) 협력사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확대 유도</p> <p>6)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프로젝트 참여기회 제공 등</p> <p>7)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여 실적</p> <p>8)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p> </div> <p>* 업종별 상대평가, A~D의 네 개 등급 부여하되, (A등급:8점, B등급:5점, C등급:3점, D등급:0점) 업종별 평가대상기업이 5개 이하인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협약평가위원회를 거쳐 점수 보정 가능</p>		
	(5) 기타 가점항목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2) -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가점 2) * 2차 이하 협력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 - 주요 분야 일감개방도 (가점 5)	+18	+18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가점 5) -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가점 3)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3) 과징금 (△5) 고발 (△5)	경고 (△2) 시정명령 (△3) 과징금 (△5)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④ 위 ③이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 협약평가위원회가 감점하기로 의결한 경우(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한함)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	10점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인터넷플랫폼업)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1. 계약의 공정성 (59.5점)	①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2.5	2.5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2	2
	②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6	6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2) 특정업체의 물품·장비·인력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3)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4) 결과물 검사에 한 기준 및 방법 5)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 6)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 1)~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8	8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	2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패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패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	2
	(7) 선수금 비율 및 그 제고정도 - 선수금 비율(3), 선수금 비율 제고정도(2)	5	5
	(8)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 - 대가 지급을 위한 절차 마련(2), 대가 지급 실적(3)	5	5
	③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9)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11)*,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5), 현금성결제비율(4) * 어음 등 교부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초과시 감점(△1.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22	22	
(10) (6)상의 패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	1	
(11)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2	2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12)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2	2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18.5점)	①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div>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2.5	2.5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div>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2.5	2.5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div>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2.5	2.5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3	3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	2
	②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4	4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	2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8.5)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 혼합지원액 + (특별지원액×2)'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4%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5)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9	9
	(2) 교육지원 - 회계·세법·외국어 등 교육 지원	2	2
	(3)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3	3
(4) 효율성 증대 정도	8	8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사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기업은 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예시)</p> <p>1)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인 수출경쟁력 강화, 매출신장 등 <p>2) 인터넷생태계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자 커뮤니티 활성화 - 온라인콘텐츠의 양적, 질적 증가 <p>3) 인터넷산업 내 고용창출 기여(실버인력, 장애인 고용 등)</p> <p>4) 일감 개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 거래 물량을 비계열 중소기업에 개방한 실적 <p>5) 협력사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확대 유도</p> <p>6)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p>7)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여 실적</p> <p>8) 기타 인터넷산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p> </div> <p>* 업종별 상대평가, A~D의 네 개 등급 부여하되, (A등급:8점, B등급:5점, C등급:3점, D등급:0점) 업종별 평가대상기업이 5개 이하인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협약평가위원회를 거쳐 점수 보정 가능</p>		
	<p>(6) 기타 가점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2) -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가점 2) * 2차 이하 협력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 - 주요 분야 일감개방도 (가점 5) <p style="text-align: right;">[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가점 5) -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가점 3) 	+18	+18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p>(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p> <p>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p> <p>*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p>	경고 (△3) 시정명령 (△15)	경고 (△3) 시정명령 (△15)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과징금 (△20) 고발 (△2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④ 위 ③이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 협약평가위원회가 감점하기로 의결한 경우(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한함)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	10점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직전년도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1. 계약의 공정성 (81.5점)	①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div>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4.5	4.5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2	2
	②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8	8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div> - 1)~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8	8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	2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	2
	③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하도급대금 지급일수(25),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15), 현금성결제비율(10) <div style="text-align: right;">[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div>	50	50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	1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2	2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10)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2	2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18.5점)	①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4.5	4.5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4.5	4.5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4.5	4.5
	(4)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	2
	②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5)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1	1
(6)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	2	
3. 상생협력 지원 (가점항목)	(1) 협력사에 대한 다음의 상생협력 지원항목을 이행한 경우 -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가점 1) - 금융(자금)지원 (가점 4)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 기술지원 및 보호 (가점 2)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 인력·채용 지원 (가점 1) - 효율성 증대 정도 (가점 3) -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가점 3)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36	+44
	(2) 수급사업자(1차협력사)의 협력사(2차)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가점 3) (3)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4)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5)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2)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6) 주요 분야 일감개방도 (가점 5) <p style="text-align: right;">[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p> (7)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가점 5) (8)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가점 5) (9)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이행 및 확산(가점 5) (10)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가점 3)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5) 과징금 (△5) 고발 (△5)	경고 (△2) 시정명령 (△5) 과징금 (△5)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④ 위 ③이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 협약평가위원회가 감점하기로 의결한 경우(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한함)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0점)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0점)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	10점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직전년도 매출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중견기업)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1. 계약의 공정성 (81.5점)	①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div>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4.5	4.5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2	2
	②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8	8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div> - 1)~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8	8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	2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	2
	③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하도급대금 지급일수(25),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15), 현금성결제비율(10) <div style="text-align: right;">[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div>	50	50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	1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2	2	
(10)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2	2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18.5점)	①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4.5	4.5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4.5	4.5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4.5	4.5
	(4)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	2
	②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5)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1	1
	(6)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	2
3. 상생협력 지원 (가점항목)	(1) 협력사에 대한 다음의 상생협력 지원항목을 이행한 경우 -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가점 1) - 금융(자금)지원 (가점 4)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 기술지원 및 보호 (가점 2)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 인력·채용 지원 (가점 1) - 효율성 증대 정도 (가점 3) -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가점 3)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3.6	+4.4
	(2) 수급사업자(1차협력사)의 협력사(2차)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가점 3) (3)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4)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5)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2) (6) 주요 분야 일감개방도 (가점 5)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p style="text-align: right;">[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p> <p>(7)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가점 5)</p> <p>(8)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가점 5)</p> <p>(9)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이행 및 확산(가점 5)</p> <p>(10)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가점 3)</p>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p>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p> <p>*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p>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p>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p> <p>*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p>	경고 (△2)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5)	경고 (△2)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5)
	<p>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p> <p>④ 위 ③이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 협약평가위원회가 감점하기로 의결한 경우(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한함)</p>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p>-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p>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5. 만족도 조사	<p>-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p> <p>: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p> <p>※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p>	10점	10점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직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1. 계약의 공정성 (81.5점)	①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4.5	4.5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2	2
	②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8	8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 - 1)~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8	8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	2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	2
	③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하도급대금 지급일수(25),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15), 현금성결제비율(10)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50	50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	1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2	2	
(10)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2	2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18.5점)	①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4.5	4.5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4.5	4.5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4.5	4.5
	(4)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	2
	②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5)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1	1
(6)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	2	
3. 상생협력 지원 (가점항목)	(1) 협력사에 대한 다음의 상생협력 지원항목을 이행한 경우 -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가점 1) - 금융(자금)지원 (가점 4)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 기술지원 및 보호 (가점 2)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 인력·채용 지원 (가점 1) - 효율성 증대 정도 (가점 3) -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가점 3) [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	+36	+44
	(2) 수급사업자(1차협력사)의 협력사(2차)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가점 3) (3)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4)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5)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2) (6) 주요 분야 일감개방도 (가점 5) <p style="text-align: center;">[구체적 산식은 별표2에 따름]</p> (7)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가점 5) (8)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가점 5) (9)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이행 및 확산(가점 5) (10)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가점 3)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5) 과징금 (△5) 고발 (△5)	경고 (△2) 시정명령 (△5) 과징금 (△5)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④ 위 ③이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 협약평가위원회가 감점하기로 의결한 경우(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한함)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1건당 벌금 이하 (△7점) 집행유예 (△10점) 금고·징역 이상 (△15점)	

(개정) 평가항목	(개정) 세부평가 항목	배점	
		현행	개정
5. 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	10점

별표 2

1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①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 (2)

- '대금지급절차 마감'이란, 대기업이 협력사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 이에 대한 내부적 지급결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함
- (예시) '월 1회(매월 말일) 대금지급절차를 마감'한다는 것의 의미
 : 1개월 동안 실제 수령한 목적물을 매월 말일 일괄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처리
-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가 증가할수록 실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며, 이에 따라 협력사는 대금을 더욱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됨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	점수
월 3회 이상	2
월 2회	1
월 1회 이하	0

②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 대금지급일수

- '대금지급일수'란, 대기업이 대금지급절차 마감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날 (대금지급기일)까지의 일수를 의미함

대기업용	대금지급일수			점수	
	중견기업용 (전년도 매출액)			대기업용	중견기업용
	5천억 미만	5천억 ~ 1조 미만	1조 ~ 2조 미만		
10일 이하	40일 이하	25일 이하	15일 이하	11	25
10일~12일 이하	40일~42일 이하	25일~28일 이하	15일~19일 이하	10	23
12일~14일 이하	42일~44일 이하	28일~31일 이하	19일~23일 이하	9	21
14일~16일 이하	44일~46일 이하	31일~34일 이하	23일~27일 이하	8	19
16일~18일 이하	46일~48일 이하	34일~37일 이하	27일~31일 이하	7	17
18일~20일 이하	48일~50일 이하	37일~40일 이하	31일~35일 이하	6	15
20일~22일 이하	50일~52일 이하	40일~43일 이하	35일~39일 이하	5	13
22일~24일 이하	52일~54일 이하	43일~46일 이하	39일~43일 이하	4	11
24일~26일 이하	54일~56일 이하	46일~49일 이하	43일~47일 이하	3	9
26일~28일 이하	56일~58일 이하	49일~52일 이하	47일~51일 이하	2	6
28일~30일 이하	58일~60일 이하	52일~55일 이하	51일~55일 이하	1	3
30일 초과	60일 초과	55일 초과	55일 초과	0	0

③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이란, 협력사에게 지급한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 및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을 의미함
- '현금'은 ▲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담보대출·구매론·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의미함
- 동 항목에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것만 실적으로 인정

$$\text{(점수)} \frac{\text{현금 및 상생결제비율}(\%)}{100(\%)} \times \text{(만점)}$$

- * 대기업의 경우, 현금·상생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만점
- * 중견기업의 경우, 만점기준은 다음과 같음
 - (5천억 미만) 현금·상생결제비율이 40% 이상
 - (5천억 이상 1조원 미만) 현금·상생결제비율이 50% 이상
 -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현금·상생결제비율이 60% 이상

④ 현금성결제비율

- '현금성결제비율'이란, 협력사에게 지급한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 ▲수표, ▲만기60일이하의 상생결제시스템, ▲만기60일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담보대출·구매론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을 의미함

$$\text{(점수)} \left[\frac{A(\%)}{100(\%)} \times \text{(만점)} \times \frac{3}{8} \right] + \left[\frac{\text{현금성결제비율}(\%)}{100(\%)} \times \text{(만점)} \times \frac{5}{8} \right]$$

- * A = 현금성결제비율 - (만기60일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담보대출·구매론을 통한 결제비율)

2

금융(자금)지원

- 기업별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금융지원 규모 평가 시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규모를 평가함
- 다만, 영업이익 적자 기업 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한 기업의 경우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다소 부족함을 고려하여 '전년매출액' 대신 '조정매출액'을 사용하며,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 ① (전년 영업이익 적자 기업의 조정매출액)
= 전년매출액 × 0.5
- ② (전년 영업이익이 흑자이나, 전전년 영업이익에 비해 전년 영업이익이 10%이상 하락한 기업의 조정매출액)
= 전년매출액 × (1-영업이익하락비율×0.5)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비협약사) 및 비협약 2차사에 대한 자금(금융) 지원 실적도 인정함. 단, 실제 이루어진 지원의 50%만 실적으로 인정함

① 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 혼합지원액 + (특별지원액×2)'

$$\text{(점수)} \frac{\text{금융지원 실적}}{\text{조정매출액} \times 0.008} \times \text{(만점)}$$

- * 대기업의 경우, 금융지원 실적이 조정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 * 중견기업의 경우, 만점기준은 다음과 같음
 - (5천억 미만) 금융지원 실적이 조정매출액의 0.2% 이상
 - (5천억 이상 1조원 미만) 금융지원 실적이 조정매출액의 0.4% 이상
 -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금융지원 실적이 조정매출액의 0.6% 이상

- '직접지원'이란 대기업이 자기 자금을 협력사에게 저리로 대여하거나 무상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text{직접지원액} = \text{유상지원액} + 2 \times \text{무상지원액}$$

- * 무상지원액의 경우 그 2배를 직접지원액으로 인정
-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원의 경우, 그 대상이 비협약사인 경우에도 금융지원 실적으로 인정

- '혼합지원'이란 대기업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거나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협력사에 대해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혼합지원액'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기업의 자기출연액에 대출비율을 곱한 값임

$$\text{혼합지원액} = \text{자기출연액} \times \left[\frac{\text{대출비율} \left[\frac{\text{1차대출액} + 2 \times \text{2차대출액}}{\text{총조성액}} \right]}{50\%} \right]$$

- * 2차협력사에 대한 대출액의 경우 1차협력사에 대한 대출액의 2배로 인정

- '특별지원'이란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보증기금을 출연하고, 이를 통해 협력사에 대해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별지원액'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기업의 자기출연액에 지원비율을 곱한 값임

$$\text{특별지원액} = \text{자기출연액} \times \left[\frac{\text{지원비율} \left[\frac{\text{1차대출액} + 2 \times \text{2차대출액}}{\text{총조정액}} \right]}{30\%} \right]$$

* 2차협력사에 대한 대출액의 경우 1차협력사에 대한 대출액의 2배로 인정

3 기술지원 및 보호

- 기업별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기술지원 규모 평가 시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규모를 평가함
 - 금융지원 항목 점수 산정시와 같이 조정매출액을 사용함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비협약사) 및 비협약 2차사에 대한 기술지원 실적도 인정함. 단, 실제 이루어진 지원의 50%만 실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지원 금액

- '기술지원 금액'이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기술개발, 이전,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한 금액을 말함

$$\text{(점수)} \frac{\text{기술지원액}}{\text{조정매출액} \times a} \times \text{(만점)}$$

② 기술지원 건수

- '기술지원 건수'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기술개발, 이전, 공동연구 등을 지원한 건수를 말함

$$\text{(점수)} \frac{\text{기술지원건수}/b}{\text{조정매출액}/1\text{조원}} \times \text{(만점)}$$

③ 기술보호 건수

- '기술보호 건수'란 대기업이 협력사와 공동특허출원, 협력사의 특허출원지원 등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한 건수를 의미함

$$\text{(점수)} \frac{\text{기술보호건수}/c}{\text{조정매출액}/1\text{조원}} \times \text{(만점)}$$

※ 업종별 a, b, c의 값

구분 \ 업종	기계·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화학·비금속·금속	건설	정보서비스	통신	식품
a	0.3%	0.18%	0.08%	0.08%	0.01%	0.07%	0.4%	0.2%
b	85건	45건	35건	50건	8건	40건	70건	50건
c	5건	5건	5건	3건	-	20건	20건	-

*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중견기업의 주요 영위 업종의 a, b, c 값을 적용

4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정도

① 대금지급일수 (1.5)

- '1-2차협력사간 대금지급일수'란, 대기업의 1차협력사가 대금지급절차 마감일로부터 2차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날(대금지급기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의미함

평균 대금지급일수	점수
30일 이하	1.5
30일 초과~40일 이하	1.2
40일 초과~50일 이하	0.9
50일 초과~60일 이하	0.6
60일 초과	0

* 평균 대금지급일수 = $\sum \frac{\text{1차 협력사 a에 지급한 대금}}{\text{대기업의 전체 하도급대금}} \times \text{1차 협력사 a의 대금지급일수}$

(1차 협력사 중 해당 대기업과의 거래비중이 낮은 협력사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대금지급 개선을 유도해내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 → 대기업의 전체 하도급대금 대비 해당 협력사에 지급한 대금으로 가중평균한 값으로 점수 부여)

②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1.5)

-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이란, 대기업의 1차협력사가 2차협력사에게 지급한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 및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을 의미함

- '현금'은 ▲현금, ▲수표, ▲만기1일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담보대출·구매론·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의미함

$$\text{(점수)} = \frac{\text{평균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40(\%)}$$

* 현금·상생결제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만점

* 평균 현금·상생결제비율 = $\Sigma \frac{\text{1차 협력사 } a \text{에 지급한 대금}}{\text{대기업의 전체 하도급대금}} \times \text{1차 협력사 } a \text{의 현금·상생결제비율}$

* 동 항목에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것만 실적으로 인정

5

협력사 대상 매입액 조정 실적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비협약사) 및 비협약 2차사에 대한 매입액 조정 실적도 인정함. 단, 실제 이루어진 지원의 50%만 실적으로 인정함

① 협력사 대상 매입액 인상비율

- ‘협력사 대상 매입액 인상비율’이란, 협력사가 대기업에게 인상을 요청한 금액 중 실제 대기업이 인상해 준 금액의 비율을 말함
- * 협력사가 인상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기업이 선제적으로 원재료 가격, 최저임금 상승 등을 반영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기연장·납품지연 등(원도급금액은 증액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매입액을 인상해 준 경우 협력사의 인상요청 금액을 100% 반영한 것으로 간주

인상비율	점수
90%	2.5점 또는 1.5점
85%	2점 또는 1.2점
80%	1.5점 또는 0.9점
75%	1점 또는 0.6점
70%	0.5점 또는 0.3점
70% 미만	0점

* 중견기업의 경우, 인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만점

② 협력사 대상 매입액 인상실적

- ‘협력사 대상 매입액 인상실적’이란, 대기업의 협력사 대상 총 매입액 중 대기업이 총 인상해준 금액의 비율을 말함

$(\text{점수}) \frac{A}{\text{만점기준}} \times (\text{만점})$

* A= (대기업의 총 인상금액/대기업의 협력사 대상 총 매입액) × 100

업종	만점기준
제조·건설·식품	1%
정보서비스·통신	0.3%

* A값이 만점기준 이상인 경우, 만점 부여

6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유도

①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0.5)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도입'이란, 대기업이 상생결제상품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2차 이하 협력사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말함

② 대기업의 시스템 활용실적 (0.5)

- '대기업의 시스템 활용실적'이란, 대기업이 시스템을 통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총 금액으로, 대기업의 협력사 대상 총 매입액 대비 시스템 활용 실적을 평가함

$$(점수) \frac{\text{시스템을 통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총 금액}}{\text{대기업의 협력사 대상 총 매입액} \times 0.4} \times 0.5점$$

- * 대기업의 시스템 활용 실적이 대기업의 협력사 대상 총 매입액의 40% 이상인 경우 만점
- * 현금지급실적을 제출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와 동일하게 실적 인정

③ 2차 이하 거래단계에서의 시스템 활용실적 (1)

- '2차 이하 거래단계에서의 시스템 활용실적'이란, 시스템을 통해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총 금액을 의미하며, 시스템을 통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총 금액 대비 활용실적을 평가함

$$(점수) \frac{\text{시스템을 통해 1차 협력사가 지급한 총 금액}}{\text{시스템을 통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총 금액} \times \text{만점기준}(A)} \times 1점$$

- * 시스템을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금액 대비 1차 협력사가 그 이하 협력사에게 지급한 금액의 비율의 만점기준(A)은 다음과 같음
 - ('20년에 체결하는 협약) 4%
 - ('21년에 체결하는 협약) 7%
 - ('22년 이후 체결하는 협약) 10%
- * 현금지급실적을 제출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와 동일하게 실적 인정 (단, 모든 1차 협력사에 대해 그 이하 2차 협력사와의 대금지급조건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일부라도 대금지급조건을 모니터링할 수 없는 시스템은 인정되지 않음)

7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실적

-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실적’이란, 대기업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협력사 채용과 연계해주거나, 협력사의 직원 채용을 위한 박람회 개최를 지원해주는 것 등을 말함

①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 (가점 1)

- 대기업이 협력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수립 여부 등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

②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 (가점 1)

협력사의 청년 채용 실적	청년 채용 지원을 한 협력사 비율 (총 협력사 수 대비 청년 채용 지원을 한 협력사 수)	배점
20인 이상	20% 이상	1
15인 이상 ~ 20인 미만	15% 이상 ~ 20% 미만	0.8
10인 이상 ~ 15인 미만	10% 이상 ~ 15% 미만	0.6
5인 이상 ~ 10인 미만	5% 이상 ~ 10% 미만	0.4
1인 이상 ~ 5인 미만	0% 초과 ~ 5% 미만	0.2
실적 없음	실적 없음	0

〈삭제〉

8

주요 분야 일감 개방도

- ‘주요 분야 일감 개방도’란 수직계열화 등 산업의 특성과 무관하게 대기업집단 전반적으로 계열사 간 거래가 빈번히 나타나는 업종(사업시설관리, SI, 광고대행, 부동산관리, 물류, MRO 등)의 총 매입액에서 비계열 중소기업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주요 분야 일감 개방도)

$$= \frac{\text{사업시설관리, 물류, SI, 광고, 부동산관리, MRO 분야 비계열 중소기업 매입액}}{\text{사업시설관리, 물류, SI, 광고, 부동산관리, MRO 분야 총 매입액}} \times 5$$

* 단, 광고업종의 경우 위 평가 산식에서 ‘광고’ 분야 매입액은 제외

9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확대 실적

-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확대 실적'이란 국내 원물 생산자의 소득 증대 및 농업계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식품업종 대기업이 국산 농산물 등의 구매를 더욱 활성화한 정도로서, 대기업의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금액 증가율을 의미함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확대 실적)

$$= \frac{(\text{협약기간 중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금액}) - (\text{기존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금액})}{\text{기존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금액}} \times 1$$

- * 既 제출한 직전 년도 실적은 수정 불가
- * 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만점

10

원물 생산자와의 사전계약 거래 확대 실적

- '원물 생산자와의 사전계약 거래 확대 실적'이란 농산물 가격·물량 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물 생산자와 식품 대기업 간 사전계약을 활성화한 정도로서, 식품업종 대기업이 사전계약을 맺은 농가 수의 증가율을 의미함

(원물 생산자와의 사전계약 거래 확대 실적)

$$= \frac{(\text{협약 기간 중 사전계약 농가 수}) - (\text{기존 사전계약 농가 수})}{\text{기존 사전계약 농가 수}} \times 1$$

- * 既 제출한 직전 년도 실적은 수정 불가
- * 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만점



K O R E A F A I R T R A D E M E D I A T I O N A G E N C Y

<별첨 2> 하도급분야 협약이행평가 기준 전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 (하도급분야)

	제정 2007. 9.13.
	1차 개정 2009.10. 6.
	2차 개정 2010.11. 1.
	3차 개정 2011. 3.26.
	4차 개정 2011.12.28.
5차 개정	2012. 8.2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66호
6차 개정	2012.12.2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0호
7차 개정	2013. 3.29.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6호
8차 개정	2013.12.3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85호
9차 개정	2014.10.2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99호
10차 개정	2014.12.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8호
11차 개정	2016. 2. 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5호
12차 개정	2018. 5. 9.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01호
13차 개정	2019.12.19.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4호
14차 개정	2020. 4. 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44호
15차 개정	2021. 8.1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71호
16차 개정	2022.12.23.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14호
17차 개정	2023. 4.14.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29호
18차 개정	2023.12.29.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성격) 이 기준(이하 “협약절차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관 관련 법규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준수와 상생협력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제3조(협약의 당사자) ① 협약의 당사자는 하도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 및 원사업자와 거래 중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된다. 다만, 비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협력사도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은 협약체결 당시 거래 중에 있는 모든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협력사(이하 “협력사”라 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력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이 대표와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대기업은 협약 체결 후 새로이 하도급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협력사와도 원칙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장 협약의 내용

제4조(공정거래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협약내용에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 ① 협약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사항
- ② 협약 당사자 간의 범위반 예방 및 범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 ③ 협약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 지원 사항
- ④ 협약평가기준의 준수, 협약내용 및 평가 자료의 공정위 제출 등 기타 협약 관련 사항

제5조(공정한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 ①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을 위한 사항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별표 5)
 - 가.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객관·공정성 제고
 - 나.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 절차 및 결과의 사전공개
 - 다. 등록업체에 대한 공정한 입찰참가기회 부여 등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사실·물량·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일정한 수단을 통해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 ②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을 위한 사항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해외건설현장에서 국내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의 경우 해외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도 포함)
 2.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라 함은 다음의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해당 조항의 내용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 나.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 다. 특정업체의 물품·장비·인력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 라.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 마.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 바.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
 - 사. 추가공사 위탁시 서면발급 및 원사업자 비용부담(건설업종에 한한다)
 - 아.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정보서비스업종, 광고업종에 한한다)
 3.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 대금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의 명시여부
대기업의 계약불이행(수령지연, 계약해제 등)에 대해 부과되는 페널티와 협력사의 계약불이행(납기지연, 납품수

량부족, 계약해제 등)에 따른 페널티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되었는지를 말한다.

5. 비밀유지계약 체결(정보서비스업종, 통신업종에 한한다)

비밀유지계약 체결이라 함은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요구가 수반되는 계약 체결시 그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외부로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선수금 비율 및 그 제고정도(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선수금 비율이라 함은 광고제작 과정에서 광고대행사가 광고제작사에게 지급하는 선수금의 비율을 말한다. 이 때 선수금이란 발주자로부터 광고대행사가 지급받은 선금금 외에 계약금, 착수금 명목으로 용역수행 이전에 광고대행사가 광고제작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총칭하며, 선수금 비율은 일정한 기간(1년)동안 광고대행사가 광고제작사에게 지급한 대금의 누적 총액 중 선수금 누적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7.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지급이라 함은 광고제작사가 광고대행사에게 입찰과정에서 제출한 기획·시안 등에 대해 광고대행사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시안 등이란, 광고전략 및 광고컨셉을 구체화하여 스토리보드 또는 인쇄그래픽 등으로 표현한 제작물 후보안, 전자문서, 영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을 위한 사항

1. ②.3.에 의해 규정한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조건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하도급대금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현금 및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한 결제비율, 현금성결제비율을 말한다. 이 때 대금지급절차 마감이란 대기업이 협력사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이에 대한 내부적 지급결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지칭하며, 그 횟수가 잦을수록 협력사는 보다 신속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금지급일수란 대기업이 마감일로부터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경과일수를 말한다.(예 : 마감일로부터 10일 등)

또한, 현금 및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한 결제 비율, 현금성결제비율이란 일정한 기간(1년) 동안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지급한 대금의 누적 총액 중 각각 현금 및 상생결제상품(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결제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기업 간 결제상품(2~3차 협력사들이 납품대금으로 받은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할인할 수 있고, 할인 시 대기업의 신용 수준에 준하는 금리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이들 협력사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품일 것)), 현금성결제수단별 지급액의 비율을 말한다.

2. ②.4.에 의해 규정한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페널티를 부과했는지 여부를 말한다.

3.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직보체계 등 분쟁조정절차 및 기구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분쟁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조정을 위한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를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말한다.

4.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기업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위가 작성하여 배포한 최신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말한다.

제6조(범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 범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항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별표 6)
 - 가.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 나. 일정한 거래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
 - 다.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 라.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의 부당성 여부, 기술자료 제공요구 가능여부, 특정업체의 물품 등 사용지정 가능 여부 등 하도급거래 적법성 여부 사전심의 등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별표 7)
 - 가.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서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개 서면 발급
 - 나. 가목의 7개 서면 외에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각종 서면을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간 보존 등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별표 4)
 - 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한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
 - 나.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 변동 및 물가 인상 요인의 반영 등 합리적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납품단가 조정방법 및 절차 도입 등)
 - 다.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라 함은 대기업이 서면미교부,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발생소지를 차단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예시 : 부품이 입고되는 대로 생산부서에서 입고일자를 자동등록하는 시스템 구축 → 구매부서에서 임의로 입고일자를 늦게 등록하거나 사후에 입고일자를 수정할 수 있는 문제를 제거)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대기업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업무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용한다.
- ② 범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항
 1.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금액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 계약이 종료된 후 그 적법성을 사후검증하는 절차를 마련 및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은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안전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2. 범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대기업은 범위반 임직원의 소속부서와 관계없이 해당 임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구매담당 임원평가 시에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추진실적에 중점을 두어 평가해야 한다.

제7조(상생협력 지원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 ①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그 내용은 협약체결 이전보다 개선 또는

증가된 것이어야 한다.

1. 금융(자금)지원

금융(자금) 지원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원자재·장비구입비, 생산자금, 설비투자비, 기술(개발·연구)자금 및 운영비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이 지원하는 것(거래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가. 직접지원 : 대기업이 직접 협력사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준금리보다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연구개발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비,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비 등), 금형의 소유권을 협력사가 가지면서(금형을 협력사에게 무상으로 영구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협력사의 납품전에 금형비를 지급하거나, 협력사의 채무를 지급보증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부담하거나, 명절을 앞두고 기성금을 선결제하여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것 등을 말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비협력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직접지원에 해당)
- 나. 간접지원 : 대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협력사의 거래내역·보증·담보 등의 제공 또는 추천을 통하여 협력사에게 기준금리보다 저리의 여신을 제공(대출) 하도록 알선 또는 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대기업 - 금융기관 - 중소기업간의 약정을 통한 네트워크론 등)
- 다. 혼합지원 : 대기업이 직접 금융기관 등에 예금 또는 펀드를 조성하거나, 계열사의 예금 또는 펀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대기업 또는 계열 대기업의 협력사에게 기준금리보다 저리로 여신을 제공하도록 알선 또는 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하거나(상생협력펀드 조성, 펀드공동이용 등), 대기업이 지분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1인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함
- 라. 특별지원 :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직접 보증기금을 출연하거나, 계열사가 출연한 보증기금을 이용하여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대기업 또는 계열사의 협력사에게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하거나(상생보증기금 출연 등),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중앙회(공동사업지원자금) 등에 출연하는 것을 말함

2.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보호

기술(개발)지원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기술 이전, 특허권 제공, 공동연구개발, 신제품·국산화 개발지원, 협력사의 특허 또는 신기술을 채택하여 이와 관련된 신규 하도급계약 체결 등의 지원을 말하며, 기술보호는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입치제 이용지원,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지원 등을 말한다.

3. 인력·채용지원

인력·채용 지원이란 대기업이 일정기간(누적 기준으로 5근무일 이상) 자기의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여 중견 관리자, 전문엔지니어 등의 인력을 협력사에 파견(파견결과보고서가 있어야 함)하거나 협력사가 이들을 채용하는 것, 대기업이 협력사의 인력채용 지원을 위해 직무훈련시킨 인력을 협력사가 채용하는 것, 대기업이 개최한 협력사 인력 채용박람회를 통해 협력사가 인력을 채용하는 것 또는 협력사가 이미 고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 지원하는 것(협력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 협력사 전문인력에 대한 직무훈련 실시 등) 등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인력·채용 지원으로 본다.

4. 효율성 증대

효율성 증대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협력사와 함께 수입대체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말한다.

- 가.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 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1)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 2) 관련 제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
- 다. 비용절감

- 1) 제조 등 비용 절감
 - 2)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 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 1) 생산성 향상, 장비 가동률 제고
 - 2) 불량률 감소, 판매수량 대비 반품수량 비율 감소 등
 - 3)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마. 일자리 창출
- 바. 일감 개방
- 사. 협력사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확대 유도
- 아.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자.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여 실적
- 차.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5.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정보서비스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이란 상용SW의 유지관리계약에서 SW개발자에게 직접 유지보수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위생지원(식품업종에 한한다)
위생지원이라 함은 식품대기업이 협력사의 제작환경의 청결도 개선을 위한 방서·방충 작업, 생산설비 청소 작업 등의 지원을 말한다.
7. 교육지원(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교육지원이라 함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회계, 세법, 외국어 등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재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불(광고업종에 한한다)
제작업체(1차협력사)가 편집업체 등 재하도급사(post production 수행업체)에게 ATL(광고물 제작) 일부를 재하도급 시, 총 ATL 재하도급 건수 대비 광고대행사가 재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대행사-광고제작사(1차협력사)-편집업체(재하도급사) 3자간 서면으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9. 기타 지원 사항
- 가. 협력사의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적 지원
협력사의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적 지원이라 함은 경영컨설팅, 사무자동화, 홍보기법 및 활동지원, 6시그마 컨설팅, 선급금의 지급, 생산성 향상 및 물류혁신 기법 전수, 에너지 절감, 친환경 제품 인증 및 협력사 제품 마케팅 지원, 협력사 요청에 의한 사급제도 운영, 교육훈련지원, 인력채용지원, 협력사의 CCM인증 취득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직장어린이집 공동 이용 등) 등을 말한다.
- 나. 정부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 및 국토교통부가 인증·고시한 민간건설분야 공사대금 직불시스템 도입(건설업종에 한한다)
정부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라 함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하는 하도급거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민간건설분야 공사대금 직불시스템이라 함은 정부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의 체불방지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인증·고시한 시스템을 말한다.
- 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 함은 청년 구직자 대상 직업교육 실시, 협력사 채용과 연계 및 협력사 청년 직원 채용을 위한 박람회 개최 등을 말한다. 단, '청년'이라 함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삭제>

11.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협력사 대상 매입액(납품단가, 공급원가 등) 변동사유(원자재 가격, 산출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가 있는 경우, 또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단, 공기연장 등에 따라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는 제외)된 경우 그 매입액을 적극적으로 조정해주었는지 여부를 말한다.

12. 주요 분야 일감 개방(별표2)

주요 분야 일감 개방이라 함은 수직계열화 등 산업의 특성과 무관하게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가 빈번한 업종의 일감을 비계열 중소기업에게 개방한 정도로 사업시설관리, SI, 광고대행, 부동산관리, MRO 등 주요 업종에서의 대기업의 총 매입액 대비 비계열 중소기업 매입액의 비율을 말한다.

13.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서 공정위가 인정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와 관련한 협력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4.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이행 및 확산

공정위가 마련하여 배포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납품단가) 연동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적극적으로 인상하여 주고, 나아가 연동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이 하위 수급사업자까지 이어지도록 사내 정책·규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내용의 이행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 기술개발, 공정·품질·물류개선 등
3. 납품단가(또는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
4. 대기업의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이행
5. 대기업의 윤리규정 준수
6. 기타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

제8조(2차 이하 협력사 지원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협력사의 협력사(이하 '2차 협력사'라 한다.) 및 2차 협력사의 협력사(이하 '3차 협력사'라 한다.)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 ① 협력사(1차)는 대기업과 체결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2차 협력사와도 체결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 ② 협력사(1차)는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성) 결제, 결제기일 개선 및 금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한다.
- ③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와 거래할 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
- ④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로 하여금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3차 협력사와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 ⑤ 대기업과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 또는 상생결제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때, 동반성장보험이란 대기업과 은행 간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의 대금 미지급에 대비하여 2차 협력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보험금 재원은 대기업이 출연하며, 2차 협력사의 대출금 상환의무는 1차 협력사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또한 상생결

제상품이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결제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기업 간 결제상품(2~3차 협력사들이 납품대금으로 받은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할인할 수 있고, 할인 시 대기업의 신용 수준에 준하는 금리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이들 협력사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품일 것)을 의미한다.

⑥ 대기업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협력사(1차) 및 2차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 또는 거래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⑦ 대기업은 협력사(1차) 및 2차 협력사가 제1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사(1차) 및 2차 협력사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한다.

제8조의1(원물 생산자 지원을 위한 사항) 식품업종 대기업은 2차 협력사에 해당하는 원물 생산자(농수산물 등 식품제품의 1차원료 생산자 및 1차원료 생산자의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 생산기술지원(영농·양식기술 등), 공동연구개발(종자개발 등),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그 내용대로 원물생산자를 지원한다.

② 원물생산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 또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원물생산자를 지원한다.

③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실적을 확대한다.

④ 원물생산자와의 사전계약을 활성화한다.

제8조의2(대리점 지원을 위한 사항) 대리점거래관계가 있는 대기업은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장 협약 절차

제9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② 협약기간 만료시 상호 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의 합의지연, 대기업의 상생협력 지원내용 미확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체결(이하 “재협약”이라 한다)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 체결 절차를 따른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에 대한 이행 평가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정위의 지원사항) ① 공정위는 대·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 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대기업 및 사업자 단체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1. 협약체결 절차·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

2.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의 검토 등 협약체결 지원

3. 중간점검

4. 협약이행 평가

5.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6.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 제정·보급

7.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

- 8. 협약이행 평가결과에 따른 컨설팅
- 9. 기타 협약 전반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이나 협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의 저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③ 공정위는 대기업의 매출액·하도급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존 협약의 연장, 재협약, 신규협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 ④ 공정위는 동일기업집단 내에 소속되어 있는 복수의 계열사가 협약 체결에 참여하는 경우 간사 회사를 지정하여 협약 체결과 관련된 연락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공정거래 협약서) ① 협약을 체결(기간연장, 재협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대기업은 협약체결 전에 협약서(안)과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② 공정위는 대기업이 제출한 협약서(안)의 내용이 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약서(안)의 내용에 대해 이 기준에 맞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받은 대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대기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협약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위는 별지와 같은「(하도급)공정거래 표준 협약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표준 협약서를 협약 체결 당사자간의 거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대기업은 협약체결 희망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안) 및 별표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15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안)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세부 이행계획 및 협약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서 대기업은 협약체결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을 체결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30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해서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12조(협약이행 평가) ① 대기업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1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1.31까지)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한다. 이때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 중 이미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기존의 협약체결 시점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행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이행평가를 요청 받은 때에는 다음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공정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영업정지 요청일로부터 1년간은 당해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이행평가를 요청하더라도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평가를 요청한 대기업의 협약내용 및 이행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를 요청한 대기업의 협약기간 1년 경과일을 기준하여 같은 분기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모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직전년도의 실적에 대해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3. 협약이행 평가는 협약체결 대기업 및 협력사가 제출한 서면(전자서면 포함)자료 등을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 체결 당사자의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정위가 납품단가 조정실적 등 서면(전자서면 포함)확인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대기업 또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현장 확인은 평가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국한한다.
5. 협약이행평가 자료와 관련한 대기업의 내부제보 및 협력사의 제보를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제보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직전년도 매출액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매출액을 제한 금액이 2조원 미만인 중견기업. 이하 같다)이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공정성

- 가.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나.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 다.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 가.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나.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3. 상생협력 지원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④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3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제32조제2항에 의해 고발조치(이하 시정조치 등)를 당한 기업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4조의2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제71조에 의해 고발조치(이하 시정조치 등)를 당한 기업에 대해 조치시점(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합의일 기준, 이하 동일)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점수에서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다. 단, 시정조치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지 협약 체결 전의 시정조치 등을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평가시점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또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당해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안건 상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위는 더 이상 평가를 유예하지 않고 평가 결과를 확정하며, 이후 공정위 심의가 개최되어 시정조치 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⑥ 공정위는 그 임직원이 협력사 선정 또는 협력사와의 거래 관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행위와 관련된 1심 선고가 있었던 시점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점수에서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다. 단, 평가 후 3개월 내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1심 선고가 있는 경우,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으며, 과거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지 협약 체결 전의 행위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에 불구하고, 기업 스스로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해당 임직원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기소 또는 판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행평가지 해당 법규위반행위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⑧ 협약평가 주요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신규협약 체결기업(2012.1.1 이후 체결기업)에 한하여 당해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2차 협력사 지원,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항목에 대한 적용은 1년간 유예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에 대한 협약평가 주요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은 별표 1-1에 따른다.

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1-1의 점수배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영위 업종의 특성상 “2차 협력사 지원, 기술개발 지원 및 보호” 등 그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목의 반영 및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항목에 대한 점수를 다른 항목으로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대기업이 속한 시장 또는 산업여건, 대기업의 재무상황 등이 객관적으로 어려워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자금)지원, 결제수단 개선 항목에 대해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⑪ 공정위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항목별 점수배분 등에 대해 이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세부평가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중간점검) ① 공정위는 협약체결기업의 성실한 협약이행 여부를 협약기간 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중간점검은 협약내용 전반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대기업이 제출한 중간점검 제출 자료와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제16조(영업비밀 등의 보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3(협약이행 평가업무 수행의 역할과 범위) 협약이행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정위는 협약제도 기획·총괄업무를 수행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 공정위의 지휘·감독 하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약이행 평가신청 접수 및 실적 자료 포털시스템 등록 안내
2.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점검
3. 평가점수 산정
4. 기업 대상 자문·컨설팅 및 간담회 등 개최
5. 기타 협약 관련 제반 업무

제13조(협력사 만족도 조사) ① 공정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하여 대기업의 협약내용 및 협약이행과 관련한 “협력사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 만족도 조사대상 협력사는 대기업의 협약체결 협력사 수의 30%~50%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정한다. 다만 표본추출 결과 조사대상 협력사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협력사 수의 50%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③ 만족도 조사는 공정위가 조사대상 협력사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발송하여 수신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외부의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의 협력사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

제14조(협약평가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약이행 평가와 협약제도의 발전에 대한 심의를 위해 협약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은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조정원 소속 임원, 변호사, 교수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장, 하도급조사과장 등 13인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③ 위원 중 변호사, 교수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위촉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 ⑤ 협약평가위원회는 협약이행평가, 협력사 만족도 조사, 인센티브 내용 및 협약절차기준의 개정, 이의신청,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등 협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⑥ 협약평가위원회의 운용은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평가위원 1/3 이상의 개회 요구를 받아 소집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를 한다.
- ⑦ 협약평가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 ① 공정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업의 협약이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평가등급	평가점수	인센티브 제공내용
최우수	95점 이상	-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2년간 면제(조사 면제라 함은 당해 기업을 조사 대상에 미포함하는 것을 의미, 이하 동일) - <삭제>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년간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법인·개인 표창 수여(위원장 이상)
우수	90점 이상	-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삭제>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년간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양호	85점 이상	- <삭제> -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② 공정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의 경우, 그 평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당 기업이 제1항의 인센티브도 제공받는 기업인 경우, 양자를 비교하여 기업에게 더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평가등급	인센티브 제공내용
최우수	-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우수	-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③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 심의후 평가를 받은 대기기업에 잠정적인 평가등급을 통지할 수 있으며, 해당 대기기업은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를 한 기업의 경우 평가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인센티브의 100%까지, 6개월 이하인 경우 50%까지 부여할 수 있다.
- ⑤ 이 기준에 의한 인센티브는 다른 하도급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것과 별개로 제공된다.
- ⑥ 공정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는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현장확인 조사(조사표 미제출 업체,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진시정 촉구에 따르지 않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확인조사를 의미)
 2.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조사(단,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3.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⑦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대상이 되는 당해 기업에 대해 평가등급, 인센티브 내용 및 인센티브 제공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 1.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 당해 평가년도 7월 1일
- 2.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이 아닌 기업: 당해 평가년도의 차년도 1월 1일

⑨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관계 부처가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제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2(평가 등 시점 조정) 공정위는 천재지변, 전염병 및 대형사고 등 국가적 재난의 발생,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평가 결과 통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6조(영업비밀 등의 보호) ①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가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임의로 공정위에 제출한 협약내용, 협약이행 실적 및 평가결과 자료 중 협약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거나 외부로 제공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영업 및 이미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내용을 당해 기업의 동의 없이 공정위 이외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점수, 협력사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 1. 대기업의 개별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개발·보호, 교육훈련, 기타 경영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적내용
- 2. 대기업의 협력사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 3. 평가대상 대기업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평가자료
- 4. 협약서 및 협약내용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실적 관련 자료
- 5. 협력사별 만족도조사 회신내용 등 공개시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자료
- 6. 기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업의 동의는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전자서면 포함)동의를 말한다.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이 기준에 따라 자기의 협력사 또는 자기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협력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지원의 목적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촉진에 있을 것
- 2. 지원대상·절차·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협력사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

제18조(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① 협약체결 대기업이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된 시점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 점수를 50점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단, 평가시점

기준 3개월 내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이 예상되는 경우, 의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당해 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평가가 이미 완료된 후 3개월 내 의결이 있는 경우, 완료된 직전평가점수를 소급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허위자료 제출'이란 협약체결 대기업이 협약이행실적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 내지 고의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해당 협약체결 대기업이 입증하여야 한다.

③ 허위자료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대기업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07. 9. 13)

이 기준은 2007. 9.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6)

1.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2009. 10. 6.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 이전에 체결한 협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협약을 체결(협약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 포함)하여 이 기준의 시행일 현재까지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거나, 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협약의 경우 제5조 내지 제9조, 제13조 제6항의 별표 1.(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 및 제13조 제7항을 제외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가.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협약을 체결(협약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 포함)하여 이 기준의 시행일 현재까지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거나, 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협약의 경우 제13조 제6항의 별표 1.(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 및 제13조 제7항의 규정이 평가대상 대기업에 유리한 경우 이를 적용한다.

부 칙(2010. 11. 1)

1.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2010. 11. 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2011. 3. 26)

1.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2011. 4. 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2011. 12. 28)

이 기준은 2012. 1. 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2012. 8. 2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 9. 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2. (대기업과 중견기업간 협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은 기존 시행일 이전에 대기업과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2. 12. 28)

이 기준은 2013. 1. 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기존 시행일 이전에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3. 3. 27)

이 기준은 2013.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30)

이 기준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20.)

1. 이 기준은 2014.10.20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9조제1항은 2014.10.20에 현재 진행중인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지부터 적용한다.
2. 2014.10.20 이전에 있었던 시정조치, 과징금, 허위자료 제출 의결, 동반성장 정신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보도 등으로 인해 이미 평가에 불이익을 받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 단서 적용을 배제한다.

부 칙(2014.12.31.)

1. 이 기준은 2015.1.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2015.12.31.)

1. 이 기준은 2016.2.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2018.5.9.)

- 이 기준은 2018.1.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이행 평가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9.)

1. 이 기준은 2020.1.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이행 평가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0호는 2019.12.19.에 현재 진행중인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

1. 이 기준은 2020.1.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이행 평가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3호는 2020.4.2. 이후 최근의 이행 평가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7월)

1. 이 기준은 2022.1.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의2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2.12월)

1. 이 기준은 2023.1.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4월)

1. 이 기준은 2023.4.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월)

1. 이 기준은 2024.1.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별표 3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체결 신청서

(주)○○○○ 대표이사 ○○○은 공정거래 기반조성 및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사들과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자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약체결을 신청합니다.

- 1. 신청인 : (주)○○○○ 대표이사 ○○○
(서울시 ○○○구 ○○○동 1234-5)
- 2. 협약대상 협력사 : (주) ○○○(대표이사 ○○○) 외 ○○○개사

3. 대기업(원사업자) 개요

가. 영위업종 :

나. 일반현황(최근 2년간)

(단위 : 10억원)

구분	자산총액	매출액	순이익	하도급액	종업원수	협력사수	
						수급사업자	비수급사업자
20XX							
20△△							

다. 협약체결 예정일 :

첨부 : 협약서(안) 1부.

○○○○. ○○. ○○.

(주)○○○ 대표이사 ○○○(직인)

(하도급)공정거래 표준 협약서

(0000. 00. 00)

(주)○○○(이하 “□□□”이라 한다)은 협력사 (주)○○○(이하 “협력사”라 한다)과 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과 협력사간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통해 상호 경쟁력 제고,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증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준수) □□□과 협력사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등 하도급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3조 (4대 실천사항 준수) □□□은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제정·개정된 “하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을 도입, 준수하여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이행단계 전반에 걸쳐 공정한 거래를 한다.

1.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한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
2.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동 및 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정·조정방식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정 및 조정(납품대금 조정기준 및 절차 도입)
3.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

②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력회사 선정·운용(등록·변경)을 위하여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도입·준수한다.

1. 협력회사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공정성, 투명성 보장(기준, 절차 공개)
2. 협력업체 선정(등록) 심사결과 통지
3. 협력회사에 대한 공평한 입찰 참가 기회의 부여 등

③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을 도입·운용한다.

1.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구성(하도급거래담당 임원 포함 3인 이상)
2. 000억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
3. 협력회사 선정,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4.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④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을 도입·운용한다.

1.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 서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개 서면에 대해 발급
2. 제1호의 7개 서면 외에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7개 서면에 대하여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간 보존

제4조 (공정한 계약 체결·이행) □□□은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 ① 계약이전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사실·물량·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일정한 수단을 통해 미리 알리는 시스템
-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③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
 - 기술자료 제공요구 가능요건 및 제공범위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
- ④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
 - 대금 마감횟수
 - 현재 매월 1회 → 매월 2회
 - 대금 지급일수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00일 이내 지급
 -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00%
 - 현금 지급 또는 상생결제(만기 10일 이하) 계약규모 한도상향 조정을 통해 현금·상생결제비율 개선(현재 3,000만원 미만 현금 지급 또는 상생결제 금액을 5,000만원 미만 계약건에 대해 100% 현금 지급 또는 상생결제)
 - 현금성 결제비율
 - 현금성 결제비율 00%
- ⑤ 비밀유지계약 체결(정보서비스업종, 통신업종에 한한다)
 - 영업상 중요정보가 있는 자료 요구 시 협력사와 비밀유지계약 체결
- ⑥ 선수금 비율 제고(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 현재 5%(‘00.00~’00.00 → 10%(00.00~’00.00)
- ⑦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 ⑧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의 형평성 추구
 - □□□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페널티,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페널티를 형평성 있게 설정하고, 그에 따른 페널티 부과
- ⑨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직보체계 등 분쟁조정절차 및 기구 마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조정을 위한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 ⑩ <삭제>

제5조 (범위반 예방 및 법준수) □□□은 하도급법 위반 예방 및 준수 노력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 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발생소지를 차단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영
- ②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 ③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 거래금액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 지급기한 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여부를 점검 및 시정

④ 범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제6조 (상생협력 지원) □□□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의 재무 건전화, 결제조건 개선, 기술개발 촉진, 전문능력 제고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운영한다.

① 금융(자금)지원

- 직접지원 : 000억원
 - 협력사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대여) : 00억원
 - 협력사의 구매조건부 신기술 연구개발자금 지원(무상) : 00억원
 - 협력사의 설비·장비도입 자금 등 지원(대여) : 00억원
- 간접지원 : 금융기관을 통한 협력사 자금대출 지원 제도 도입·운영
 - 금융기관과 협력사 대출지원을 위한 약정체결을 통한 자금지원(예: 네트워크론)
(○○은행과 약정체결, 대출약정한도 000억원)
- 혼합지원 : 상생펀드 000억원 조성
 - 협력사에게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000억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한다
(□□□ 000억원, 금융기관 000억원 부담)
 - □□□의 계열사인 △△△이 조성한 상생펀드 000억원을 이용(60% : 00억원)하여 □□□의 협력사에게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은행과 □□□와 계열사인 △△△간 약정체결)
- 특별지원 : 000억원
 - 협력사에게 대출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기금 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다.
 - 이렇게 조성한 기금 000억원을 이용(00% : 00억원)하여 □□□의 협력사에게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 또는 보증지원 실시

②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보호

- 기술(개발) 지원(확대)
 - 터널발파공법 등 신기술 협력사 이전 : ('00) 4개사 5건 → ('00) 6개사 7건
 - 반도체 핵심부품 공동개발 추진 확대 : ('00) 4개사 5건 → ('00) 6개사 7건
 - 자동차 자동 브레이크 장치 개발비 지원(신규사업) : 3개사 40억원
- 협력회사 기술 License 허여(확대)
 - ○○○ 기술특허에 대한 무상 통상 실시권 허여 : ('00) 00개사 → ('00) 00개사
-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확대 및 공동참여(확대)
 - ('00) 5개사 → ('00) 8개사
- 협력사가 독자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지원(신규)
-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공동 특허출원(확대)
 - ('00) 2개사 2건 → ('00) 3개사 4건
- 협력사의 ○○○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확대)
 - ('00) 2개사 2건 → ('00) 3개사 4건

③ 인력·채용 지원

- 협력사의 요청에 따른 기술인력 지원('00 : 0명 → '00 : 0명)(확대)
-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협력사 인력채용 지원(신규)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협력사가 기 고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지원 (협력사 전문인력에 대한 직무훈련 실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
- ④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지원(정보서비스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 SW개발자가 직접 유지보수과업을 수행('00 : 건 → '00 : 건)
- ⑤ 위생지원(식품업종에 한한다)
 - 협력업체 대상 방서·방충활동 : ('00) 10개사 20건
- ⑥ 교육지원(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 ⑦ 재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불(광고업종에 한한다)
 - 총 ATL 재하도급 건수 대비 직불합의 건수 비율 : ('00) 40% → ('00) 60%
- ⑧ 직·간접적 경영지원
 - 최우수 협력사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면제(확대)
 - ('00) 최우수 협력사 2개사에 1년간 수의계약 1건 및 계약이행 보증면제 → ('10) 최우수 4개사에 1년간 수의계약 1건 및 계약이행 보증면제
 - 선급금 지급 확대(개선)
 - 발주처 선급금이 없는 민간 발주 및 당사 발주 공사에 대한 선급금 30% 지급
 - 선급금 지급 규모 확대 : ('00) 20% → 30%(확대)
 - 지역업체 입찰기회 확대
 - 지역별 협력업체 Pool 마련 및 입찰참여 기회 확대
 - 전자입찰 비율 확대 : ('00) 80% → ('00) 100%
 - 협력사 수의계약을 통한 공동목표 원가제 실시(신규)
 - 협력사 손실 방지를 위한 저가심의제도 실시(유지)
 - 5,000만원 이하 공사 계약이행보증 면제 및 하자보증 면제
 - 경영닥터제 지원(신규)
 - 협력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 협력사 요청에 의한 사급제도 운영
 - 교육훈련지원 : 10개사 100명 훈련지원
 - 협력사의 CCM인증 취득지원 : 10개사
- ⑨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 0000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00조에서 규정한 매입단가(또는 납품단가, 계약금액) 조정요건 또는 자체 수립 기준에 따라 매입액 조정
 - (원자재 가격 변동요인)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00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00 이상 증가된 경우
 - (기타 변동요인)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인건비 등의 변동으로 인한 인상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00 이상인 때
- ⑩ 비계열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개방
- ⑪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 ⑫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 해외동반진출 기회 제공, 제품전시회 개최 등

제7조(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 운용) □□□는 다음과 같이 2차 이하 협력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한다.

- ① 협력사(1차)는 □□□과 체결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2차 협력사와도 체결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노력해야 하며, □□□과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와 3차 협력사 간 협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② 협력사(1차)는 □□□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결제기일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한다.

③ □□□과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 또는 상생결제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④ □□□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협력사(1차)에 대하여 지원 또는 거래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⑤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와 거래할 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사용한다.

⑥ □□□은 협력사(1차) 및 2차 협력사가 제1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사(1차) 및 2차 협력사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한다.

제7조의2 (원물 생산자 지원) □□□는 다음과 같이 원물 생산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한다.

- 생산기술지원,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 원물 생산자 지원 목적의 별도 법인 또는 재단 설립
-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확대
- 사전계약 활성화

제8조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 협력사는 □□□과 하도급 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력 방안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 이행
- ②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원가절감, 물류혁신 노력 제고
- ③ □□□의 윤리실천특별약관 준수 등
- ④ □□□의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이행 및 협조
- ⑤ 기타

제9조 (협약기간) ①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일을 협약종료일로 본다.

② 협약기간 만료시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법적 성격) 이 협약은 □□□이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 당사자인 협력사들에게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어느 일방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민·형사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협약기준 준수) □□□과 협력사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위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12조(세부이행계획 및 평가자료) ① □□□은 협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협약체결 협력사 명단 및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한다.

② □□□은 협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위한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한다.

○○○○년 ○○월 ○○일

(대기업)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협력사)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별표 4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I 목적

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혹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실천사항의 구성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전 대기업이 구축해야 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III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마련

가. 대기업은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체결방식 종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계약체결방식의 종류(예시)

- ① 수의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 ② 일반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③ 제한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④ 지명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대기업은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내부적인 선택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예시 : 계약방식 선택의 기준〉

물품의 중요도	거래상대방	많음(5개사 이상)	적음(5개사 이하)
높음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낮음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 위에서 제시된 기준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가능함

〈예시 :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요건〉

계약체결방식	요건
수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혹은 마감공사의 경우 -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일반경쟁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기준 없음 -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선택
제한경쟁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지명경쟁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추정가격이 00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00억원 이하인 제조위탁, 추정가격이 00억원 이하인 용역위탁인 경우 •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

※ 위에서 제시된 요건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함

2.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대기업은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 대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나 사이버 제안마당을 운영한다.

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가. 대기업은 PRM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업체 관리가 아닌 신규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관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혹은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이란 대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보다 실용적으로 상호발전을 이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리시스템

나. 협력업체들만의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거나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업체들끼리 정보공유 및 협력을 지원한다.

4.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IV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0.8.3)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절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다.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바.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하여야 한다.

사.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품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2.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확신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설위탁의 경우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라.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마.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건설 관련 계약인 경우)

-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신설. 2010.8.3)

-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사.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신설. 2010.8.3)

-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아.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자.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차. 부당특약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나.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하여야 한다.

다.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 권장 사항

-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 해제·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거래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2.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가.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률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나. 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마.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바.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사. 보복 조치 행위

-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 탈법 행위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카.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VI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기준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운용한 것으로 본다.

1. 실천사항 내용을 계약업무 관련 규정(사규, 업무지침 등)에 반영하였을 것
2. 납품단가 조정·협의를기준 등 실천사항 주요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을 것
3. 실천사항을 공개(홈페이지 등)하거나 협력업체에게 고지하였을 것
4. 실천사항상의 계약체결방법 선택기준을 마련하였을 것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I 목적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원사업자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III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가.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원사업자의 웹사이트, 이하 같음)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나.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부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 ①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 ②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 ③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2)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 (3)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4)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마.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정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③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④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부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③ 수급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미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다만,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 ④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원사업자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3. 실천사항의 도입·운영여부 판단기준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운영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운영한 것으로 본다.

- 가. 실천사항 내용을 협력업체 등록·운영 관련기준(사규, 업무지침 등)에 반영 하였을 것
- 나. 협력업체 등록·운영 기준을 공개(홈페이지 등) 하였을 것
- 다.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시 실천사항 내용을 준수하였을 것
-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를 부여하였을 것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I

목적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가.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 (1)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2)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위 (1)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 (1)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2) 내부 심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금액이 일정비율(예시. 직전사업년도의 하도급거래금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2%, 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1%)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예시〉

-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3)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4)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5)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6)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7)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기준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운용한 것으로 본다.

가.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관련기준을 마련(사규, 업무지침 등)하였을 것

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기준을 공개(홈페이지 등)하였을 것

다. 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을 것

라.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실적(실천사항 내용 심의 등)이 있을 것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I 목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실천사항의 구성

이 지침은 ①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③ 서면 발급 및 보존 관행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책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부분 등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III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발급대상 서면〉

일련번호	발급 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나. 서면 기재사항

-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①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건설공사의 선금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기일
 -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 ③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다. 서면발급 시점

-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① 제조위탁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② 수리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③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 ④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라. 서면발급 방법

-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단, 원사업자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가능
 -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특 칙

(1) 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2.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나. 서면 기재사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 서면발급 시점

- 원사업자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서면발급 방식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4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 원사업자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차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나. 서면 기재 사항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다. 서면발급 시점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서식1)을 사용한다.

※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외

-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기타 서면의 발급

가.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 다만,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사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IV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모두 상기 Ⅲ. 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 보존대상 서면〉

일련번호	보존 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의무발급서면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주요 하도급 거래내용등 기재서류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10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 건설위탁 :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V

실천사항 도입·운영여부 판단기준

-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운영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운영한 것으로 본다.
 1. 실천사항 내용을 하도급 업무 관련 규정(사규, 업무지침)에 반영하고 있을 것
 2. 수급사업자에 대한 계약서 등 서면발급시 표준양식(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양식)을 채택하고 있을 것
 3.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급 또는 보존해야 하는 서면의 관리 대장을 사용하고 있을 것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수신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수급사업자 (발신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2. 위탁일시,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위탁 일시*	. .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성명			소속			직위		
3. 위탁 내용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1) 목적물*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등										
2) 하도급 대금*		금액,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3) 목적물의 인도		시기 및 장소 등										

별표(*)는 시행령 규정사항임

4) 목적물의 검사	검사 방법 및 시기 등
5) 하도급대금의 조정	원재료 상승 등에 따른 대금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6) 그밖의 사항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p>위의 위탁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며, 확인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내지 제8항에 따라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성립이 추정됨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자명 _____ 대표자 _____ (인)</p>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 (수신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원사업자 (발신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2.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사항							
위탁 일시	. . .						
위탁 내용	목적물, 하도급 대금, 목적물의 인도, 검사, 대금의 조정 등						

3. 위탁 내용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해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_____ 대표자 _____ (인)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수급사업자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2. 감액 내용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1) 감액 사유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재					
2) 감액 기준		대금 감액 액수를 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					
3)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위탁 목적물 중에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물량					

4) 감액 금액	감액기준과 감액 대상 물량 등을 기초로 산정한 최종 감액 금액
5) 공제 등 감액방법	선급금, 기성금 등에서의 공제 등 실제적인 감액 방법
6) 그 밖의 사항	기타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p>위의 서면 기재사항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함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자명_____ 대표자_____ (인)</p>	

기술자료 요구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수급사업자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2. 기술자료 요구 관련 사항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1) 기술자료 내역		요구하는 기술정보·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특허등본원부 등 기술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2) 요구 목적*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3)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i)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 첨부, (ii)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4) 권리 귀속 관계	(i)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ii) 상호 간 기술이전계약 체결 여부, (iii)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iv)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5) 대 가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
6) 인도일 및 인도방법	당해 기술자료의 인도일, 구체적인 인도방법 등을 기재
6) 그 밖의 사항	기술자료 임치계약 체결 여부, 기술자료 요구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기타 합의한 사항 등
<p>원사업자 ○○○ 와 수급사업자 ○○○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시 위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교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원 사업 자 명 _____ 대표자 _____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수급사업자명 _____ 대표자 _____ (인)</p>	